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진

- 김명진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 김태은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 박선영 변호사(프로보노지원센터)
-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울)
- 서재경 연구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송남영 실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염형국 변호사(프로보노지원센터)
- 이연지 변호사(한국후견협회)
- 전창훈 변호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정희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 최영광 사무총장(한국직업재활사협회 사무총장)
- 황소영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회원들의 공익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프로보노 포럼, 봉사활동, 다양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7년에는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등 회원들이 공익활동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 시리즈를 발간 하였으며, 올해에는 난민 법률지원, 이주민 법률지원, 공익 소송 실무, 성소수자 법률지원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성년후견의 대리범위가 더욱 세분화되었고, 성년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 후견 서비스의 제공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가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기 전까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들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선임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의 업무와 권한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룬 법률 지원 매뉴얼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사단법인 온울과 공동으로, 8인의 변호사와 3인의 활동가들로 발간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의와 집필 그리고 수정과정을 거쳐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완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발달장애인들이 공공후견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고 일상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영위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우리들의 일상과 궤를 같이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회원 여러분의 공익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축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협력하여 집필한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그 대상인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금치산제도라는 낮은 틀 아래에서 노동착취, 성폭력, 경제적 착취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저소득층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공공후견사업이 실시되어 진행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둔 국가사업으로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격리된 채 십수 년 이상을 살아가기도 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공공후견사업이 실시되어, 후견인의 도움 아래 병원 밖에서 보다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매, 고령자에 대하여도 2018년 9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치매관리법에서 공공후견사업의 대상이 되어 치매·고령자들이 여생을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처럼 공공후견사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자 복지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공공후견사업이 활발해질수록 균질하고 높은 수준의 후견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참여자들의 전문성 확보, 공공후견인, 친족들의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 함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의 필요성도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견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이번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후견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매뉴얼은 법률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협업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견 영역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표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법인의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사단법인 온울도 이번 후견 매뉴얼 제작 작업을 후원하면서 그간 온울이 법인후견인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최대한 담아내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이 공공후견인, 공공후견 관계자, 친족, 그 외 전문가들에게 널리 활용됨으로써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공후견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번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보다 나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발달장애인복지협회,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온울 이사장 소 순 무

축 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순응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옹호 및 자립지원 욕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체적인 삶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협회는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후견법인으로써 15개 지역 공공후견업무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을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약 180명의 공공후견인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은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많은 후견인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 됩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프로보노지원센터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김 성 조

CONTENTS

제1장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1
1. 후견제도	3
가. 후견제도의 개정배경	3
나. 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3
다.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차이	4
2. 성년후견제도	5
가. 민법상 후견제도 관련 조항	5
나.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및 특징	8
다. 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3. 후견인	13
가. 자연인 후견	13
나. 법인후견인	14
4. 공공후견인과 공공후견법인	15
가. 공공후견	15
나. 공공후견법인	16
다. 공공후견인	17
5. 후견감독인	18
가. 정의	18
나. 후견감독인의 역할	18
6. 민법상 후견제도 관련 개념	20
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0
나. 제한능력자	20
다. 무효와 취소	21
라. 후견인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21
마. 성년후견인의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22
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23

제2장 후견심판청구 절차의 이해 -----	25
1. 후견개시심판 준비하기-----	27
가. 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27
나. 후견사무 파악하기-----	29
다. 후견제도의 종류 판단하기-----	31
라. 청구인 선정하기-----	34
마. 후견인후보자 선정하기-----	35
2. 후견개시심판 청구하기-----	36
가. 후견개시심판 절차 흐름에 대한 개괄-----	36
나.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준비하기-----	37
다. 사회조사보고서 작성하기-----	40
라. 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하기-----	41
마. 후견심판청구서 접수하기-----	42
3. 사전처분-----	51
가. 의의-----	51
나. 사전처분의 종류-----	52
다. 불복 방법-----	53
4. 후견개시심판 절차-----	54
가. 가사조사-----	54
나. 보정명령-----	56
다. 정신감정명령-----	59
라. 심문기일-----	60
마. 불복방법-----	61

제3장 후견업무의 이해 ----- 63

1. 후견활동 개요 ----- 65

- 가. 초기단계 ----- 65
- 나. 사무후원, 대리권 행사 ----- 73
- 다. 통상 후견보고서 작성(매 1개월, 매 1년) ----- 78
- 라. 후견종료 시 ----- 82
- 마. 후견 연장신청 ----- 85
- 바. 후견감독인 직무 ----- 85
- 사. 기타 후견사무 수행 시 유용한 정보 ----- 94

2. 주요 후견 사무 ----- 95

- 가. 신상보호영역 ----- 95
- 나. 재산관리영역 ----- 126
- 다. 기타 ----- 137

별첨자료

[서식 1호]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 143

[서식 2호] 사전 현황 설명서 ----- 152

[서식 3호] 재산목록 ----- 153

[서식 4호] 사회조사보고서 ----- 153

[서식 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사건본인용) ----- 168

[서식 6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 168

[서식 7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 169

[서식 8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 169

[서식 9호] 후견인후보자 후견교육 참가 서약서 ----- 170

[서식 10호] 후견계획서 ----- 170

[서식 11호] 후견감독계획서 ----- 172

[서식 12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 173

[서식 13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 173

[서식 14호] 후견심판절차구조신청서	174
[서식 15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발급 위임장	175
[서식 16호]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서	176
[서식 17호]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78
[서식 18호] 보정서	179
[서식 19호] 기일 변경 신청서	180
[서식 20호] 즉시항고장	180
[서식 21호]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	181
[서식 22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83
[서식 23호] 재판기록열람신청서	184
[서식 24호] 공공후견인의 정기보고서	185
[서식 25호]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감독인 부동의)	186
[서식 26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188
[서식 27호] 후견사무보고서	189
[서식 28호] 관리계산보고서	206
[서식 29호] (공공후견)후견종료보고서	213
[서식 30호] 후견종료등기신청서	214
[서식 31호] 후견지속여부조사서	215
[서식 32호] 후견감독사무보고서	218
[서식 33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격리행위)	219
[서식 34호] 쉬운근로계약서	226
[서식 35호]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229
[서식 36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부동산매각)	230
[서식 37호] 재산목록보고서	233
[서식 38호] 특정후견인 사임허가심판청구서	237
[서식 39호] 특정후견인변경심판청구서	238
[서식 40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소송행위)	239
[서식 41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242
[서식 42호]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243

제1장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제1장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1 후견제도

가. 후견제도의 개정배경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위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족한 자를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분류하여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당사자의 의사능력 및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 활용, 일상생활의 정상화, 자립생활 지원 등의 이념하에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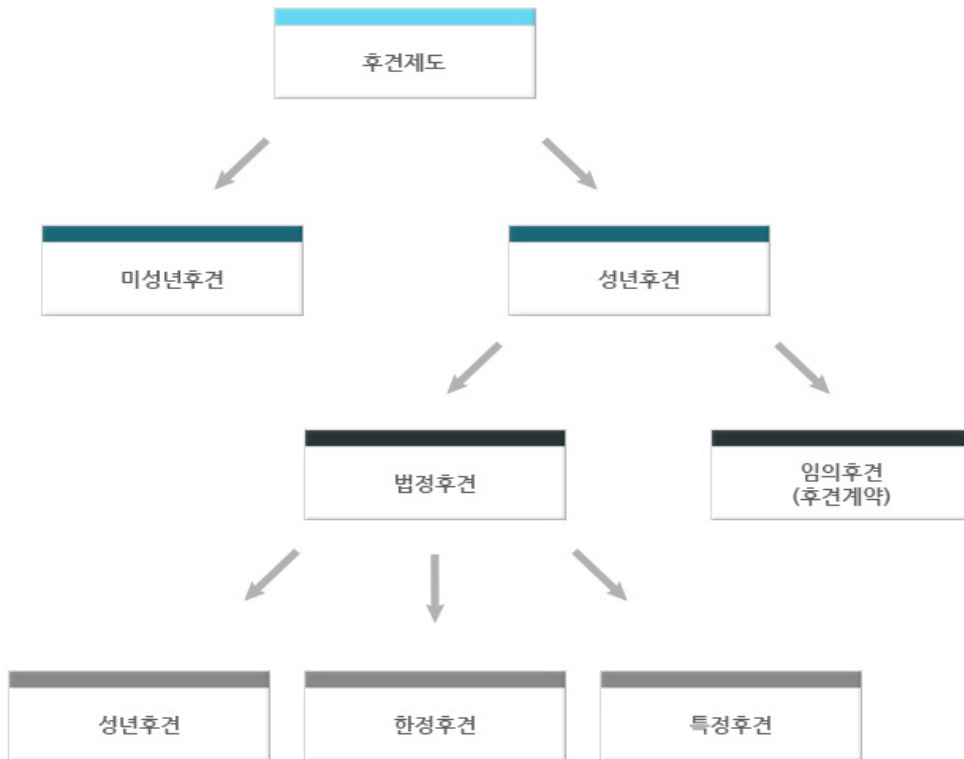
나. 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1) 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일상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산에 관한 대리뿐만 아니라 신상결정권한도 부여하여 피후견인이 정신적·경제적·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후견제도의 종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은 후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그 대리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그림 1] 후견제도 개관

다.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차이

(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자에 의한 보호가 불충분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었거

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일시정지되었거나, 부모의 대리권 또는 재산권이 상실되었거나, 부모가 대리권 또는 동의권한을 사퇴하여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932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그가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거소를 지정할 권리, 미성년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지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권한 등을 친권자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내지 제915조, 제945조).¹⁾

(2)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일상생활을 위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법상의 제도입니다.²⁾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

가. 민법상 후견제도 관련 조항

2013. 7. 1.부터 민법 개정을 통하여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을 통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 한국법제연구원(김현수, 김원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2013), 20면

2)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주영하·정익중, “한일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비교연구”(2016), 172면.

〈표 1〉 후견제도와 관련된 조항

분류	민법	조항 내용
후견개시 및 종료심판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	심판사이의 관계
피성년후견인의 입양과 파양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8조	협의상 파양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후견개시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	후견인 수와 자격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후견인 자격 및 권한	제937조	후견인 결격사유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제939조, 제940조	후견인의 사임 및 변경
후견인의 의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9조	재산권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여부 최고

분류	민법	조항 내용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영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한정후견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 선임 등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후견감독인 선임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사무
후견계약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 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관계

분류	민법	조항 내용
성년후견과 약혼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성년후견과 결혼 및 이혼	제808조	동이가 필요한 혼인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나.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후견인이 결정되는 법정후견과 계약에 따라 그 후견의 대리권 범위 내용이 결정되는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 2〉 후견제도의 비교³⁾

제도	근거	본인의 행위능력	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없음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조 제2항),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같은 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년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민법 제938조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위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938조 제2, 3항)
한정후견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있음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됨(민법 제13조) 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특정후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임의적 가정법원의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심판에 의하여 대리권 가짐(민법 제959조의11)
임의후견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계약에서 정함

3) 사법정책연구원,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2017. 9면

(2) 각 후견유형별 특징과 권한

(가) 성년후견

1) 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분열, 뇌병변장애, 뇌사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이하 다른 후견유형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법원에서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인정되며, 스스로 유효하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상(거주, 일상생활, 교육, 병원치료, 격리 등)에 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본인만 이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 법정대리권, 신상결정권을 보유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으로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취소권과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권한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면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⁴⁾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보유하는 데 반해, 신상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성년후견인은 신상결정권한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권한을 피후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⁵⁾ 이런 제한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후견은 보충적으로

4) 민법 제10조

5) 민법 제938조 제3항, 제947조의2 제1항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치료 등의 목적으로 피후견인을 정신병원 등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해야 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있는 치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⁶⁾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합니다.⁷⁾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할 경우, 피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하고,⁸⁾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⁹⁾ 피후견인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등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이를 대리해야 하고,¹⁰⁾ 성년후견감독인이 존재한다면, 그가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¹¹⁾

(나) 한정후견

1)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

6) 민법 제947조의2

7)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후견인이 위 행위들을 대리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8) 민법 제949조 제2항, 제920조 단서

9) 민법 제951조 제1항

10) 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11) 민법 제949조의3, 제940조의6 제3항

한 경우, 그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신상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 후견인의 권한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¹²⁾ 법원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 외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 신상결정에 대한 것은 성년후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 특정후견

1) 의의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후견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후견은 종료됩니다.

2) 후견인의 권한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을 후원할 사무의 범위 내에서 그를 조력해야 하고, 그 사무의 후원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고, 대리권을 가질 뿐이지, 동의권이나 취소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라) 임의후견

1) 의의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향후 자신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거나, 부족하

12) 민법 제13조 제4항

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 간에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향후 후견개시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을 통해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2) 후견인의 권한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신상결정권, 대리권을 보유합니다.

다. 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권한의 부여 등 제반절차에 가정법원의 개입하게 되나 그 과정에서 피후견인이나 부모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능력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개별적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에 의해 후견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경우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후견인에 의한 광범위한 의사결정대행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무원 결격사유, 선거권 제한, 자격취득 제한 등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많은 제약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사실상 장애인이 사망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 능력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후견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권리 등에 대한 제약의 소지가 없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3 후견인¹³⁾

가. 자연인 후견

(1) 친족후견인

피후견인의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피후견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피후견인과 후견인 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가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는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후견인들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가족이라는 인적 관계 속에서 피후견인과 생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재산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피후견인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는 등¹⁴⁾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전문후견인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거나, 피후견인과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전문후견인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3자로서 중립적으로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후견인은 가족들과는 달리 피후견인에게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후견인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이 부족한 피후견인은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¹⁵⁾

또한, 전문후견인들이 후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 가족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나, 피후견인의 가족들로서는 피후견인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점, 피후견인의

13)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394면

1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6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사례 4,637건 중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는 3,502건, 75.5%에 달합니다. - 위 보고서 48면

15) 이현근,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법률신문사, 2015, 133면

재산에 대한 통제가 자신들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제한 등에 거부감을 느끼고 전문직후견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3) 공공후견인

공공후견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나 쉽게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후견제도입니다. 공공후견인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¹⁶⁾ 이에 관한 부분은 아래 4.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나. 법인후견인

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¹⁷⁾ 법인후견인의 자격에 대해 민법에서 그 결격사유만 두고 있을 뿐,¹⁸⁾ 그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후견인은 개인후견인과 비교할 때 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안에 대응하기 쉽다는 점, ② 사무의 대상지가 광범위하게 미칠 사안에 대응하기 쉽다는 점, ③ 후견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 ④ 법인에 대한 신뢰성이나 후견사무담당자 측의 심리적 부담감의 경감된다는 점, ⑤ 개인후견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에서도 대응하기 쉽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¹⁹⁾

(1) 비영리법인 후견인

(가) 사적 후견법인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법인후견인들도 후견인 후보자로 올려놓고 있고, 그중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17. 10. 31. 기준으로

16)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410면

17) 민법 제930조 제3항

18) 민법 제937조

19) 이영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3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2016)”, 267면

총 145건의 후견사건에서 법인후견인을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²⁰⁾

(나)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이란 공공후견인과 같이 후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후견인들을 위하여 정부의 비용으로 선임되는 후견법인을 의미합니다.

(2) 영리후견법인

서울가정법원은 2016. 9. 법인후견인에 영리법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리법인들도 전문후견인 후보자로 등록해 두고 있습니다.

4

공공후견인과 공공후견법인

가. 공공후견

(1) 정의

공공후견인은 후견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후견서비스의 성격에 대하여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거나 그들에 대한 후견업무가 일상적 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하여 사회공헌 의식이 높은 일반시민을 성년후견인으로 양성하여 후견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과 후견사무를 담당할 마땅한 친족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사회보장급부의 일환으로 선임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²¹⁾

20) 김성우, [법인후견의 현황과 과제], 2017. 12. 14. 사단법인 온울, 법무법인 울촌, 정춘숙 의원 주최 “제5회 온울 성년후견세미나 -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410면

(2)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합니다)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발달장애인 중 특정후견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적 의미의 공공후견제도가 정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이란 공공후견인과 같이 후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후견인들을 위하여 정부의 비용으로 선임되는 후견법을 의미합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만이 공공후견법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은 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②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²²⁾

(1) 후견법인으로서의 역할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후견인으로서 활동합니다. 법인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후견법인은 법인의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합니다.

(2) 공공후견인 지원에 관한 역할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보수교육, 지역별 모임조직, 직무분석, 후견활동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하여 지원합니다.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역할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시 해당 명부의 후견인 후보자 중에 법원에 추천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후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반기별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운용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공공후견법인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지방자치단체를 조력하여, 후견인으로부터 매달 정기보고서를 받고, 후견활동비를 후견인에게 전달하며, 후견인으로부터 받은 정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가정법원에 보내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²³⁾

다. 공공후견인

공공후견인이란 의사결정능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의 사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²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경우, 발달장애인법에서 공공후견인의 자격을 후견법인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이면서, 국가의 재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받는 자이므로, 그 권한은 법원에서 결정한 일정 기간 및 특정사안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사무를 지원합니다.

23)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444면

24) 사법정책연구원, 앞의 책, 410면

5 후견감독인

가. 정의

후견감독인이란 후견인을 감독하는 자로서, 필요에 따라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은 후견개시 심판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확정 시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감독을 개시합니다.²⁵⁾ 후견감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며, 법원은 후견이 종료되면 심판없이 후견감독 역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나. 후견감독인의 역할

(1) 후견인 사무 감독

기본적으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후견감독인의 사무는 제3장 후견감독인 직무 참조).

(2) 후견감독인의 긴급처분권

후견감독인은 긴급처분권을 갖는데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신상감호권이 없으므로 특정후견인의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신상에 대한 긴급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5)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3) 재산관리에의 관여

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와 같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없을 경우 후견감독인은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하며 동의를 없을 경우 후견감독인은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 소멸 및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신상에 관한 권한

피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있어 피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이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으나, 해당 의료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합니다(긴급한 경우 사후허가 청구 가능).

6 민법상 후견제도 관련 개념

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²⁶⁾ 의사능력자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그의 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예: 계약)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²⁷⁾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부르며, 그의 행동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나. 제한능력자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어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²⁸⁾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히 취소가 가능하며, 설령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 또는 관계자가 그가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6) 지원림, “민법강의”, 60면

27) 지원림, 앞의 책, 70면

28) 지원림, 앞의 책, 71면

다. 무효와 취소

(1)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어떠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무효’라고 합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8조 등). 무효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습니다.²⁹⁾

(2) 취소

반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09조, 제110조 등). 취소는 그 행사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행위를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취소권 행사 전까지 해당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다룹니다.³⁰⁾

라. 후견인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1) 대리권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³¹⁾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재산의 범위는 후견유형에 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³²⁾³³⁾

29) 지원림, 앞의 책, 337면

30) 지원림, 앞의 책, 337면

31) 지원림, 앞의 책, 270면

32) 민법 제938조, 제947조의2, 제959조, 제595조의11

(2) 동의권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는 없으나,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후견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³⁴⁾³⁵⁾

(3) 취소권

일정한 기간 내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³⁶⁾³⁷⁾

마. 성년후견인의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1) 사실행위

사실행위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 없이 또한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식과도 무관하게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를 말합니다(예 : 세탁, 청소 등).³⁸⁾ 이러한 사실행위는 성년후견인의 사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3) 한국장애인개발원,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11면

34) 민법 제947조의2, 제13조

35) 한국장애인개발원, 앞의 책, 12면

36) 민법 제10조, 제13조

37) 한국장애인개발원, 앞의 책, 12면

38) 지원림, 앞의 책, 161면

(2)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행위자가 원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행위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³⁹⁾ 후견인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에 의한 지원은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1) 재산관리

재산관리는 피후견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펀드, 현금, 채권 등 재산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2) 신상보호

신상이란 피후견인의 일신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상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는 생활유지에 관한 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입·퇴소, 의료에 관한 사항,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⁴⁰⁾

39) 지원림, 앞의 책, 162면

40) 법원행정처, [후견사건 처리 실무], 2015, 60면

제2장

후견심판청구 절차의 이해

제2장

후견심판청구 절차의 이해

1 후견개시심판 준비하기

가. 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우리 주변에는 발달장애인이거나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안전망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후견사건들은 당면한 또는 가까운 시일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무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어떠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의사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능력은 한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개별 법률행위에 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해당 법률행위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판단합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 누군가에게 치매, 발달장애와 같은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 정도는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행위는 나중에 당사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그 의사능력의 유무가 문제되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후견인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우리 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정신적 제약을 가진 개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무와 다양한 공법상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후견인의 선임을 요구하는지, 추후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표 3〉 후견 이용 사례의 유형

분류	필요성
예방형	<p>가족들의 돌봄이 취약한 발달장애인, 시설 거주 무연고 장애인, 가족들이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으나 특정 영역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아직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취약한 경우</p> <p>: 피후견인이 현재 처해 있는 개별적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대리권한을 부여 받도록 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통상 발달장애인 소유 금전 관리, 공법상의 권리 행사, 의료서비스 및 주거이용 계약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p>
위험제거형(사고 처리형)	<p>신체폭행, 성폭행, 금전갈취, 강제노동,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의사능력장애인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보호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대리권을 가진 후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현재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고, 나아가 안전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p> <p>=> 사고처리를 위한 사무의 후원 및 대리권, 피해구제 이후 관련 배상금의 관리를 위한 사무의 후원 및 대리권 등이 부여되게 됩니다. 또한 후견개시신청과 더불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도 병행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후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p>
긴급사무처리형	<p>의사능력장애인이 사회 안전망 안에서 자립생활을 하더라도 의사능력장애인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단기간의 후견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수령, 민사소송의 제기, 상속사무의 처리 등이 그러한 긴급사무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p> <p>=>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후원과 대리권한의 부여가 필요하고 비교적 단기간의 후견서비스의 지원으로 충분합니다.</p>

분류	필요성
가족돌봄형	<p>가족이 의사능력장애인 자녀 또는 형제를 잘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가족들에 의한 보호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적 후견은 권장되지 않습니다.</p> <p>=> 따라서 의사능력장애인 스스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처리할 의사능력이 없거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족이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능력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상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이 의사능력장애인 명의로 장기 저축성 예금 또는 후견신탁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특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한정후견, 임의후견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나. 후견사무 파악하기⁴¹⁾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후견을 개시하는 것은 대부분 현재 당면한 혹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후견사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동일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피후견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후견사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후견인이 수행하는 사무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관리사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⁴²⁾⁴³⁾ 여기서 ‘재산관리’라 함은 재산의 보존·관리·처분행위를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⁴⁴⁾ 이러한 재산관리사무의 예로는 ① 은행예금 등의 금융재산

41)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42) 민법 제949조 제1항

43) 민법 제959조의6은 한정후견의 사무에도 민법 제949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민법 제959조의12는 특정후견의 사무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통상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

44)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해설, 2013, 54면

관리, ② 부동산 등의 재산관리, ③ 보험에 관한 사항, ④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상속재 산분할 등의 상속과 관련된 사무, ⑤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등의 사무가 있습니다.

(2)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성년후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는 신상과 밀접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과 신상에 대한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상과 관련을 가지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거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이용·입소,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과 밀접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인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피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현재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임대,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예로는 ① 의료행위의 동의, ② 주소·거소의 결정, ③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는 가능하다면 피후견인이 직접 결정하여야 하나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면 후견인은 법원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서 신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결과 관련하여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민법 제947조의2 제3항)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피후견인을 만나게 되면 위와 같은 사무분류를 기준으로 피후견인에게 지원이 필요한 사무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30대의 경증의 발달장애인이 현재 자립생활을 준비하려는 경우에 주변의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 발달장애인

에게 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스스로 거주지를 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 후견인이 이를 대리함으로써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발달장애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전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후견인이 주거에 관한 신상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하여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에 의한 신상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경증 발달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반드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는 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사례에서 성년후견을 개시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후견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에는 피후견인의 개별적 상황과 그에 따른 후견사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 후견제도의 종류 판단하기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제 후견제도 중 어떤 유형으로 후견을 개시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앞서 후견의 필요성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후견을 개시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인권 존중,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하에 후견 유형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제약, 즉 의사능력의 정도 외에도 후견의 지속성 여부, 후견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사능력 정도 판단은 후견의 유형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성년후견, 그 다음은 한정후견’과 같은 단순한 공식으로 후견 유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특정 사무에 한해서만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후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건은 후건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의사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의후건을 선택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의사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는 있지만, 초기에는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임의후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건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즉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법정후건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건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때에는 의사능력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후건의 지속성 여부, 후건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① 특정후건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능력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후원이 필요한 사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후건개시를 결정합니다. 또한 특정후건인은 법원에서 결정된 특정기간 및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 보유하며, 피후견인의 사무처리를 지원합니다. 특정후건이 공공후건에 가장 적합한 후건 유형입니다. 후건 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후건으로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 후건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권한을 최소로 침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후건이 종료되기 때문에 의사능력 정도를 다시 판단하고 후건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후건 중 인권적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정후건은 민법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후건인에게 포괄적 재산 관리 권한은 없으나(법원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보유, 법원이 권한 부여 시 신상결정 동의권, 신분행위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가), 동의권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 취소가능)입니다. 성년후건보다는 후건인 권한의 범위가 좁지만 한정후건도 피후견인의 권한을 상당히 박탈하고 후건개시 사유가 종료되어야만 후건이 종료되는 점에서 같습니다. 따라서 한정후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건으로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가 특정후건 유형으로는 처리되지 않는지 여부, 후건개

시 사유가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사능력의 정도가 가변적인 피후견인을 위해 동의권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③ 성년후견은 민법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후견인의 권한(법정대리권, 재산관리권, 신분행위 동의권, 법원이 권한 부여 시 신상결정 동의권 등)이 가장 광범위한 유형이며, 후견개시 사유가 종료해야만 후견이 종료되는 유형입니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의 권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가 광범위한 대리권을 필요로 하는 사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후견개시 사유가 종료해야만 후견이 종료되기 때문에 후견의 지속성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성년후견 유형이 법정후견 중 가장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한다는 점, 의사능력 정도의 가변성에 대한 평가 없이 후견이 지속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광범위한 행위능력 박탈, 후견의 지속성 등의 측면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왔습니다.⁴⁵⁾ 따라서 가장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처리해야 할 사무가 상당히 많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회 활동이 전무한 상황이며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경우와 같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⁴⁶⁾ 공공후견은 피후견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견개시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공공후견이 지속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5) 제철웅,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2014.7.), 222면 이하; 박인환,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저스티스 146-1호, 17면 이하 참조

46) 제철웅,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2014.7.), 225면 참조

라. 청구인 선정하기

(1) 개괄

여기에서는 후견개시를 위한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의 종류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청구권자는 후견의 종류가 무엇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성년후견·한정후견심판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이미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한편 특정후견의 경우 청구권자가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의 경우와 같아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4조의2 제1항), 이때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본인에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인이 개시되어 있다면 굳이 특정후견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무연고자에 대한 후견개시심판 청구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공공후견사업의 일환으로서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고 해도 사건본인의 가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사건본인이 ‘무연고자’여서 그를 위한 후견개시심판을 위한 절차를 청구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공후견개시심판을 위한 실무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맡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대로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청구권자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연고자에 대해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특정 무연

고자에 대해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검찰 내부에 이와 관련한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아 해당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후견개시와 관련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가 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것만으로 약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무연고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제도의 정착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재정 및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개시가 필요한 무연고 대상자를 먼저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쉽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이나 각종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먼저 후견개시가 필요한 무연고자를 발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본인이 직접 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특별대리인 제도 활용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데, 검사나 지자체장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권자가 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인데, 특별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이 수소법원(후견인지정심판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에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을 소명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이후 후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 후견인 후보자 선정하기

후견인은 통상 친족후견인, 전문가후견인, 공공후견인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 3. 후견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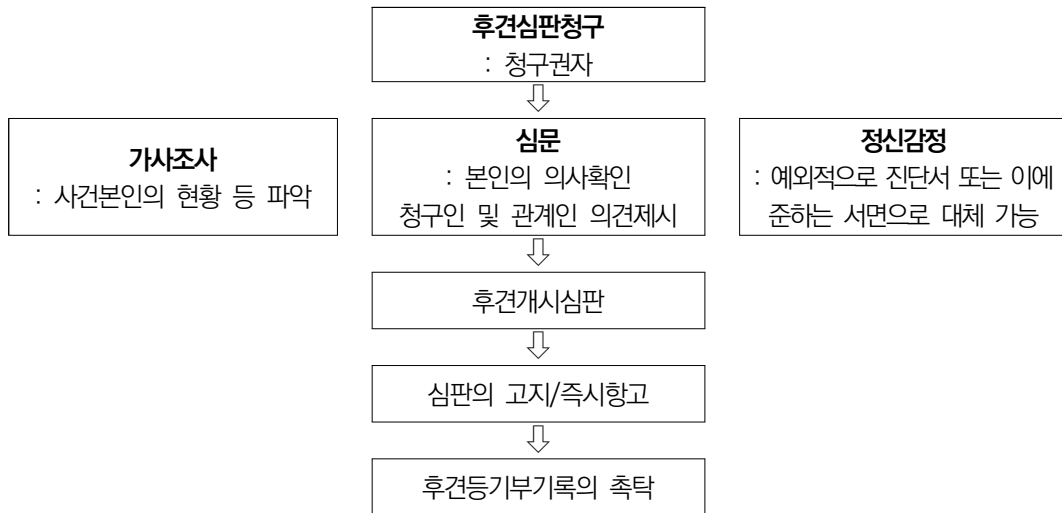
〈표 4〉

구분	장점	단점
친족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비용이 들지 않음 • 친족후견인의 경우 후견업무에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감독업무 부담이 상당함 • 잘못된 친족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재산보전 및 신상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전문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재산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 • 재산보전 및 신상보호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 • 법원의 감독업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부담이 상당함 •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밀착되지 않음으로 인해 후견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2 후견개시심판 청구하기

가. 후견개시심판 절차 흐름에 대한 개괄

후견개시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어떤 후견을 어느 범위에서 청구할 것인지 등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필요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미비된 부분을 보완합니다. 이후 사건 본인과 후견인 후보자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가사조사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정신감정촉탁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촉탁절차의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되면 심리를 하는데 이때 사건본인 심문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법원의 가사조사, 사건본인에 대한 심문, 정신감정 등의 모든 절차가 거친 후 법원은 심문을 종결하고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2]

나.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준비하기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⁴⁷⁾ 공공후견에서 주로 이용하는 특정후견 유형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각 서류의 샘플은 별도의 서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5〉

서 류 명 칭		
1	심판청구서[서식1 참조]	
2	사전현황설명서[서식2 참조]	
3	소명 자료	사건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4		사건 본인 관련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후견개시가 이미 된 적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혹은 가사사건 관할법원에서 발급)
5		사무 처리 (예시) 사건 본인 장애인증명서
6		(예시) 사건 본인 장애인등록 판정시 사용한 진단서(또는 여타 지적장애 관련

47)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8권, 2017, 23면

서 류 명 칭	
	능력 관련 자료 진단서)(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을 것)
7	재산 관련 자료 (예시) 사건본인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재산목록[서식3 참조]
8	사회조사보고서[서식4 참조]
9	심판 청구 동의 자료 사건 본인의 의사확인서류 : 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의향 확인서[서식5, 서식6 참조]
10	사건 본인의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 동거하는 친족 등)의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동의서(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서식7 참조] 위 서류의 첨부서류 :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11	후견인, 감독인 관련 자료 후견인후보자 기본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인후보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937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48)
12	후견인후보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서식8, 서식9참조], 후견계획서[서식10 참조], 후견감독 계획서[서식11 참조],
13	(전자소송 접수가 아닌 경우) 위 각 소명자료를 첨부서류로 첨부함.
14	첨부 서류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심판대리허가신청서[서식12 참조]
15	(의사소통 목적의 보조인 출석 시)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서식13 참조]
16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구조신청서[서식14 참조]
17	예납할 인지대, 송달료 준비

48) 민법제39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화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 비속은 제외한다.

Q 후견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범죄경력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소제기 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서(실효된 형 포함)의 경우 후견심판 관련 제출용으로는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후견인후보자의 전과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에게 서류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아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서식15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류의 첨부서류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Q 사건 본인의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기타 동거하는 친족 등)의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후견인이 처리하는 사무에는 재산관련사무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이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선순위 추정상속인을 파악하고 그들의 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구인 또는 후견인 후보자가 유일한 선순위 추정상속인이거나, 선순위 추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건본인 부모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아 사건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친족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추정상속인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송달가능주소를 파악하여 동의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에 추정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의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는 어떠한 서류인가요?

A 사건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사건본인이 정서적 거부감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특정후견은 후견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개시될 수 없는 것이지,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견대상자가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의서 또는 의향서 모두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후견심판 시 후견 대상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사회조사보고서 작성하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감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45조의2 1항).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후견의 경우 법원은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가사소송법 45조의2 2항)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후견사업에서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하고 있어 정신상태 등에 대한 판단자료로 '사회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및 생활상황,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의사소통능력, 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및 대리가 필요한 업무 등 후견의 필요성과 후견인의 권한을 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사건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하는 사건본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에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의 일반적인 예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의 샘플은 별도 서식 자료/**서식4 참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하기

각 필요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후견개시심판청구의 소명자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특정 후견개시심판청구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작성하면 되고 심판 진행 중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특정후견심판청구서의 샘플은 별도 서식 자료[서식1 참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6〉 특정후견심판청구서의 구조

목차	내용
기본 정보	심판청구명,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기재
청구취지	형식에 맞춰 기재
청구원인	청구인의 지위
	사건본인 사무처리 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특정후견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특정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소명자료	사건본인에 관한 서류
	사건본인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서류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후견감독계획서
첨부서류	위 각 소명자료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소송위임장 혹은 심판대리허가신청서
	인지송달 납부증명

※ 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의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 작성하며,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 작성합니다.

마. 후견심판청구서 접수하기⁴⁹⁾

후견심판의 청구권자는 특정후견심판청구서가 작성되고 심판청구에 필요한 첨부서류 및 소명서류들이 준비되면 이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청구인이 직접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접수를 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근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정보나 문서제출 등을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를 하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심판청구서와 제출서류를 문서파일로 변환하기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 및 소명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파일로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HWP, DOC, PDF, JPG 등의 다양한 형식의 문서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에서는 PDF 파일 이외의 형식의 파일들은 자동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PDF 형식의 문서파일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변환한 파일의 파일명을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후견인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와 같이 파일명으로 문서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심판청구서 중 '청구취지 별지'와 '청구원인'을 별도의 문서파일로 분리하기

후견심판청구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취지 별지 그리고 청구원인으로 구분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이들을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후견심판청구서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있다면, 후견인의 권한사항을 따로 표기한 청구취지 별지와 청구원인 부분을 별도의 문서파일로 만들어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청구취지는 분량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붙여넣기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문서파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49)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전자소송 안내를 참조

(3)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기

후견심판청구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원 전자소송사이트(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http://ecfs.scourt.go.kr/>로 접속)에 일반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청구인(공공후견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은 소속직원을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사용자는 해당 기관아이디로 전자송달된 문서의 조회가 가능하며, 전자제출, 사건기록조회, 전자납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속직원의 등록 및 업무에 대한 개별 권한 설정은 기관아이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후견담당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소속직원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심판청구서 접수

심판청구 준비하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http://ecfs.scourt.go.kr/>를 입력하여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2. '서류제출' 항목에서 '가사서류'를 선택



[그림 3]

3.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 선택

· 상속회복청구 -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별법	· 기타 다류 소송사건
---------------------------------------	--------------

▶ 가류 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라류 가사비송사건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의 신고 또는 취소	· 성년 창설(탈북자 또는 친생부존재 판결을 취득한 자)
· 자의종전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 친양자 입양신청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자의징계(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허가)
· 재산관리인(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특별대리인선임	· 친권에 관한 사건
·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에 관한 사건	· 상속포기(최소신고 수리)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 수리)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 부재선고 또는 취소	·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	·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	·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
· 기타 라류 비송사건		

▶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

[그림 4]

4. 전자소송 진행 동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작성을 선택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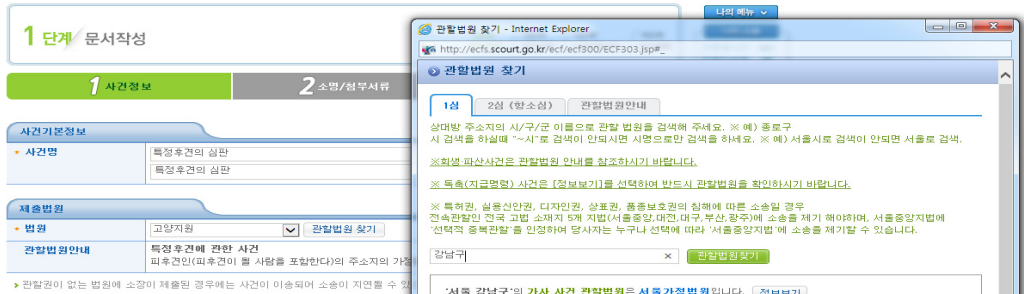
1단계 - 문서작성 [사건정보]

1. 사건기본정보의 사건명 중 '특정후견의 심판'을 선택



[그림 6]

2.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여 검색가능)



[그림 7]

3. 당사자(청구인) 정보 입력

- ① '당사자 입력' 누르고 '청구인'을 선택한 후 '내정보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사전에 입력된 청구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 ② 공공후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격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력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정보확인을 누름.
* 청구인을 자연인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및 등 록기준지를 입력하여야 함.
- ③ '기타'를 선택한 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
- ④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청구인의 기본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저장'을 누름.
- ⑤ 상단의 당사자 목록에 청구인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그림 8]

4. 당사자[사건본인] 정보 입력

- ① 당사자 기본정보 중 「당사자 구분」에서 '사건본인'을, 「인격 구분」은 '자연인'을 「사건본인의 유형」은 '사건본인'을 선택.
- ②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성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재할 것.
- ③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입력할 것.
- ④ 사건본인의 국적,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
- ⑤ 사건본인의 기본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저장하고 상단의 당사자목록에 사건본인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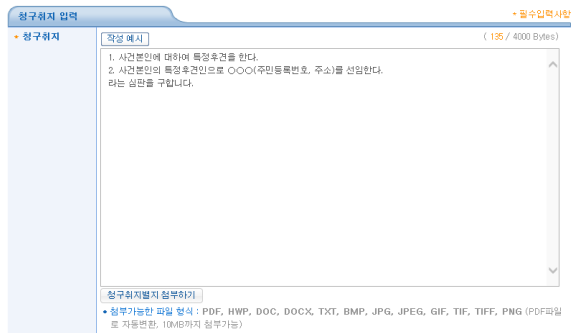
5.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록

- ① 당사자목록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록」 선택하면, 후견(감독)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별도의 창이 생성됨.
- ② 먼저 「후견인 구분」에서 후견인후보자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 「후견인의 유형」은 기타 후견인으로, 「후견관계 상세」는 시민후견인으로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 성명, 주소를 입력.
* 법인후견의 경우에는 인격구분을 법인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③ 「송달 구분」은 우편송달을 선택하고 후견인후보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입력 후 저장할 것.
- ④ 「저장」 후 상단의 후견인 목록에 후견인후보자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것.
- ⑤ 후견감독인도 동일한 절차로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반드시 후견인목록에 후견감독인후보자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공공후견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후보자가 되므로 인격구분에서 법인을 선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자치단체 장의 성명을 기재할 것.

[그림 10]

6. 청구취지 입력하기

: 후견심판청구서에서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한다. 청구취지만을 별도로 문서파일로 만든 경우에는 「청구취지 별지 첨부하기」를 눌러 첨부할 수도 있다.



[그림 11]

7. 청구원인 입력하기

: 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만을 별도의 문서파일로 만들어 HWP, PDF 등으로 저장한 후 「첨부하기」를 눌러 청구원인 문서파일을 업로드 한다.

* 전자소송에서 제출되는 문서파일은 PDF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문서파일을 사전에 PDF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첨부하면 변환시간을 단축시켜 원활한 접수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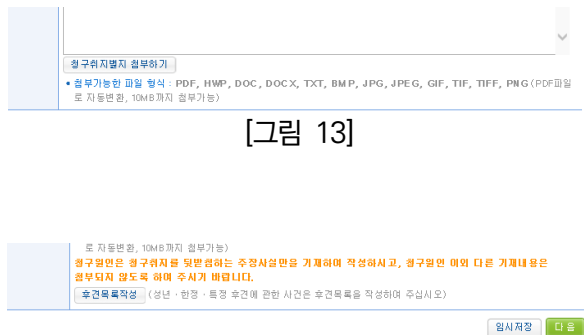
[그림 12]

8. 후견목록작성

: 특정후견인의 대리권한 범위를 정한 후견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음.

- ① 특정후견인의 권한범위 사항을 정한 대리권 목록을 별지의 형태로 문서파일을 만든 후 청구취지 입력 하단의 「청구취지 별지 첨부하기」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② 청구원인 입력 하단의 「후견목록작성하기」 선택하면 별도의 후견목록입력창이 생성됨. 청구취지 별지의 대리권 목록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됨.

* 후견목록작성을 위해서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후 가능함.



[그림 14]

1단계 - 문서작성 [소명/첨부서류]

7. 소명서류 입력하기

: 제출하여야 하는 소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회조사보고서
- ② 후견인의 범죄경력회보서
- ③ 후견인양성교육 이수증
- ④ 후견인후보자의 이력서
- ⑤ 후견인직무인수동의향서
- ⑥ 사전현황설명서
- ⑦ 재산목록
- ⑧ 이해관계인동의서 등

- 소명서류들을 첨부하고 「등록」을 누르면 하단의 소명서류목록에 리스트로 만들어짐. 소명서류를 모두 첨부한 후 서류들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그림 15]

7. 첨부서류 입력하기

: 첨부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본인

- ①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②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③ 진단서

나. 후견인후보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공공후견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생략되나 청구인이 친족인 경우에는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명에서 첨부서류들을 선택한 후 해당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누르면 하단의 첨부서류목록에 리스트로 만들어짐.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한 후 서류들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것.
- 모든 소명, 첨부서류가 제출되었으면 하단의 「작성완료」를 눌러준다.



[그림 16]

1단계 - 문서작성 [작성문서 확인]

: 소명서류와 첨부서류의 제출을 완료하고 나면 그동안 입력한 모든 정보들이 합쳐져 하나의 심판청구서가 완성된다.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문서의 내용이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누르고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된다.



[그림 17]

2단계 - 전자서명

: 「전자서명」 버튼을 눌러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다음단계인 소송비용납부 단계로 이동한다.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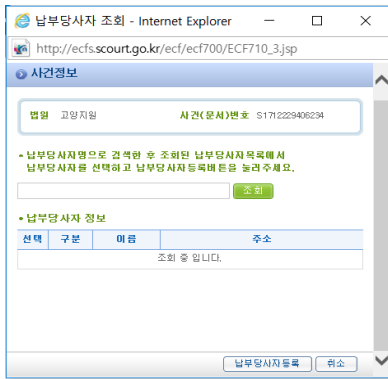
3단계 - 소송비용납부

1. 납부방식

-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중 적절한 방식 선택

2. 납부정보

- 「납부당사자선택」 누르면 별도의 창이 생성됨. 납부당사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입력하고 조회한 후 등록하면 됨



[그림 19]

-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이 동일하면 납부인 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됨.
- 인지액과 송달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받을 환급계좌를 입력

3. 결제정보

납부한 후 다음단계로 이동



[그림 20]

[그림 21]

4단계 - 문서제출



[그림 22]

3 사전처분

가. 의의

사전처분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⁵⁰⁾⁵¹⁾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신청 혹은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본안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함께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 진행 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전처분심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후견개시결정 전에도 긴급하게 피후견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처분은 권리구제에 매우 유용하지만,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 사전처분결정의 확정이 지연될 수 있고,⁵²⁾ 사전처분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⁵³⁾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⁵⁴⁾

50)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5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52)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53) 동조 제5항

54) 동법 제67조 제1항

나. 사전처분의 종류

(1)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법원은 후견개시심판에서 사건본인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 혹은 신상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신청서 예시에 관해서는 별첨 서식 자료 **[서식16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합니다.⁵⁵⁾ 이는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후견인 선임결정은 선임된 임시후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⁵⁶⁾ 또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임시후견인을 해임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⁵⁷⁾ 가정법원은 임시후견인에 대해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⁵⁸⁾

(2)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법원은 후견인(또는 후견감독인)변경청구, 후견종료청구 등 사건에서 후견인(후견감독인)의 권한범위를 변경하거나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⁵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 예시에 관해서는 별첨 서식

55)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

56) 위 규칙 동조 제5항, 제2항

57) 위 규칙 동조 제5항, 제3항

58) 위 규칙 동조 제6항

59)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자료[**서식17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견인, 후견감독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사건본인에 대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사전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를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⁶⁰⁾

한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⁶¹⁾ 즉, 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한정후견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합니다. 이는 임시후견인 선임의 사전처분 신청에서는 성년후견인의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⁶²⁾

그 밖에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⁶³⁾은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에서와 동일합니다. 후견인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시후견인과 달리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부터만 직무대행자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⁶⁴⁾

다. 불복 방법

사전처분의 절차는 심판청구 심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60)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1항

61) 위 규칙 동조 제1항

62) 위 규칙 동조 제4항

63) 위 규칙 동조 제3항

64) 위 규칙 동조 제6항

4 후견개시심판 절차

가. 가사조사

(1) 가사조사의 의의

후견개시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사건본인의 생활내력, 현재 생활상태, 사건본인의 재산내역과 관리상황, 사건 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의 범위,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사항, 후견인의 향후 후견계획,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 등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합니다. 이때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직접 후견인 후보자 및 사건본인 등을 면담함으로써, 사건본인의 상황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사건본인의 가족들이 조사관과 면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심리를 마친 이후에도 조사관을 통해 후견인이나 감독인 혹은 사건본인과 적절한 형태로 교류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상황에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조사관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후견사건에서 가사조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후견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재산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는 전화조사, (사건본인의) 법원 소환조사, 출장조사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후견인의 상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미리 가사조사에 준비하면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건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수 없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도 충분하지 않아 진료감정 기록도 불가능한 경우

- 사건본인이 법원에 직접 나올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거나 사건본인은 사건의 진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 또는 가족들 간에 후견개시 또는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경우
- 후견인 후보자가 사건본인의 유일한 가족인 경우,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연소한 경우, 방계친족인 경우

(3) 가사조사명령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제약된다는 점이 명백하고, 가족들 사이의 후견개시 및 후견인선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가사조사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사항 및 준비항목

가사조사는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및 생활환경, 후견인 후보자의 적정성, 그 밖에 후견개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① 사건본인의 성장 및 현재 생활에 대한 자료 : 생활환경, 생활 근거지, 보호자의 존부 등
- ② 사건본인의 인지능력 및 정신상태 : 현재 인지능력에 이르게 된 경위, 인지능력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악화되고 있다면 그 경과 등
- ③ 사건본인의 재산내역, 관리현황
- ④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 여부 및 향후 후견계획

(5) 조사보고서 작성 및 열람

가사조사관이 위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재판부는 가사조사보고서를 중요자료로 참고하여 청구취지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후견의 범위

를 결정하는 한편 후견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청구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공개되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가사조사보고서에서 공개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사건본인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될 때 보완할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보정명령

후견심판청구서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가사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모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서 미비한 서류들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정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상보다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미비

① 가족관계 관련 서류

-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②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③ 사전현황설명서

④ 진단서 및 진료기록

⑤ 재산목록

(2)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후견인 후보자들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후견인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경우 심판청구와 함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였다면 ①, ③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밝히면 됩니다.

-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③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후견심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목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정서를 통해서 이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후견인의 신용정보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 여부 확인

사건본인의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후견개시 및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서 또는 의견서(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들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친족의 송달가능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은 후 선순위 추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친족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⁶⁵⁾ 이를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의 샘플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식 자료 [서식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5)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보정명령

사 건 2017노단[가] [가] [가] [가]
청 구 인 경기도 고양시장
사 건 본 인 [가] [가] [가] [가]
주소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청구인은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다 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위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
재증명서
3. 사건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인 경우 그 증명서
4. 사건본인에 대한 선순위 추정상속인 [가] [가] [가] [가]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와 주민등록(등)초본
6. 재산목록(국가보조금 또는 지원금, 보험금, 예금등)

2017. 6. 20.

판사

[가]



[그림 23] 보정명령 예시

다. 정신감정명령

(1) 정신감정의 필요성

사건본인에 대하여 후견개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신감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⁶⁶⁾ 특히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기록이 없거나 그 진료기록이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의견은 진단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면이나 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⁶⁷⁾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고, 사건본인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신감정촉탁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정신감정촉탁신청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정신감정이 꼭 필요한데도 법원이 정신감정촉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 측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에 대한 판단, 향후 치료의 필요성 및 그 범위, 후견개시 등의 필요성과 관련한 감정인의 견해를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66)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67)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3) 정신감정절차를 갈음할 의견서 등 구비의 필요성

공공후견 사업의 경우 특정 후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신감정촉탁 절차의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신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후건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으며, 위 의견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건의 심판절차를 진행할 때, 사건본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표기되어 있는 진단서 등의 의견서를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하는 것도 정신감정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입니다.

라. 심문기일

심문기일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에 관하여 심문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심판의 필수 절차는 아니며, 가사조사가 있었던 경우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출석 당사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구인을 심문기일에 소환하지만 후견인 후보자, 사건본인(피후견인)⁶⁸, 이해관계인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호자가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감정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를 할 수 있고 출장조사도 거부하면서 협조하지 아니하면 임시후견인이 직권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사건번호, 청구인, 상대방, 심문기일의 일시 및 장소 등이 기재되어있으며 심판 청구인 송달장소로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소환’이라는 단어 때문에 놀라거나

68)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의 출장조사 등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재판 참석 날짜를 알리기 위해 통지문을 보내는 성격이므로 사건에 대해 숙지하고 출석하면 됩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한 이후라면 많은 사항을 심문하지는 않을 것이나, 가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상황, 후견이 필요한 이유, 후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무나 대리권의 범위,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문기일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 재산목록 제출, 후견보고서 작성, 권한초과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등 후견인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기일 전에 사회조사보고서, 심판청구서의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심문기일은 보통 1회 정도 열리지만 필요한 경우 수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소환장에 적힌 장소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소환장에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기일변경신청서(심문기일 예정일 1주일 전)**[서식19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소환장에 적힌 담당 재판부,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 불복방법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게 고지됩니다.⁶⁹⁾ 고지는 이들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는 것으로 송달이 된 때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⁷⁰⁾ 성년후견의 개시, 선임된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심판청구권자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⁷¹⁾ 즉시항고권자는 심판을 고지 받

69) 가사소송규칙 제25조, 제35조 1항

70) 가사소송규칙 제35조 2항

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인이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최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후견개시심판을 한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⁷²⁾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고법원의 결정⁷³⁾에 대하여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습니다.⁷⁴⁾ 이때의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은 항고법원의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71) 가사소송규칙 제36조

72) 가사소송규칙 제28조

73) 여기서 항고법원의 결정은 제1심의 심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원심판을 취소하거나 재판하는 것 등을 말하며, 관할위반 또는 심리편의에 따른 이송결정, 원심재판장의 즉시항고장 각하명령 등에 대한 불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4) 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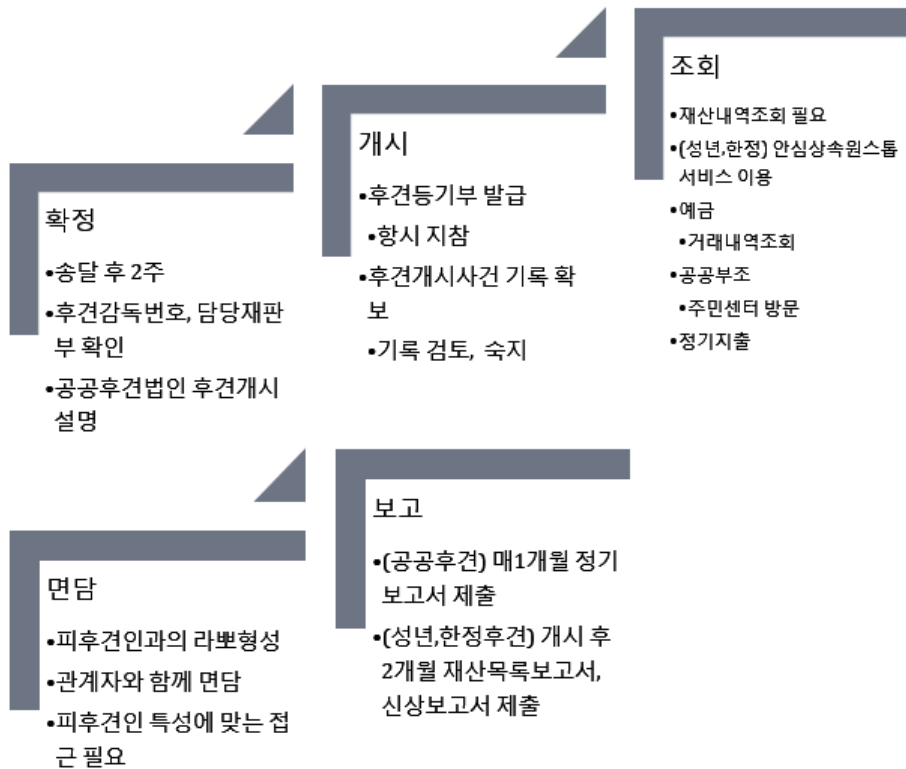
후견업무의 이해

제3장

후견업무의 이해

1 후견활동 개요

가. 초기단계



[그림 24] 후견개시 후 초기단계 활동 개요

(1)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견개시심판은 심판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청구인, 사건본인, 이해관계인 중 마지막에 송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⁷⁵⁾ 사건이 확정되면 후견인에게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이라는 서류가 송달됩니다(서식. 후견감독절차 안내문 참조).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고, 위 안내문에서 “기본후견감독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후견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기본후견감독사건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⁷⁶⁾에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내용		청사배치	
사건번호	2017후감	사건명	[전자] 성년후견감독(기본)
청구인	(OOO)	상대방	
재판부	가사. 단독(비송) 0 (전화:02-2055- . 1(라류), 7. 0(후견))	가사조사관	제: 후견감독 담당관 (전화:02-2055-)
접수일	2017.09.19	종국결과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그림 25]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처화면

75) 만약, 그 기간 내에 불복하여 항고가 된 경우라면, 항고심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바로 확정됩니다.

76)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공공후견인의 경우, 후견개시 심판확정 후 공공후견법인에 확정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후견법인은 심판문에 근거하여 공공후견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활동 매뉴얼을 준비하고, 재산상황조사 방법, 활동방법, 후견인 활동보고서 작성방법 등 대해 개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시 설명회에는 피후견인, 공공후견인, 공공후견법인 관계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 이해관계자(가족, 시설직원 등)들이 함께 참석합니다.

(2) 후견등기부 발급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후견인에 대하여 후견등기부등본이 창설됩니다. 후견등기부등본은 후견인의 지위, 권한 범위 등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로서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첨부. 후견등기부등본 예시). 후견등기부등본에는 사건 본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후견개시사건에 대한 사항, 후견인에 대한 사항, 대리권 목록 등이 기재됩니다.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이후, 후견인은 기본 후견감독사건 담당 재판부로 전화를 하여 후견등기부등본이 창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등기부등본이 창설되었다고 하면, 후견인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수수료 1매당 1,200원).

금융기관 등에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에 여러 장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너무 많은 수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이 유료이고, 가정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최대한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사본을 받도록 요구하고, 원본은 후견인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후견개시사건 기록 확보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후견인의 상태, 후견개시 사유, 후원이 필요한 사무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후견개시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개시사건 기록은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후견법인 담당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받으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기록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열람·복사신청

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후견개시사건 번호(77)를 기재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서식,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참조). 신청서가 도착한 뒤 가정법원에서 열람·복사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USB를 지참하여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사건기록 PDF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목록 조회

(가) 개요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즉시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⁷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경우 정부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1회의 신청만으로도 보유 부동산(토지), 보유 자동차, 예금, 보험, 부채, 체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후견인의 경우,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은행,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은 재산목록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있고, 개시 초기에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후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후견법인(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친족, 지인, 보호자(가족, 시설관계자 등), 사례관리자 등으로부터 대략적인 재산 내역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후견개시사건 기록에 재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77)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8)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에서는 후견개시심판문 주문에서 후견인으로 하여금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목록보고서와 신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견감독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후견감독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 은행 예금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 명의의 재산이 많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공부조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도를 주로 사용할 것이므로,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내역(잔고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조회하면 됩니다. 공공부조금이 입금되는 계좌는 피후견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면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후견인에 대한 친족, 보호자, 사례관리자 등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통상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에 “금융(예금) 관련 개인정보 조회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만약 은행에서 특정후견인에게 금융정보 조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할 경우에는, 통장관리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금융정보 조회가 필요한 것이므로, 당연히 위 대리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피후견인에게 정기예금, 적금,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이자 등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만으로는 어떤 은행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후견인은 해당 조회 결과를 가지고 각 예금이 존재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자세한 예금계좌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 공공부조

피후견인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은 피후견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소득으로서, 후견인으로서 반드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후견의 경우에 후견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피후견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재산상황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피후견인이 지원받고 있는 공적서비스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후견인은 후견심판청구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사회조사보고서를 참조하면 됩니다.⁷⁹⁾ 만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

79) 후견개시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고, 후견감독인(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후견법인에 요청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격이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피후견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라) 정기 지출[주거비용(월 차임), 병원비 등]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들어가는 정기적인 병원비, 주거지 월세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주거지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임대차기간 등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활비 납부 여부, 개인용돈, 시설 이용시 지출되는 경비 등에 대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마) 기타

피후견인이 타인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유하는 부동산, 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도 후견인이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공공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임차인이라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예금계좌에서 월 차임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5) 피후견인, 관계자(가족, 시설관계자) 면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조회하면서 피후견인과 친족, 보호자, 사례관리자 등 관계인들을 면담해야 합니다. 특히, 후견인이 되었다고 하여, 혼자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돌볼 수는 없고, 기존 조력자들의 도움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후견인과 관계인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 형성은 필수적입니다.

(가) 피후견인이 발달장애인인 경우

발달장애인의 경우,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라뵘(rapport,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⁸⁰)형성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초기에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후견활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피후견인을 자주 방문(월 4-5회)하여 피후견인의 가족, 살아온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후견인과 하고 싶은 일, 후견인이 하는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표현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관계자나 가족과 함께 피후견인을 면담하는 것이 좋고, 이전 피후견인을 지원했던 내용을 파악하여 그들과 논의 후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해 분담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에게 그들 또한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주변 사람들 중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미용실 원장, 슈퍼마켓 주인 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⁸¹ 만약 먼 친척 또는 이웃 사람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뺏어갔다든지, 피후견인이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면 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나) 피후견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중증의 치매환자는 낯선 이를 보면 경계함으로써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기억능력이 손상되어 후견인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라뵘 형성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라뵘을 형성하고 있는 자(친족, 사례관리자 등)와 함께 후견인을 면담해야 하고, 피후견인에게 무리해서 관계를 형성하려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환자들 중에는 망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후견인은 망상 증

80) 출처 : 교육학용어사전

81) 공공후견인의 경우 파악된 주변인에 대한 정보를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14. 피후견인의 안전망조력자 및 긴급연락망에 기록해야 합니다.

상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주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번 치매환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망상 증상 속에서도 잔존 능력에 의해 일관하여 드러나는 의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초기 보고서 작성

(가) 특정후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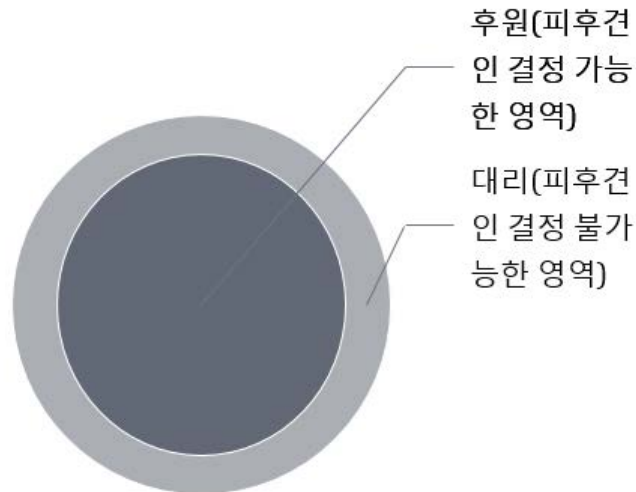
1개월마다 공공후견법인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서식. 공공후견인의 정기보고서 참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지출한 것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내역도 보고해야 합니다.

(나)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민법 제941조 제1항), 통상 심판문에는 이때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후견인은 후견개시 초기 파악한 피후견인의 재산내역과 신상에 관한 사항들을 후견감독인 또는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사무후원, 대리권 행사

(1) 원칙



[그림 26] 후원과 대리

특정후견인의 사무 후원이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어떤 사무의 수행을 조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원에는 의사결정지원과 대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종전부터 보여 온 언행, 행동,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의사를 추정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합니다.

(2) 피후견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방법

(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언어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가집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신체 비언어적 행위 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언어에 있어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 겉모습을 보고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판단은 금물이다.
-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해야지 결정 자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 사생활 존중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결정사항이 재정문제인가, 건강문제인가
- 결정하는 시기
- 결정해야 할 것이 단순한가, 복잡한가
- 정보가 얼마나 많은가
- 환경이 익숙한 곳인가, 낯선 곳인가
- 개인의 경험, 신체 및 심리적 상태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피후견인의 선호하는 방식)
- 피후견인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장소와 시간 선택
- 의사결정 과정에 주변의 다른 사람 활용 등

(나)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경우, 기억력, 지남력⁸²⁾, 언어, 시공간 능력, 실행능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 장애를 비롯하여, 망상, 의심, 환각, 우울증, 공격성 등 정신이상행동 증상을 보입니다.⁸³⁾ 치매가 심해질수록, 이런 증상도 심해지게 됩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⁸⁴⁾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⁸⁵⁾ 중증도 치매 단계 이후부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회피하거나, 설사 어떤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곧바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등 의미 있는 의사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은 잔존능력⁸⁶⁾에 따라 사안별로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바, 후견인은 피후견인·보호자 등을 수차례 면접·관찰함으로써 파악한 잔존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치매 정도가 심하여 그의 잔존능력이 거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곁에서 오랜 기간 그를 지켜보고 보호해 온 가족·이웃·사례관리자 등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그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선택하였을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3) 대리권 행사시 주의 사항 - 후견인 증빙 등

피후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그의 (추정적)의사에 합치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후견인은 반드시 자격을 증빙

82) 현재의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등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83)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사전(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3.aspx?gubun=0305 2017. 11. 19.기준) 참조

84) 치매 최경도 단계로서, 기억력의 감퇴가 시작됨으로써 다소 사회생활이나 직업능력이 감퇴되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위 중앙치매센터 치매대백과사전 참조).

85)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유로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단계인 자는 독립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후견이 개시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86) 피후견인의 기억력은 최근 기억에 대한 인식, 저장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저장된 과거기억을 상실하는 순서로 감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피후견인이라 하더라도 과거 기억에 대하여는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는 편이고, 자신이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과 관련된 능력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ex. 은행에서 일했던 피후견인은 사칙연산 능력이 비교적 오래 남음).

할 수 있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 변경 허가 심판문 등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하고, 그 사본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그와 같은 필요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나,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 상대방이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피후견인에게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후견인으로서 그 증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4)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가 있는 경우

후견인의 권한 중에는 그 권한 행사를 위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무의 범위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항상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 등 피후견인에 대한 중요한 사무들에 대하여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⁸⁷⁾

다.	기타 사항
로 합	아래 사항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
행위	가. 영업에 관한 행위 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 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바.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각각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1개 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양도, 질권설정 등 포함)하는 행위

[그림 27]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예시

87)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 제950조 제1항에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한정후견은 제959조의6에서 준용), 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를 대리해야 할 경우, 후견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후견감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법원보고, 증빙 등을 위해 후견감독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⁸⁸⁾ 만약, 후견인이 판단하기에 필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후견인은 대리권 수여 심판,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 특정명령청구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식.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후견감독인 부동의) 참조].⁸⁹⁾

(5) 권한 초과 행위가 필요할 경우 - 대리권 변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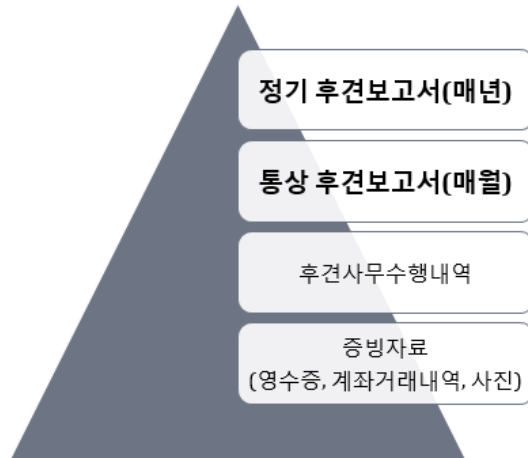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할 필요가 있거나,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대리권 수여 심판청구 또는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서식.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참조). 이때 후견인은 후견감독인, 지원기관의 조력 아래 해당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유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소명해야 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게 되면 즉시 보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무를 긴급히 수행해야 하여 법원의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라면, 감독재판부에 전화를 하여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지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⁹⁰⁾

88)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위 자료를 받아본 뒤,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 소명을 요구해야 하고, 해당 행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즉시 후견인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89)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면, 민법 제950조 제2항(한정후견은 민법 제959조의6에서 준용)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 법원에서는 통상 일단 해당 사무를 수행하되, 즉시 처분명령 청구를 제기하도록 하고, 심판을 최대한 빨리 내려 주고 있습니다.

다. 통상 후견보고서 작성(매 1개월, 매 1년)



[그림 28] 후견보고서 작성 개요

(1) 감독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정기후견보고서[매 1개월, 서식. 공공후견인의 정기보고서 참조]

후견인은 매월 「후견인의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이 위탁한 공공후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의 정기보고서」에는 피후견인의 주소 등 일반 사항, 근로(급여)관계, 사회복지급여 수령, 생활비 부담자, 생활비의 용돈 사용처,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 관련 법률행위, 신상결정 사항, 피후견인 대면횟수와 내용, 안전망 조력자 사항 등에 대해 기재합니다. 보고서 제출 시 금전출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금전출납부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후견감독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매1년, 서식. 후견사무보고서 참조]

후견개시 심판문을 보면, 법원은 후견인에게 일정기간(통상 매1년) 정기 후견사무보고서를 감독인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독인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의견서를 붙여 후견감독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외에도 후견개시 이후 매 1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별도의 법원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나홀로소송⁹¹⁾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⁹²⁾

(3) 나홀로소송을 통해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가)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후 우측 하단의 “후견업무 - 후견사무보고서”를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나홀로소송' (Solo Litigation) websit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소송의 준비', '소송의 진행', '판결후 할일', '피고의 대응', '서식 작성', '서식 모음', and '정보 센터'. Below the navigation is a banner for '나홀로 소송인을 위한 소송안내 및 서식작성 지원' (Litigation guidance and form writing support for solo litigants).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소송의 준비 안내' (Litigation preparation guide), '피고의 대응 안내' (Defendant response guide), '민사소송 절차 안내' (Civil litigation procedure guide), '서식 모음' (Form collection), '작성사례보기' (View writing examples), '소장 작성하기' (Write petition), and '기타서식 작성하기' (Write other forms). The '기타서식 작성하기' section contains a grid of links for various forms, including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양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손해배상(자)', '수표금', and '건물명도'. A red box highlights the '후견업무' (Guardianship Business) section, which includes links for '재산목록보고서' (Report on Assets and Liabilities) and '후견사무보고서' (Guardianship Report).

[그림 29]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 01

91) <http://pro-se.scourt.go.kr>

92)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사무보고서」를 매월 제출하는 「후견인의 정기보고서」와 후견감독인(지방자치단체)과의 면담결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라) 출력(PDF 저장)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출력을 하여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기본사항 재산목록1 재산목록2 수입내역 지출내역 **요약표** 첨부서면

※ 요약표는 재산목록1, 재산목록2에서 작성한 내용을 자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별도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적극재산항목	해당유무	건 수	항목소계(단위: 원)
1.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보증금 반환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예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종 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6.현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7.차 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8.유체동산 (기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9.기타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0.대여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1.기타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① 적극재산 합계			
소극재산항목	해당유무	건 수	항목소계(단위: 원)
12.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13.보증금반환채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14.기타채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② 소극재산 합계			
재산 총액			

[그림 32]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 04



재산목록보고서

서울가정법원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2017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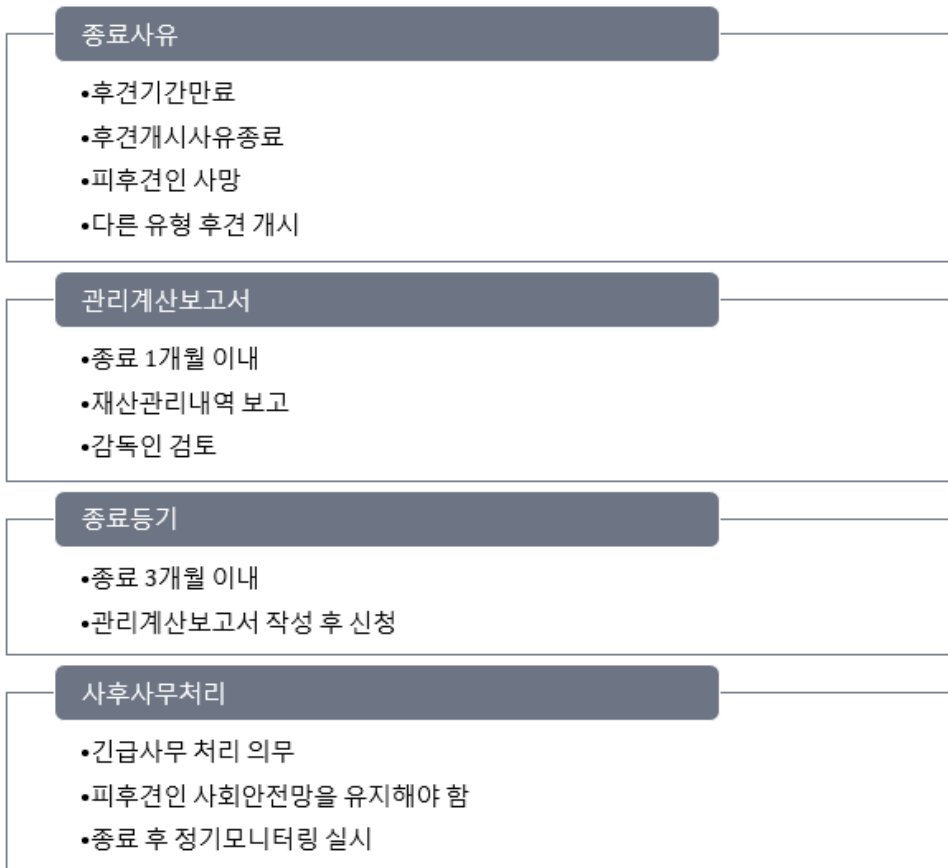
기 본 사 항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보고서 제출기간	작성 기준일인 후견개시심판확정일 로부터 2개월 이내	후견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	---------------------------------	------	---

[그림 33] 후견사무보고서 작성법 05

- (마) 완성된 후견사무보고서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피후견인 계좌 거래내역, 각종 영수증, 피후견인 생활사진, 주거지 촬영 사진, 기타 후견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완성된 후견사무보고서는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후견감독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라. 후견종료 시



[그림 34] 후견종료사무 개요

(1) 후견종료 사유

후견은 후견개시사유가 소멸하거나⁹³⁾⁹⁴⁾, 피후견인에게 다른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⁹⁵⁾,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은 종료합니다. 만약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즉시 그 사실을 공공후견법인, 후견감독인에 알려야 하고, 후견감독인은 후견감독재판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후견이 종료하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재판부에 폐쇄기본증명서⁹⁶⁾와 재산에 관한 관리계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관리계산보고서 작성[서식. 관리계산보고서, (공공후견)후견종료보고서 각 참조]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⁹⁷⁾ 이 보고서에는 후견이 개시된 이후부터 후견이 종료될 때까지의 재산관리 내역,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별도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후견사무 보고서 또는 재산목록보고서와 비슷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은 작성한 관리계산보고서를 감독인의 검토를 받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⁹⁸⁾

(3) 후견종료등기 신청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서식. 후견종료등기신청서 참조).⁹⁹⁾ 만약, 종료등기신청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93) 민법 제11조, 제14조

94) 특정후견의 경우 개시사유의 소멸은 종료 원인이 아닙니다. 특정후견은 기간이나 사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의 만료, 사무의 완료로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95) 피한정(특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거나, 피성년(특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 피성년(한정, 특정)후견인에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있는 경우

96) 피후견인 사망의 경우

97) 민법 제957조, 제959조의7, 제959조의13

98)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관리계산보고서 작성에는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57조 제2항).

99) 후견등기법 제29조 제1항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¹⁰⁰⁾ 후견종료등기를 마치면 후견인이 관리계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후견인은 관리계산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뒤에 종료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후견인은 공공후견법인에 문의하면, 종료등기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후견인의 상속인들이 먼저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¹⁰¹⁾ 후견인은 미리 상속인들에게 종료등기신청은 후견인이 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4) 사후(事後) 사무 처리

후견이 종료되더라도, 피후견인을 위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새로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¹⁰²⁾ 이때 “긴급한 사무”라 함은 종래 후견의 취지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이 종료됨으로써 피후견인이 안전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후견인은 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긴급 연락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후견법인에서는 특정후견 종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은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점검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월 1회 이상 유선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서식. 후견지속여부 조사서 참조).

100) 위법 제44조

101) 위 법 제29조 제2항

102) 민법 제959조(성년후견인), 제959조의7(한정후견인),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 제691조

마. 후견 연장신청

특정후견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후견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6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후견법 인에서 특정후견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장 여부 조사 시 피후견인, 후견인을 면담하고 「후견지속여부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서식. 후견지속여부 조사서 참조). 후견 지속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가정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 특정후견의 목표 미달성
- 피후견인에게 새로운 후견수요가 발생

바. 후견감독인 직무

(1) 개요

공공후견지원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후견감독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에 대한 후견감독인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 선임됩니다.¹⁰³⁾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대한 지도와 조언
-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민법 제940조의6)
-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민법 제940조의6 등)
- 후견인이 중요한 행위를 대리할 때 이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950조)
- 긴급 상황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대신해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민법 제940조의6)
-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민법 제953조 등)
- 후견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각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

103)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인 경우,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과 직원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2) 후견감독인 직무 실무

- (가) 원칙적으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감독보고서를 작성하는 소극적인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의 후견업무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과 자주 소통하면서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나)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그의 역할, 책임, 업무내용, 금지된 행위, 후견감독인과의 관계,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후견인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 후견감독인은 공공후견인의 정기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관리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공후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후견감독재판부에 즉시 보고하여 즉각적인 심층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라) 아울러,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복지 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내역을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구축한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의 연락망 등을 관리해야 하고, 후견인이 매년 후견감독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을 조력하고, 그 보고서에 대한 감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 후견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감독인은 공공후견법인과 후견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후견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바) 만약 후견인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후견인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제출

(가) 개요

후견감독인은 매년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후견감독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으로 하여금 매월 정기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조력하고, 후견감독보고서에는 후견감독사무수행 내역을 기재합니다. 위 보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소송으로 후견사무(감독)보고서 제출 방법¹⁰⁴⁾

1) 회원가입 및 전자소송사건 등록

후견감독인은 본인 명의¹⁰⁵⁾로 전자소송사이트¹⁰⁶⁾에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그 후 전자소송사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최초 후견개시 이후 법원으로부터 후견감독 심판문을 송달받을 때, 첨부되어 있는 “전자소송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재판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¹⁰⁷⁾

104) 전자소송 사용방법은 제2장 2. 마. 참조

105)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의

106)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107) 후견감독재판부 전화번호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안내

1. 전자소송의 장점

-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①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② 상대방 제출 서면이나 법원 작성 재판 관계 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송달받을 수 있으며, ③ 사건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등)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소송 이용방법

가. 사용자등록과 인증 절차

-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의 모든 서비스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행정청 또는 소송수행자의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log-in)을 한 후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선택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선택합니다.
- '전자소송 진행동의'를 선택하고,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를 선택한 후 아래의 법원, 사건번호, 전자소송인증번호, 소송관계인 유형(당사자, 참가인, 대리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 조정위원 등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 소송계속 중 당사자로부터 소송위원을 받았으나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 '대리인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됩니다(대리인 기본정보 입력 시 변호사, 법무법인, 소송수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게 부여된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사건번호:	
• 전자소송인증번호 :	3432963416	• 사용자명: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전자소송인증번호까지 알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위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35] 전자소송안내문

전자소송 사건등록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 01

아래와 같이 후견감독사건번호와 소송관계인유형(후견감독인),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을 클릭하면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소송사건등록 [홈](#) >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① 화면도움말 [나의메뉴추가](#) [출력](#)

● 전자소송 동의

-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소송 동의를 한 소송관계인에 대하여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을 실시하고, 이때 소송관계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또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송달간주일은 1주가 지난 날 0시가 되므로, 기간 계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소송관계인 중 1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본안과 관련된 신청사건은 본안에 관한 전자소송 동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본안사건의 1회 기일 다음날 후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더라도 본안사건과 신청사건 모두 전자문서의 제출만 가능하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기록열람이나 송달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소송유형	가사 <input type="text"/>
법원	서울가정법원 <input type="text"/>
사건번호	2017 <input type="text"/> 후감 <input type="text"/>
소송관계인 유형	후견감독인 <input type="text"/>
전자소송인증번호	<input type="text"/>

▶ 알림서비스는 자동으로 등록되며 【나의전자소송>알림서비스】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SMS 발송은 1회 시도하며, 수신인의 휴대폰 꺼짐, 수신불가한 음영지역, 잘못된 전화번호 등 발송 실패 시 재시도하지 않습니다.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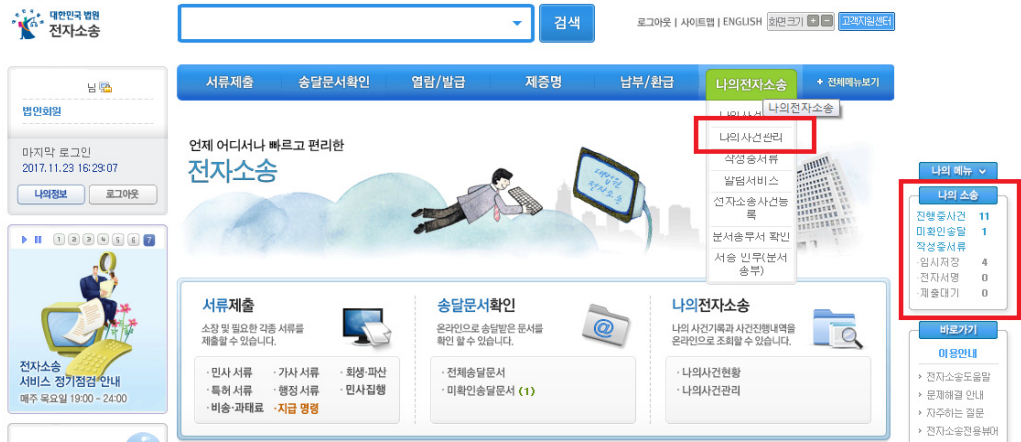
[그림 37]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 02

만약, 위 절차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 후견감독재판부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¹⁰⁸⁾

2) 후견사무(감독) 보고서 제출

현재 본인이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한 후견감독사건을 확인하려면 “전자소송 메인 화면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또는, 우측 배너의 “진행중 사건”을 클릭하면 됩니다.

108) 후견감독재판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대법원 전자소송 콜센터(02-3480-1715)로 문의하면 됩니다.



[그림 38]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01

보고서를 제출할 감독사건에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림 39]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02

소송서류 목록에서 후견사무보고서 또는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클릭합니다.109)

▶ 사건 기일 변경(연기) 신청 목적의 서류

증거관련 회신등		
· 사무수행보고서	· 감정서	· 신체감정서
· 감정평가서	· 사실조회회신	· 문서송부서
· 과세정보회신	· 금융거래정보회신	· 자녀양육안내참여확인서
· 상담보고서	· 재산명시목록	· 재산목록보고서
· 후견사무보고서	· 후견감독사무보고서	· 입양부모교육 참석확인서

▶ 타기관 회신 및 각종 의견서 서류

[그림 40]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03

작성된 후견사무보고서 또는 후견감독보고서를 첨부합니다.

● 사건기본정보

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후간
재판부	가사 (비송)	사건명	성년후견감독(기본)
원고	(직권)	피고	

● 후견사무보고서 입력 * 필수입력사항

서류명: 후견사무보고서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첨부하기 | 파일삭제하기

· 파일첨부

파일 이름	파일크기
 0.00KB/500.00MB	

▶ 입증서류(증거)와 첨부서류는 다음단계에서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PDF, HWP, DOC, DOC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 PDF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PDF형식이 아닌 문서는 자동변환되며, 변환처리를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추가 제출하실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명의인 총 1명

구분	이름 (회원아이디)	삭제
후견인	'0nyuich0n)	✕

입시저장
다음

[그림 41]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04

109) 클릭 이후 “문서제출번호”를 기재하라고 하나, 기재하지 않고 그냥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후견사무보고서에서 인용되어야 하는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틈틈이 임시저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서류 업로드가 완료되면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업로드 된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최종 확인한 뒤 제출을 완료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 필수입력사항

증거를 첨부서류로 입력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서류명
직접입력
 파일명과 동일

* 파일첨부
파일첨부 선택삭제 모두삭제

파일 이름	파일크기
 0.00KB/50.00MB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

1.일반문서(PDF파일로 자동변환, 10MB까지 첨부가능) : PDF, HWP, DOC, DOCX, TXT, XLS, XLSX,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 PDF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가 완료되면 [등록]버튼을 눌러 첨부파일을 첨부서류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첨부서류목록
총 5건
* 필수입력사항

번호	* 서류명	파일명	등록일	삭제	순서변경
1	첨부서류1-사건본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통지서	첨부서류1-사건본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통지서.pdf (123.2KB)	2017.11.25	<input type="checkbox"/>	▲ ▼
2	첨부서류2-1-용인시 부동산	첨부서류2-1-용인시 부동산등기부등본.pdf (60.7KB)	2017.11.25	<input type="checkbox"/>	▲ ▼
3	첨부서류2-2-용인시 공시지	첨부서류2-2-용인시 공시지가 조회.pdf (465.4KB)	2017.11.25	<input type="checkbox"/>	▲ ▼
4	첨부서류3-1-재산조회(은행연합회)	첨부서류3-1-재산조회(은행연합회).pdf (1.28MB)	2017.11.25	<input type="checkbox"/>	▲ ▼
5	첨부서류3-2-재산조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첨부서류3-2-재산조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pdf (71.6KB)	2017.11.25	<input type="checkbox"/>	▲ ▼

임시저장
이전
작성완료

[그림 42]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05

(다) 참고 - 전자소송으로 후견감독사건 기록 열람 방법

전자소송은 후견감독사건 기록을 전자로 즉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므로, 그 이용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¹¹⁰⁾ 전자소송에 로그인 한 뒤, 나의사건 관리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후견감독사건의 “사건기록열람”을 클릭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관리 > 홈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회면도움말 나의메뉴추가 출력

진행중사건 | 확정된사건 | 완료사건보관함 | 관심사건보관함 | 제3제무자 | 재판일정

소송유형: 전체 | 법원: 전체 | 나의법원설정

접수일자: [] ~ [] | 오늘 | 3일 | 1주일 | 1개월

사건번호: 2017 | 가단 | 정렬순서: 접수일자 | 법원 | 사건번호 | 조회

담당직원 지정 | 완료사건 지정 | 엑셀로 저장

※민사의 경우 본안사건만 기일정보가 표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법원	사건번호	재판부	접수일자	원고	피고	기일시간	기일장소	메뉴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7노단52956	가사21단독(비송)	2017.11.23	사단법인 온 출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7노단52931	가사21단독(비송)	2017.11.20	사단법인 온 출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7노단52900	가사21단독(비송)	2017.11.16	사단법인 온 출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동부지법	2017가단21191	민사5단독	2017.10.19	박철민 외 1 명	박일웅 외 2 명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7후감171	가사21단독(비송)	2017.09.19	(직권)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7노단2325	가사21단독(비송)	2017.03.13	(직권)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7노단2195	가사21단독(비송)	2017.03.09	(직권)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6노단11354	가사21단독(비송)	2016.12.29	(직권)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가정법원	2016노단6464	가사24단독(비송)	2016.07.22	(직권)		2017.09.14 00:00	후견 선조	이동
<input type="checkbox"/>	서울회생법원	2016하합1100127	제22부	2016.05.11	김영자 외 3 4				이동

전체 11 건 (1/2) < 1 2 >

참고하세요!

사건기록열람

소송서류제출

소송비용납부

발달서비스

남양척씨서성

세종/송남내역

기록복록소회

판단사건능력

판단사건소회

미결민중날놀관

인처리

세종병선경

[그림 43] 전자소송에서 기록열람 01

110) 만약, 전자소송사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후견감독사건 기록(자신이 제출한 보고서 등 포함)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해야만 함.



[그림 44] 전자소송에서 기록열람 02

사. 기타 후견사무 수행 시 유용한 정보

(1) 대리권의 범위와 사무후원의 범위가 다른 경우

후견인으로 활동하다보면 대리권의 범위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후견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때 후견인은 공공후견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리권 변경 신청 또는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 특정명령 청구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서식26.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참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법원의 심판 없이 필요한 사무를 대리할 경우, 이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후견인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라면, 후견인은 공공후견법인의 도움 아래 즉시 후견감독재판부에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¹¹¹⁾ 지침을 받아야

111) 최대한 담당 판사와 직접 통화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며, 간단하게라도 필요한 대리권의 내용,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곤란할 경우

피후견인의 부모, 형제, 자녀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후견인은 그들의 각종 민원성 요구에 대응하느라 오히려 피후견인을 위한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후견인의 업무 수행 욕구가 저하되고, 이는 피후견인의 복리 저하로 이어지므로, 후견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후견인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¹¹²⁾,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2 주요 후견 사무

가. 신상보호영역

(1) 주소 및 거소의 결정

(가) 서론

피후견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이사를 가거나, 시설에 거주하던 피후견인이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최적의 주거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도움아래 모색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피후견인이

112) 민법 제954조, 제959조의12 등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정상황과 욕구에 맞는 주거지를 물색하는 것을 조력하기 위해 피후견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지원 현황 등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 주거마련 관련 계약(임대차 등) 체결, 변경, 해지 등

1) 피후견인의 거주지 결정과정에서 어려움

발달장애인의 거주지 지원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 7〉 발달장애인 자립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¹¹³⁾

구분	내용
입주인과의 관계	-장애특성상 입주인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부족 -입주인의 자립 및 의지부족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의 어려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구파악의 어려움 -입주인의 의사결정능력 부족
지원자(직원)	-직원역량 및 슈퍼비전 부족 -자립지원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입주인의 성향, 태도로 인한 지속적 업무의 의욕 저하
지원 및 행정체계	-기관외부의 자립지원체계 미흡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부족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원의 한계 -지원기준의 부재

2) 피후견인의 거주지 결정과정

피후견인의 거주지 결정은 거주지 이전 사유가 발생하면 거주지를 찾고 이사 및 입소

113) 김미옥 외(2015),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연장 및 집수리 지원 사유가 발생하면 사실을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하며 보수 및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표 8〉 피후견인의 거주지 결정 및 이사 지원 시의 과정¹¹⁴⁾

절차	내용
거주지 이전 사유발생	-임대차 계약 만료, 시설입소 기간의 종료, 피후견인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거주지 거주형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
거주지 섭외	-새로운 거주형태에 대한 피후견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피후견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거주지 거주형태 섭외 -거주지(주거형태) 변경의 주된 사유가 가정폭력, 학대 등의 경우, 해당 기관에 주거지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사 및 입소지원	-섭외된 거주지(주거형태)에 대한 장, 단점을 설명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 및 입소절차 지원 -지역사회의 복지관, 주민센터, 피후견인이 이용하던 시설 등을 통해 이사 비용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표 9〉 피후견인의 임대차 계약 연장 및 집수리 지원과정¹¹⁵⁾

절차	내용
사실 확인	-피후견인의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사실을 확인함
재계약 진행	-피후견인에게 재계약의 의사를 묻고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후견인의 거주지(거주형태) 결정 및 이사지원
보수 및 집수리	-피후견인의 거주지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상의하여 보수 및 수리

3) 피후견인 거주지 결정에서 후견인의 자세

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후견인 입장에서 이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4) 한국장애인부모회(20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매뉴얼

115) 한국장애인부모회(20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매뉴얼

4) 피후견인 거주지 결정에서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의 역할은 정보제공자, 중재자, 옹호자 등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¹¹⁶⁾

〈표 10〉

구분	내용
정보제공자	-거주지 선택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중재자	-입주인과 집주인간의 중재 -가족과 입주인간의 중재 -거주시설, 체험홈 등 운영주체와 입주인간의 중재
옹호자	-입주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옹호

(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관련 계약 체결, 해지, 변경, 종료 등

1) 서론

국민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로 나누어서 분양을 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주택기금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소형평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되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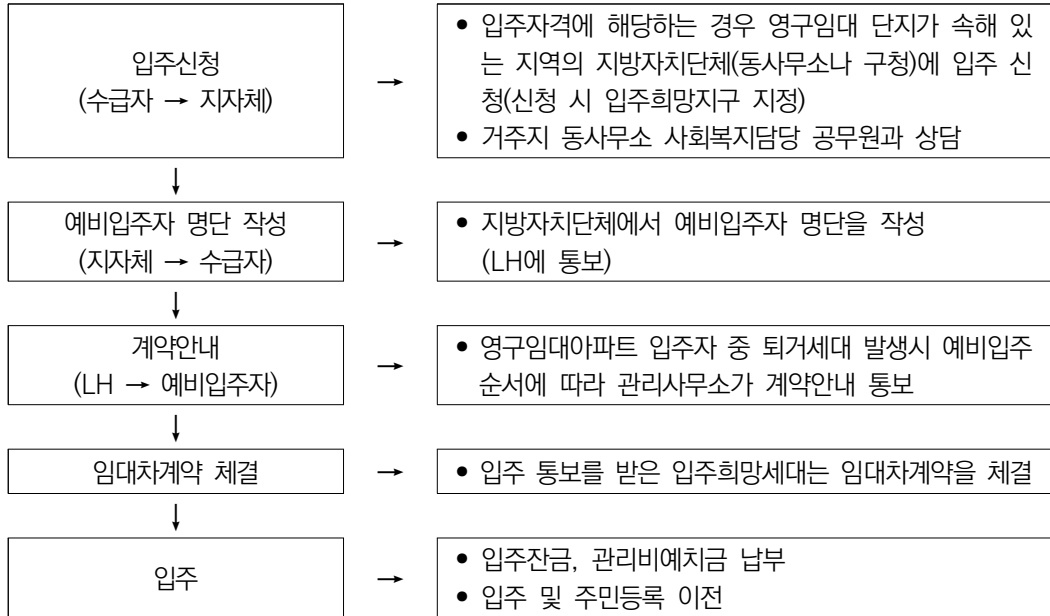
2) 영구임대주택 개요

〈표 11〉

구분	내용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50년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대략적인 보증금은 250~310만원, 월 임대료는 5~6만원으로 책정)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조건에 해당하는 자

116) 서울시복지재단(2012),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지원 매뉴얼에서 재수정

3) 영구임대주택 입주절차



[그림 45]

(라) 장애인거주시설 등 이용 계약 체결, 해지, 변경 등

1)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1. 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

[그림 46]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

2) 거주시설 서비스 신청 절차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성을 인정받은 자는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원칙 및 절차

- 가) 후견선고를 받더라도 피후견인은 그 상태가 허락되는 한 자신의 신상에 관한 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주거나 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피후견인의 주거를 이전하거나 시설 등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후견인에게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에게 신상에 관한 결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시설입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 피후견인이 그러한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에 관한 신상결정 권한이 없는 성년후견인 등은 피후견인의 주거를 변경하거나 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림 47] 거주시설 입소 절차

● **입소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01. 수급자증명서	09. 체크카드	
02. 장애인증명서	10. 증명사진 2장	
03. 신분증	11. 보호자신분증 사본 및 도장	
04. 복지카드	12. 입소의뢰서	
05. 건강진단서	13. 입소개약서	
06. 가족관계증명서	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07. 주민등록 등본	15. CCTV 운영기준 및 동의서	
08. 입소자 통장 및 도장	16. 금전관리에 관한 위임장	

• 실비대상자

01. 장애인증명서	09. 증명사진 2장	
02. 신분증	10. 보호자신분증 사본 및 도장	
03. 복지카드	11. 입소의뢰서	
04. 건강진단서	12. 입소개약서	
05. 가족관계증명서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06. 주민등록 등본	14. CCTV 운영기준 및 동의서	
07. 입소자 통장 및 도장	15. 금전관리에 관한 위임장	
08. 체크카드		

[그림 48] 거주시설 입소 서류

Q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대상자는?

A

- 무료 이용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실비이용대상자: 등록장애인

Q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와 퇴소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A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Q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 따른 대행자는?

A •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Q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절차에서?

A • 당사자가 퇴소권한을 가짐.
 • 당사자가 퇴소를 원하는데 시설에서 퇴소를 시키지 않을 경우, 후견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부모가 안 계시고 친척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설에서의 자립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퇴소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며, 친척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Q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A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유형·정도·등급,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Q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계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은?

A •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가) 서론

저소득층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경우,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을 물색하고,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피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의 내용은 주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활동을 시작하면 우선 방문하여 현재 피후견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 장애인연금 제도

장애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연금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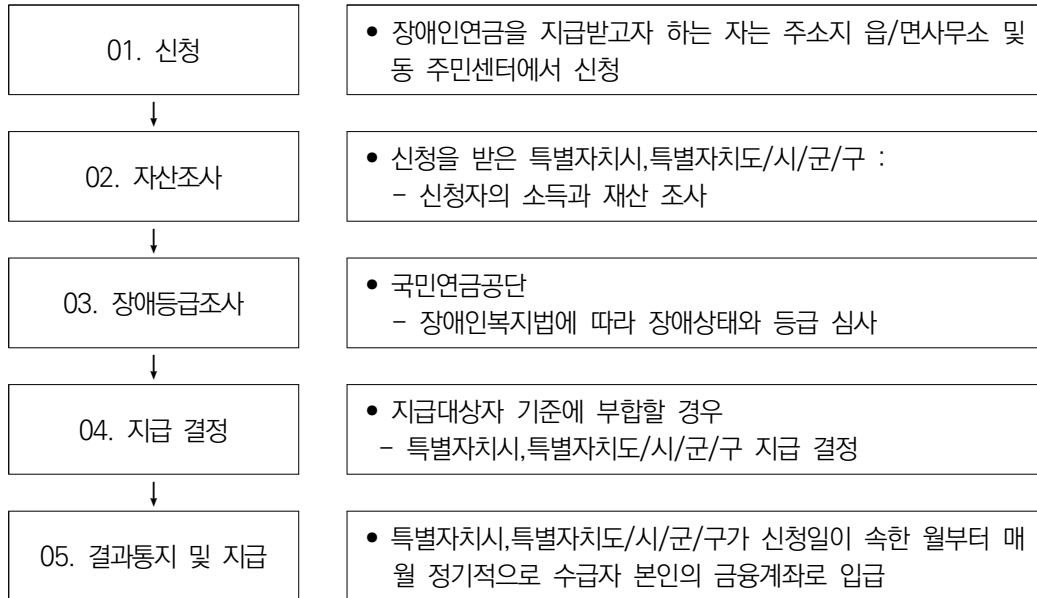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 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¹¹⁷⁾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후견인은 장애인연금 신청서, 피후견인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7) 2017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소득 기준액 : 월 1,19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 월 1,904,000원

3) 절차



[그림 49]

(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 서비스 내용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3급 등록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로 나뉘고, 각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 12〉 급여종류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표 13〉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35천원	657천원	869천원	1,091천원	
		약 47시간	약 71시간	약 94시간	약 118시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656천원 이하)	6%	26,100	39,400	52,100	65,400
	100%이하 (5,312천원 이하)	9%	39,100	59,100	78,200	98,100
	150%이하 (7,968천원 이하)	12%	52,200	78,800	104,200	105,200
	150%초과 (7,968천원 초과)	15%	65,200	98,500	105,200	105,200

2) 서비스 신청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후견인도 포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자체장이 지정한 자가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서비스

(가)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이용 신청, 계약 체결

침습적 의료행위¹¹⁸⁾가 아닌 감기 등 일상적인 병의 치료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 피후견인이 직접 의료기관과 사이에서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8) 의료행위가 신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상해나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료행위에 관해 동의권 또는 대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권 및 대리권을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의료행위 동의권 또는 대리권을 미리 부여받지 못한 후견인의 경우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대리권 수여 심판 또는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 병원 입원, 치료 등 동의 업무

피후견인이 지병이 있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에 관한 동의권 및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동의권 및 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아 피후견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계약 체결을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치료를 위해 단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인은 의료계약의 체결에 관한 동의권 및 대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후견인이 장기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거소 결정에 관한 동의권 및 대리권한이 필요합니다. 거소 결정에 관한 동의권 및 대리권한이 없는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대리권 수여 심판 또는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을 신속히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표 14〉 침습적 의료행위 동의 가능 여부

특정후견	불가능
성년후견, 한정후견	가능(민법 제947조의2, 제959조의6)

피후견인이 사고를 당하여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응급수술에 관해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은 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¹¹⁹⁾ 피후견인의 생명이 위독

한 경우 의료인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응급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¹²⁰⁾

피후견인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술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병이 있어 수술이 예견되는 경우 및 응급수술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히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동의허가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가절차로 수술이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전에 후견인이 동의하고 사후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격리시설 입소, 퇴소 행위

피후견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고, 정신병원 등 격리(폐쇄)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입소 전에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속히 가정법원에 피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서식 33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격리행위) 참조].

피후견인이 자해·타해 위험이 없고 개방형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일반 요양시설 및 장애인 입소 시설 절차와 동일하게 거소에 관한 동의권 및 대리권을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면 됩니다.

(4) 근로활동

(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상 미성년자가 아닌 피후견인

119) 민법 제947조의2(성년후견), 제959조의6(한정후견)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피후견인이 노동착취를 당할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피후견인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권 및 동의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근로활동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구직 및 근로계약 체결 단계

1) 일자리 찾기

장애인 고용포털¹²¹⁾, 한국장애인부모회¹²²⁾, 한국장애인고용공단¹²³⁾ 등을 이용하면,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지원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근로계약서(서식 34. 쉬운근로계약서 참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게 안내하고, 피후견인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직원복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이 근로자인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이 근로자인지 문제되나,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10. 9. 선고 2011구합15374 판결, 항소부제기로 확정).

121) 장애인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

122) 한국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http://www.kpat.or.kr>)의 직업재활사업 중 구인게시판 참조

1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히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받게 하는 것에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근로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를 통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에 나아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74 판결

따라서 피후견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근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후견인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은 임금 체불 등 법률분쟁까지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노무사 및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 이직을 하는 경우

피후견인이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여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 A**
- 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 ②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 ③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가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법상 신청행위

(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1) 지원 범위

피후견인이 글을 읽고 쓰는 내용이 어렵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법상의 신청행위가 어려울 경우, 후견인이 그 사무를 지원하거나 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원 시 유용한 TIP

Q 주민등·초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A 피후견인이 취업을 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Q 주민등·초본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읍, 면, 동사무소, 민원24시

Q 주민등·초본 서류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A 위임장¹²⁴⁾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¹²⁵⁾

Q 위임장 서류양식은?

A

-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인터넷 등에서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기관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됨

124)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동의일로부터 6개월임

125)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두 해당됨. 신분증은 원본을 제시해야 함

Q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A “A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대한 권한을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고 위임자와 수임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 함.

Q 인터넷으로 서류발급은?

A • 민원24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함.
•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음.

(나) 인감증명서 발급, 갱신, 분실신고

1) 지원 범위

피후견인의 인감증명서는 각종 계약체결 등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후견인이 그 관리와 발급 업무를 잘 지원해줘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피후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무권대리 행위 기타 위법행위들을 저지름으로써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원 시 유용한 TIP

Q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A 주택을 매매(매각, 양도)¹²⁶⁾하거나 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경우 필요함

Q 인감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시, 군, 구청 민원실이나 읍, 면, 동사무소, 민원24시

126)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개정 민법 제950조), 피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승낙을 얻어야 함(개정민법 제 947조의 2, 제5항).

Q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A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Q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는?

A 집을 매매하거나 자동차 구매, 상속 등 계약에 사용됨

Q 인감도장 분실한 경우 대처방법은?

A 1. 인감도장 변경 2. 인감 말소 3. 본인 또는 후견인 외 인감증명서 발급금지 신청 (인감보호신청)

Q 인감도장 분실시 필요한 서류는?

A 인감서면신고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서류첨부, 보증인 1인, 보증인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새로 판 인감도장

(다) 전입신고

1) 지원범위

피후견인이 글을 읽고 쓰는 내용이 어렵고, 전입신고 경험이 없거나 지원을 요구할 경우, 후견인이 전입신고를 지원합니다.

2) 지원 시 유용한 TIP

Q 전입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A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Q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주민센터, 민원24시(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Q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A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6) 학대피해 등 구제 사안

(가) 서론

1) 지원범위

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정신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원칙 및 절차

- 경제적·신체적·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 결정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피후견인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피후견인의 욕구와 선택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른 지원)
- 피후견인의 피해상황을 파악합니다(증거수집)
- 학대로 인한 정서적 트라우마와 의욕상실, 소극적 태도 등 피후견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 피후견인이 가진 장애와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학대에 미친 영향과 지원 제공 시 고려할 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원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 후견법인, 권익옹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합니다.

3) 권익옹호기관을 활용한 지원

후견기관 & 장애인단체 등,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등 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정보 제공과 지원방안 등을 상담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인권교육, 자기옹호교육 등 훈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4) 지원방안 예시

염전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 00씨는 학대현장에서 분리되어 다른 지역 모 체험홈에서 거주하고 있다. 법률적 지원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 거액의 돈이 생겼다. 그러자 갑자기 가족들이 등장하여 돈에 관심을 보였다. 00씨에게는 두 명의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었는데, 공공후견인 A씨는 발달장애인의 이름을 딴 재단설립을 하겠다고 하고, 공공후견인 B씨는 이를 반대하였다. 체험홈 관련 실무자는 공공후견인 B씨에 의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무자와 공공후견인 B씨는 공공후견인 A씨에게 00씨의 의사를 물어보았냐고 했더니, “예, 그러지요”라는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체험홈 실무자는 00씨는 평소에도 “예, 그러지요”라는 어구를 자주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시 재차 00씨에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자고 말하였고, 00씨의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좋은가? 라고 물으니, 00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 사례는 공공후견인 A씨가 00씨의 의사를 파악했다고 하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조문순, 2015).

(나) 피해 확인,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 민사사건 대리

1) 피해확인 및 초기대응

발달장애인은 현실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 근로착취행위 등의 사건은 주변 및 각종 매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대리권행사 또는 업무지원을 위하여

피후견인을 주기적·비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게 되므로 피해 상황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의 발달장애인이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지역사회의 조력자 또는 주변인들에 의하여 피해 상황이 확인된다면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후견인이 새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피후견인이 타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한 경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피해 상황을 제거하거나 피해의 원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여 보호하는 일입니다. 특히 범죄피해로 인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안전한 임시보호처를 찾아 피후견인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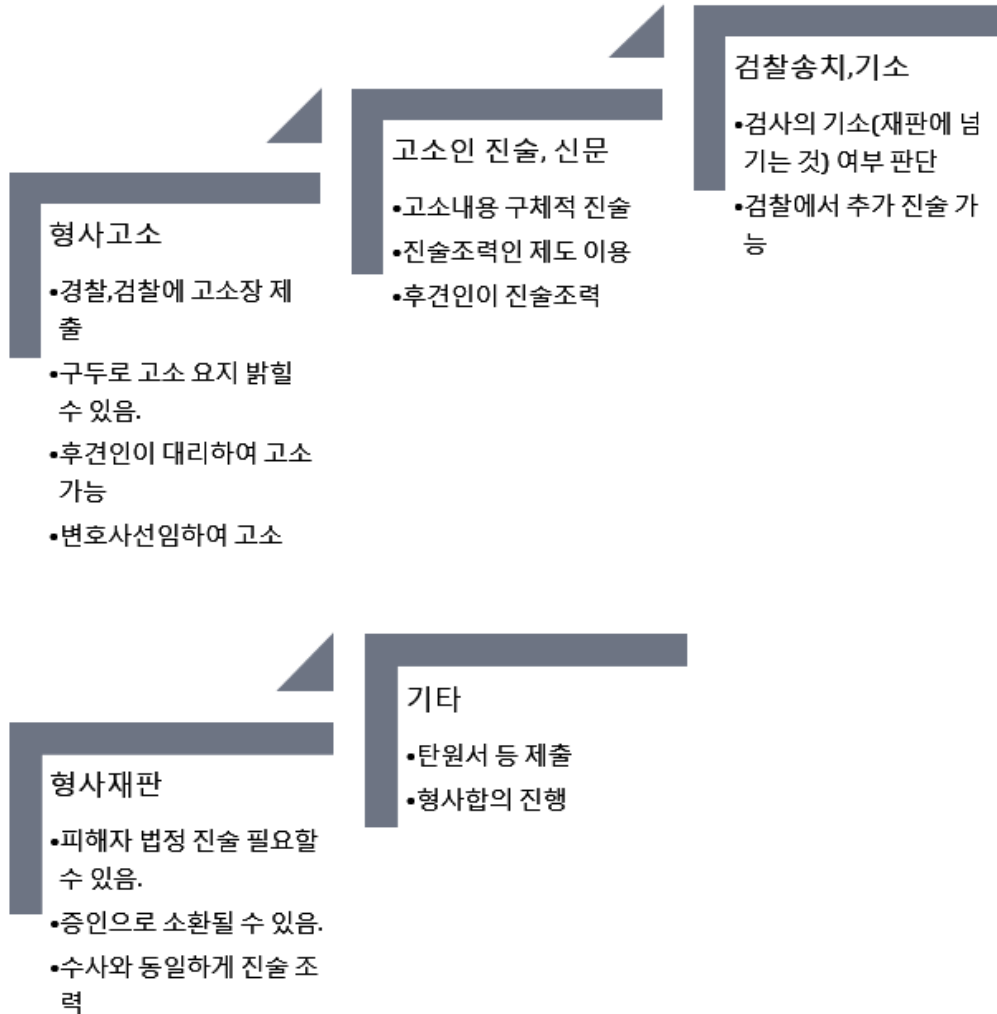
〈표 15〉 최초의 피해상황 확인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¹²⁷⁾

기관명	지원제도	관련문의
검찰청 피해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조치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가명주소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동지제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추가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제도(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1577-2584
범죄피해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긴급구호 -경제적 지원(생계비, 간병비 등) -취업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등 	1577-1295

127) 법무부 홈페이지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1899-3075),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서도 심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472-1295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1644-7077
법률홈닥터	-법률상담 및 법교육	02-2110-4253
경찰청	-신변보호조치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임시안전숙소 -가명조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동지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현장정리	18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지원	02-558-1391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1644-8295
전드림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82, 117 http://www.safe182.go.kr/index.do

2) 형사사건 피해자 조력



[그림 50] 형사사건 피해자 조력절차 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는 형법상 범죄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절차입니다. 128) 형사범죄는 초기수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를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권리구제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외

128) 형법상 범죄가 되는 사건은 '형사 고소'를 시작으로 하는 형법상 절차와 '민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하는 민법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법상 절차 또는 민법상 절차만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의 조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피후견인 혼자서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후견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이 수사기관과의 소통이나 진술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 형사 고소

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를 수사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소장 서식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의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류 작성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고소의 요지를 진술하고 경찰 또는 검찰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고소에 대한 대리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후견인이라면 따로 위임을 받거나 대리권한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고소내용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고소를 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정도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후견인이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고소인 진술 및 대질신문

고소인, 즉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통하여 양측의 진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낮은 환경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충분한 정도의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아동범죄에 있어서는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¹²⁹⁾

1. 진술조력인이란 :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2.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한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진술조력인이 존재하더라도 피후견인이 낮은 환경과 에 극단적 두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는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후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피후견인의 현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후견인의 '진술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검찰로의 송치 및 기소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가 결정된다면 가해자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인 피후견인을 증인으로써 소환할 경우 앞선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안정된 진술을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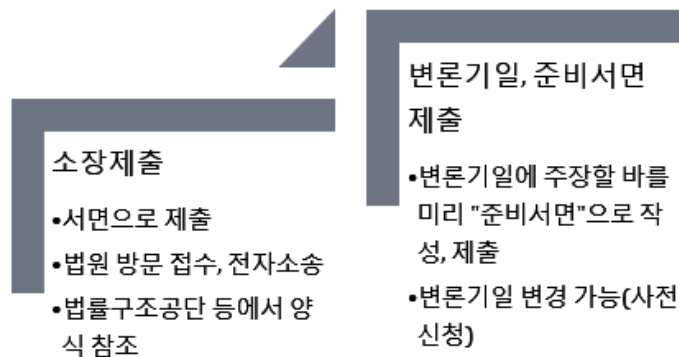
129)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j.go.kr/HP/HUM/hum_07/hum_7030/hum_703020/hum_70302060.jsp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기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 및 법원에서의 재판과정에서 고소장 외에도 피해자의 의견과 입장을 담은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하여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현격히 불리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의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사건 조력



[그림 51] 민사사건 조력절차 개요

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나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은 민사사건으로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 민사사건 소장제출

민사사건의 소장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의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변론기일의 진행 및 준비서면 등의 제출

민사재판은 관할 법원에서 열리게 되며,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주장하고 싶은 바를 진술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재판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주장할 바를 미리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변론기일이 종결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싶은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갖가지 서류가 존재합니다.

(다) 변호사 선임

위와 같은 각종 법적절차 진행은 후견인이라도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클수록 복잡한 민·형사적 법률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약 또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피후견인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흠결된 경우에 후견인이 보완해주어야 합니다. 후견인은 변호사선임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각종 기록 열람, 복사 등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상대방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복사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이나 소송 진행 중인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를 할 수 있

습니다. 담당재판부 등이 해당 기록을 검토 중일 경우 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피후견인 사후(死後) 사무

(가) 개요

피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후견인의 업무는 당연히 종료하고, 다른 후견 종료 사유와는 달리 후견종료심판도 필요 없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피후견인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후견인은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무에 한하여만 종래의 권한을 가집니다.¹³⁰⁾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상속인들에게 인계해야 하고, 관리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후견업무를 종료하여야 합니다.¹³¹⁾

(나)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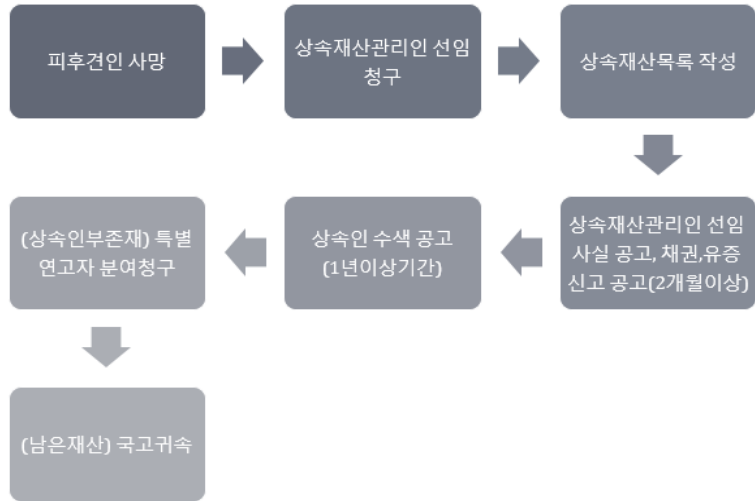
피후견인 사망과 동시에 후견인은 업무가 종료되고, 상속이 개시되므로, 후견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장례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후견인에게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한 데다가, 피후견인의 재산도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리고, 상속인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상속인이 즉시 상속재산 관리, 장례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은 상속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예외적으로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때, 후견인은 상속인과 협의하여 피후견인의 시신을 적당한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사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을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하는 사무, 사망진단서 발급사무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130) 민법 제959조, 제959조의7, 제959조의13, 제691조

131) 자세한 내용은 [제3장. 1. 후견활동 개요 라. 후견종료 시] 참조

(다)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림 52] 상속인이 없을 때 사후 사무 처리 개요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¹³²⁾, 후견인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무에는 피후견인 명의의 채무 변제, 공과금·세금 납부, 장례사무도 포함됩니다. 후견인은 즉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¹³³⁾를 하여야 하고[서식 3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서 참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 청산절차¹³⁴⁾를 밟게 해야 합니다.

(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 상속재산 청산 방법

1) 개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장래 나타날 상속인 또는 유증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지위에서 상속재산 관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그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¹³⁵⁾,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보존행위, 그 성질이 변하지 아

132) 상속인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행방이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상속인부존재 절차가 아닌, 부재자 내지 실종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133) 민법 제1053조 제1항

134) 민법 제1056조 이하

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¹³⁶⁾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¹³⁷⁾

2) 상속재산의 청산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¹³⁸⁾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다면, 관리인은 즉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¹³⁹⁾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각 그 채권과 증여받은 액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¹⁴⁰⁾ 그 후 재산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액 또는 유증 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¹⁴¹⁾

3) 상속인수색의 공고

위 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됩니다.¹⁴²⁾

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피후견인, 亡人)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

135)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136)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5조, 제118조 이때의 법원 허가는 앞서 본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심판과 비슷하다.

137)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138) 민법 제1053조 제1항

139) 민법 제1056조 제1항

140)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9조, 최고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88조 제2항, 제3항 참조

141)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3조 내지 제1039조

142) 민법 제1057조

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¹⁴³⁾

이때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라고 함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그에게 분여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합니다. 이런 특별연고관계가 있다면 법인이나 비법인사단도 분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청구는 상속인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¹⁴⁴⁾

5)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¹⁴⁵⁾ 상속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도 종료되므로, 관리인은 즉시 관리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재산관리영역

(1)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민법 제947조의2 제5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즉,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다면 처분행위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에도 법원은 비거주 부동산을 후견인이 처분,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감독인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고,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43)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144)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145) 민법 제1058조

그러나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위 법 제947조의2 제5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공공후견의 경우 대부분이 특정후견으로 진행되므로 특정후견인은 결국 후견심판결정문에 적시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후견인의 거주이전 혹은 생활비 마련 등에 쓰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후견인에게 그러한 처분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 권한변경신청'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 또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서식36.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부동산매각) 참조].

(2) 소비활동 지원

(가) 후견인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비 관리와 필요한 생활용품 구매 등의 사무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구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활동을 지원합니다. 생활물품구매 외에도 반찬서비스(복지관), 이·미용(복지관) 등 서비스연계를 통한 적극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상생활지원으로는 휴대폰 사용, 가스점검, 수도점검, 우편물처리, 가전제품 사용방법, 집안수리, 도배장판 교체, 위생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나) 지원원칙 및 절차

- 1) 피후견인이 읽고, 쓰기, 수 개념 인지(인지가능, 인지어려움, 부분적 인지)의 어려움에 따른 물품구매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2) 피후견인의 상황에 적합한 물품구매 지불방식을 의논합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이 현금으로 물품구매를 하고 잔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카드로 물품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는지, 현금+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 3) 피후견인의 생활물품 구매를 통해 소비패턴을 파악합니다.
- 4) 피후견인의 경제적 안정과 유지를 위한 지원을 살펴봅니다(소비성향파악 - 생활용품

구매계획 —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소비예방 — 궁극적으로는 물품구매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다) 지원기술: 금전관리훈련, 의사소통지원 등

- 1) 수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된 금전관리훈련 지원합니다.
- 2) 평소에 피후견인이 자신의 욕구, 선호, 감정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 3) 피후견인이 자신의 욕구, 선호, 감정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일상생활용품 및 서비스 구매결정에서 피후견인의 욕구, 선호,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식(비언어적 방식 포함)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5) 발달장애인의 경우, 휴대폰 이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통신비,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므로, 그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지원해야 합니다.

(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용한 지원

반찬지원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도배장판교체	위생관리 교육	금전관리훈련	의사소통훈련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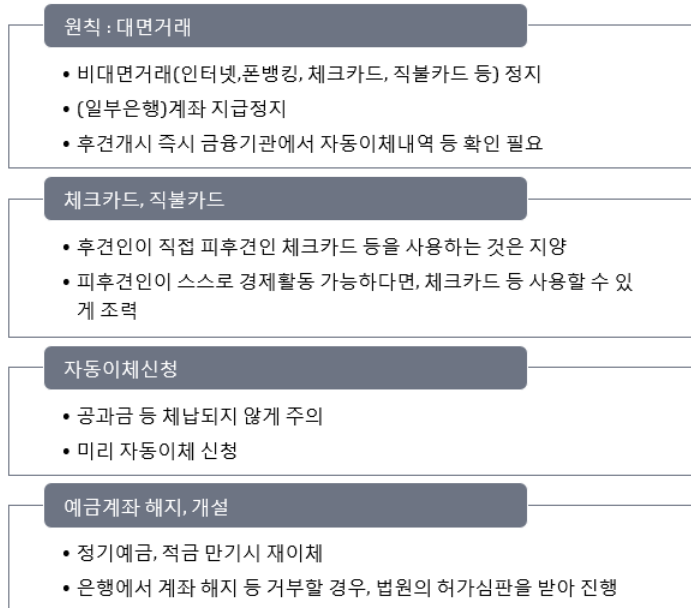
(마) 지원방안 예시

- 1) 피후견인이 구매한 생필품 목록을 토대로 과소비하는 패턴(술, 담배 등) 등을 살펴보고, 피후견인의 건강과 경제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피후견인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생필품 패턴을 토대로 생활비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 피후견인과 사전에 물품구매 목록을 토대로 예산 세우기를 지원합니다.
- 4) 피후견인에게 값싸고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정보제공).

5) 피후견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고르고, 그 값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금융업무

(가) 예금관리



[그림 53] 예금관리업무 개요

1) 후견이 개시된 경우 금융기관의 실무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손해발생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對面)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견이 개시된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지되면, 인터넷뱅킹, 폰뱅킹,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일체의 비대면(非對面)거래가 모두 정지됩니다(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참조). 일부 은행들의 경우,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후견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이체서비스마저도 모두 해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피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사실이 통지되고, 금융기관들은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를 소위 “사고계좌 : 후견 개시”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된 사실이 금융기관들에 통지된 이후에는 종래 자동이체로 지급되던 각종 공과금들이 제대로 납부되는지,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이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후견인이 확보하지 못한 비대면 거래수단이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반드시 이를 해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 후견인의 주요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 별 이용 가능 여부

☞ 표기구분: ○(가능), ●(일부가능), ×(제한), ◇(확인불가), / (미취급), 공란(무응답)

거래구분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 뱅크	카카 오	저축 중앙	신협 중앙	수협 중앙	세아 금융 중앙
예금의 신규	○	●	○	○	○		○	×	○	○	○	×	×	○	●	○	○
예금의 지급	×	●	○	○	○	○	○	○	○	○	○	○	● ×	○	○	○	○
예금의 해지	×	●	○	○	○	○	○	○	○	○	○	○		○	×	○	○
저신고	×	●	○	○	○		○	○	○	○	○	○	×	○	○	○	○
저중형 발급	○	●	○	○	○		○	○	○	○	○	○	×	○	○	○	○
계좌이체	○	●	○	○	○		○	○	○	○	○	○	×	○	×	○	○
온라인서비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	×	×	×	○		○	×			×	×	×	○	×	○	○
신용카드	×	×	◇	×	○		○	×		×	×	×	×	×	/	○	×
체크카드	○	×	◇	×	○		○	○		×	○	×	×	○	○	○	×
통장·무매체 이용업무	○	×	○	◇	○		○	×	×	○	○	×	×	○	×	○	○
자동회기기 (재휴 CD기 포함)	○	●	○	◇	○		○	○	×	○	○	×	×	×	×	○	○
지능형자동회기기	/	●		◇			○	/	/	×	/	×	×	×	/	○	/
대여 금고의 개폐	○	×	○	○	○		○	○	○	×	○	×	×	●	/	○	/
신탁상품	○	●	○	○	○		○	○		●	○	×	×	×	/	/	/

[그림 54] 각 금융기관별 가능한 금융서비스(2017. 12. 1.자 기준)¹⁴⁶⁾

146) 2017. 12. 1. 가정법원-금융기관 간담회 자료 발췌. 위 표에서 온라인업무, 통장·무매체 이용 업무, 신용카드, 체크카드 업무는 이용할 수 없는데, 착오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금융기관들은 답변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표시한 대부분의 업무들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실무와 부합하게 답변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므로, 이를 참조하면 됩니다.

2)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발급 필요성

친족후견인 또는 피후견인과 동거하는 후견인이 아닌 이상,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한 뒤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곁에서 항시 필요한 것들을 곧바로 구매하여 줄 것이 아닌 이상, 계좌이체로도 충분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데 반해,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 재산을 횡령하기 매우 쉬운 수단이고, 후견인이 이를 분실하였을 시 피해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 외에 피후견인의 곁에서 그를 돌보고 있는 부모, 배우자, 친족이 있다면, 후견인은 그들로 하여금 일단 그들 비용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피후견인 재산에서 그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피후견인들의 경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훈련은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이라고 할 것인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인지기능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후견인은 은행으로 하여금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신청 등 권한은 후견인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고, 이를 은행이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라면, 특정후견이 개시되었더라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자동이체 신청 등 업무

후견인의 업무 중 각종 공과금 납부 업무는 피후견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바, 납부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후견개시 이후 1~2개월 정도는 정기적으로 피후견인 주거지에 방문하여 공과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등이 발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재신청하거나, 고지서 송달장소를 후견인의 주소지 등으로 변경하여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예금계좌 해지, 개설

피후견인 명의의 정기예금, 적금 등이 만기가 된 경우, 후견인은 위 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운 계좌 또는 기존의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그 돈을 재이체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후견인 명의의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나 후견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행에 있는 계좌를 가까운 곳의 은행으로 옮기거나,¹⁴⁷⁾ 업무 편의를 봐주는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이체하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때 일부 금융기관들은 후견인에게 예금계좌 해지, 개설 등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금계좌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바, 후견인은 금융기관에 이는 후견인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예금 해지, 이체 업무를 거부할 경우, 후견인은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에 따라 예금 해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거래내역 조회

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된 후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이 종료된 후 관리계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적절히 정리해두어야 하고, 정기보고서에 첨부하여 후견감독인 또는 후견감독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신탁계약 체결

현재 일부 금융기관들에서는 소위 “후견지원신탁”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하여 두고, 후견인은 필요한 비용만을 수탁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후견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 행위로 인한 피후견인의 손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

147) 현재 금융기관들은 지점들을 감축하고 있는 데 반해 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지점 혹은 후견인의 업무 편의를 배려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예금을 옮기는 일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보다 계획적으로 피후견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후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이 피해보상금(범죄 피해자인 경우), 보험금, 상속을 받거나 기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등으로 갑자기 큰 재산이 생기는 경우, 후견인으로서도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바, 신탁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체결은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초과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¹⁴⁸⁾ 후견감독재판부의 신탁계약 체결 허가 심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관련 사무

1)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후견인 권한의 범위에 “보험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보험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보험계약 체결 및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험계약체결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료실비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질병담보에 대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더 부담(할증)하고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장애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 등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 보험 가입 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의 신고 안내

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이 보험 가입 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9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¹⁴⁹⁾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

148) 특정후견·한정후견의 경우, 대리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성년후견의 경우에도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9) 신고센터 이용안내, 전화 : 02-730-6363, FAX : 0505-136-0582

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하였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차별을 받았을 경우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통신서비스 이용(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 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후견인 권한의 범위에 “통신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통신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및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 등

피후견인이 가입신청 시 직접 대리점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애인 복지카드(시군도지사 발행)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통신사에는 후견인이 “통신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위임장 없이 대신 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이나 매뉴얼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행 통신사 약관에 따르면, 만약 피후견인이 직접 대리점에 갈 수 없을 경우, 피후견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명의자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인 후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주의점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피후견인 당사자 스스로 대리점에 가서 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가입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인이 동행하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 친척, 지인이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금을 받는 등 영리를 취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피후견인이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사전에 요금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거나, 유료서비스가 요금청구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유료서비스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데이터 등 과다한 요금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휴대폰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5) 상속 사무

(가) 상속재산 조회, 관리, 처분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은 상속인을 대리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후견인은 상속인들 중 1인에 불과한 피후견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그 지위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관리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등기를 경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아래 “(라)”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이 예금인 경우

상속재산이 예금인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예금해지 신청과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예금 이체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속인들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예금자산은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유증한다고 해 두었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방문하여 해당 예금자산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

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여 주어야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¹⁵⁰⁾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포기 등

피후견인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 한정승인,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¹⁵¹⁾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월의 기간이 시작합니다.¹⁵²⁾ 후견인 중 피후견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후견인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는 방향으로 분할협의를 적극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후견인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상속재산 회복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¹⁵³⁾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침해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상속등기 등 기타 상속관련 사무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관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¹⁵⁴⁾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전원공유의 상속등기를 하고, 후에 유산분할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특정 상속인만의 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원

150)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1) 민법 제1019조 제1항

152) 민법 제1020조

153) 민법 제999조

154) 부동산등기법 제23조3항·제27조

공유의 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유산분할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피상속인의 명의를 그대로 두고, 유산분할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는데 기한을 정해두고 있진 않으나 통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에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표 16〉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상속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 각 1통
	직접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신청인이 상속인이 아닐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한다.

다. 기타

(1) 피후견인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피후견인이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 후견인은 이를 지체 없이 후견감독인에게 알리고, 피후견인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이 기존에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동의권 및 대리권한만으로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후견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즉시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권한 확장을 위한 후견인 권한범위 변경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가해자가 된 경우 후견인은 크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 관해 의사결정

지원 및 대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후견인도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이 가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피후견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이 수사기관에서 의사소통에 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¹⁵⁵⁾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으면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후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후견인 변경, 사임

(가) 후견인 사임

후견인이 일신상의 사정 변경, 피후견인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더 이상 후견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 후견인은 후견인 사임 허가 및 후견인 선임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서식38. 특정후견인 사임허가심판청구서 참조).¹⁵⁶⁾ 이는 후견인이 사임하더라도 곧바로 업무를 인계받을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피후견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후견감독인, 공공후견법인, 후견감독법원과 적절히 협의하여 후임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나) 후견인 해임

후견인이 그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유지하는 것이 피후견인의

155) 경남 경찰청 발달장애인 수사 매뉴얼 참조

156) 민법 제939조(성년후견인), 제940조의7(성년후견감독인), 제959조의3 제2항(한정후견인), 제959조의5 제2항(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9 제2항(특정후견인), 제959조의10 제2항(특정후견감독인)

복리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¹⁵⁷⁾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후견인을 해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공동후견인이 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현재 민법은 공동후견인에게 다른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동후견인은 법원에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하도록 촉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후견인 추가, 변경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인의 청구로 추가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식 39. 특정후견인 변경심판청구서 참조).¹⁵⁸⁾ 후견인은 자신 외에 추가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견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도 추가로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행위 허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의 제기, 형사 고소, 고발, 형사절차에서의 적절한 변호행위 등의 소송행위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보존행위, 피후견인이 피의자로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소송행위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후견인은 시급하게 소송행위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후견감독재판부에 연락을 하여 긴급한 사정을 알리고, 빠른 허가 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서식 40.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소송행위) 참조].

157) 민법 제940조(성년후견인), 제940조의7(성년후견감독인), 제959조의3 제2항(한정후견인), 제959조의5 제2항(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9 제2항(특정후견인), 제959조의10 제2항(특정후견감독인)

158) 민법 제936조 제3항(성년후견인), 제940조의7(성년후견감독인), 제959조의3 제2항(한정후견인), 제959조의5 제2항(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9 제2항(특정후견인), 제959조의10 제2항(특정후견감독인)

(4) 기타

(가) 공동후견인인 경우,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¹⁵⁹⁾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서식 41.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서 참조].¹⁶⁰⁾

(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¹⁶¹⁾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서식 42.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참조].¹⁶²⁾ 단, 위 규정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만 적용되는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중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는데, 특정후견감독인이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후견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후견감독재판부에 알리고, 특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특정명령청구 또는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159) 민법 제949조의2 등

160) 민법 제949조의2 제3항(성년후견인), 민법 제940조의7(성년후견감독인), 제959조의6(한정후견인), 제959조의5 제2항(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2(특정후견인), 제959조의10 제2항(특정후견감독인)

161) 민법 제950조 제2항

162) 민법 제950조 제2항(성년후견), 제959조의6(한정후견)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별첨

서식

[서식 1호]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¹⁾

청 구 취 지

특정후견 심판청구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별지 기재 시무에 관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한다.
2. 1.항의 특정사무를 후원하기 위하여 김0관(주민등록번호: 580410-1*****)¹⁾, 주소: 창원시 의창구 을사동 105동 501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소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인 김0관에게 별지 기재 대리권한을 부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인 창원시장
주소 창원시 의창구 강계로 222, 105동 501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소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 건 본 인 김0관
주민등록번호 911217-1*****)
주소 창원시 의창구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후견인후보자 김0관
주민등록번호 580410-1*****)
주소 창원시 의창구
전화번호 010-2237-****

창원지방법원

1) 한국장애인개발원 특정후견심판청구서 서식 참조

[별 지]

청 구 원 인

특정후견의 기간	5년
특정후견사무	의료서비스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주거마련에 관한 사무 후원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후원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후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의·종료결정 및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사건본인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시키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을 것) 주택임대차, 복지시설이용계약 등 주거마련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신청, 수령,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금전 관리(통장 관리, 현금·체크카드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 은행업무(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예금계좌 해지 및 예금 관련 개인정보조회, 적금·보험 가입, 각종 빈 검업무, 예금 인출, 보혈금·적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공법상의 신청행위(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재산서류 발급,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2.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가. 사건본인의 상태

- 1) 사건본인은 1991. 12. 17. 생으로, 2010. 8. 5. 삼성정신과의원 정신과 전문의 김00태로부터 “의사소통 전혀 안되며 중증간질, 자폐 등 동반됨. 지능 지수 39 이하이며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현저히 곤란해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받아 2012. 7. 20. 지최장에 1급(부장예: 자폐성 장애)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은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바, 이에 대해 00신경정신과의원 정신과 전문의 김00는 2009. 4. 23. “만성의 간질환자이며 치료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가 곤란함”이라는 소견을, 00정원 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0수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음”이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소명자료.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사건본인의 2010. 8. 5.자 장애진단서, 사건본인의 장애인증명서, 사건본인의 2009. 4. 23.자 장애진단서, 사건본인의 2013. 8. 2. 3.자 장애진단서 각 참조).

5) 사건본인은 특수학교인 00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뇌전증 및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과체중으로 인해 각종 성인질환이 의심되며, 치아상태가 안 좋아 틀니착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소명자료, 사회조사보고서 II, 사건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참조).

나.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

1) 일상생활 영역

사건본인은 혼자 결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으나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식사 시 관찰 및 지원을 요합니다. 한편, 사건본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용변 후 뒤처리 가능하며, 목욕하기·양치 등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소명자료, 사회조사보고서 II, 사건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참조).

2) 인지능력

사건본인은 특수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읽기·쓰기를 할 수 없고, 수 개념, 금전 개념, 날짜 개념, 위치 개념 등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본인은 집안에서 방, 화장실 등의 위치는 알 수 있으나, 집 이외의 장소에 대한 위치 개념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소명자료, 사회조사보고서 II, 사건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참조).

3) 의사소통능력

사건본인은 간단한 단어로 된 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긴 문장으로 된 말은 이해할 수 없고, 불분명한 소리나 몸짓, 표정 등으로 간단한 의사를 표

2) 사건본인은 이전에 한정치산이나 금지산 선고 성년, 한정, 특정 등의 후견 심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소명자료,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참조).

3) 사건본인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김0관, 어머니 심경0정, 형 김0준이 있는데, 심0정은 청각장애 5급 장애인으로서 만성 B형간염, 척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김0준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김0관, 심0정, 김0준과 창원시 소재의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0정은 사건본인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소명자료,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제직등본, 심0정의 후견심판청구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사회조사보고서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각 참조).

4) 사건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로서,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 832,750원(4인 가족 기준)²⁾, 장애인연금 282,600원을 각 수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수당 20,000원도 수령하여 총 1,135,350원의 공적이전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은 매 월 186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본인은 2015. 9. 29. 기준으로 21,087원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소명자료, 사건본인의 장애인연금등대상자확인서, 사회조사보고서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각 참조).

²⁾ 위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사건본인의 형 김0준 명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할 수 있을 뿐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명자료, 사회조사보고서 II, 사건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참조).

4) 사무처리능력

사건본인은 문맹이고 수개월·금전개념이 없으므로, 은행업무, 공문서발행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의 구매 등 간단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소명자료, 사회조사보고서 II, 사건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참조).

다. 사무후원의 필요성

1) 사무후원의 필요성의 원인 및 특정후견 개시의 적합성

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건본인은 읽기·쓰기를 할 수 없고, 수개월, 금전개념 등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은행업무, 일상생활용품구매 등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은 법적 권한을 가진 후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은행업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는 특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나) 우선, 사건본인은 간단한 단어로 된 말은 이해할 수 있고, 소리나 뜻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한 활용하여 사건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는 특정후견을 개시하여 사건본인을 후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 존중’이란 피후견인이 후견의 일방적인 재체로서가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잔존능력의 존중’이란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견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 한편,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³⁾(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12조(법 앞의 평등) 제2, 3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을 향유함을 인정하고,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능력에 권리능력 외에 행위능력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는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2014. 5. 일반논평에서 ‘제12조 제2항의 법적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권리능력)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으로서, 사회에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

3) 대한민국은 2008. 12. 11. 위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고 병원치료나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를 후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3) 주거 마련에 관한 사무 후원

사건본인은 현재 청원시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김0관, 심0정, 김0준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장래 결혼하여 분가하거나 혹은 장애인거주시설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독립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보의 획득, 임대차계약서·복지시설이용계약서 내용의 정확한 이해,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 파악, 임대인과의 협상, 임대차계약·복지시설이용계약의 체결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에게 이러한 주거마련에 관한 사무를 후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사건본인은 매월 기초생활보장급여 832,750원(4인 가족 기준), 장애인연금 282,600원, 장애수당 20,000원을 수령하고 있고 86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받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이러한 급여를 신청, 수령, 변경하는 등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를 후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5)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후원

사건본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재차이체 등 각종 은행업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용품의 구매 등 간단한 계약체결에 관한

고 실시하여 법적 능력에 권리능력 뿐 아니라 행위능력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마) 성년후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평생 동안 후견이 지속됩니다. 이에 반해,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는 개시될 수 없으며, 심판 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가 정하여집니다. 한편, 다수의 법령들이 피성년후견인을 각종 임용, 면허, 자격취득 등의 걸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의 직업의 자유나 영입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보다는 특정후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의료서비스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사건본인은 뇌전증 및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체중으로 인해 각종 정인질환이 의심되며, 치아상태가 안좋아 틀니착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건본인은 병원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치료의 필요성, 치료방법, 치료계획, 치료의 결과 등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이해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
 진본인은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
 다.

6)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후원

위에서 언급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공적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인감등
 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공법상 신청행위와 관련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를 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특정후견의 목표

이상과 같이 특정후견인이 사건본인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주
 거마련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무, 일상
 생활에 관한 사무, 공법상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후원하여, 후견인의
 후견을 통해 사건본인이 이러한 각종 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고 이와 관련
 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직금을 들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에도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아버지
 김00만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이 되어 각종 보험이나 직금을 들고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사건본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 후원할 사무 및 수여할 대리권

가. 후원할 사무의 범위

이러한 후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의 후
 원, 주거마련에 관한 사무의 후원,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에 관한 사무의 후원,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의 후원, 공법상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나. 대리권의 범위

1)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의·종료결정 및 이용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사건 본인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시키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의 동의를 받을 것)

사건본인은 뇌진증 및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치아상태가 인종아 틀
 니착용이 필요한 상태인바, 병원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치료의 필요성, 치료방법, 치료
 계획, 치료의 결과, 치료의 부작용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
 스의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결정능력은 없
 다고 판단되는데, 후견인에게 의료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체결에 관한 대
 리권을 수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건본
 인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시키는 경우에는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복지시설이용계약 등 주거마련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변 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사건본인은 장래 분가하거나 거주시설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주택임대차계약 등 주거마련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며, 후견인에게 주택임대차, 복지시설이용계약 등 주거마련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신청, 수령,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사건본인은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장래에도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청, 수령, 변경, 해지 등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후견인에게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금전 관리(통장 관리, 현금·체크카드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

사건본인은 금전개념이 부족하여 적절하고 체계적인 금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후견인에게 통장 관리, 체크카드 관리 등 일상생활비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사건본인이 계획성 있는 생활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은행업무(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예금계좌 해지 및 예금 관련 개인정보조회, 적금·보험 가입, 각종 변경업무, 예

금 인출, 보험금·적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일상생활비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은행업무를 하여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예금계좌 개설 등은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후견인에게 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예금계좌 해지 및 예금 관련 개인정보조회, 적금·보험 가입, 각종 변경업무 등 은행업무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공법상의 신청행위(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재반서류 발급,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위에서 언급한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공적증명서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후견인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재반서류 발급,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법상 신청행위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특정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인의 기간	5년
특정후견사무	의료서비스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주거마련에 관한 사무 후원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후원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 후원

나. 후견인후보자의 경력 등

후견인후보자는 2014. 2. 00대학교 아동청소년 복지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한편, 후견인후보자는 현재 특수법인 00000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사단법인 00000기업협회 경남지부장, 사단법인 000000000기업협의회 이사장, 사단법인 00000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소명자료. 후견인후보자의 이력서 참조). 후견인후보자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 본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고 사건본인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후보자는 사건본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사건본인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견인후보자는 사건본인을 위하여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소명자료. 후견계획서 참조).

다. 후견인양성교육 참여 여부

후견인후보자는 아직 후견인양성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조만간 후견인양성교육을 받아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소명자료. 후견인후보자의 후견교육수료서약서, 후견인후보자의 후견인업무수행의향서 참조).

라. 후견인 결격사유

1) 후견인후보자는 민법 제937조 각호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특히, 후견인후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고, 후견인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적이

	의로서서비스에 대한 동의·종료결정 및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사건본인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을 것) 주택임대차, 복지시설이용계약 등 주거차편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신청, 수령,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금전 관리(통장 관리, 현금·체크카드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 은행업무(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예금계좌 해지 및 예금 관련 개인정보조회, 직급·보험 가입, 각종 변경 업무, 예금 인출, 보험금·직급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공법상의 신청행위(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제반서류 발급,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특정후견의 대리권의 범위	

5. 특정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사항(소명자료. 후견인후보자의 주민등록등본,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 1) 성명: 김0관
- 2) 주소: 창원시 의창구
- 3) 주민등록번호: 580410-1*****
- 4) 직업: 손해보험 운영
- 5)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의 아버지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별지 기재 사무의 후원을 위한 특정후권을 개시하고, 김0 판을 특정후권인으로 선임하며, 위 특정후권인에게 별지 기재 대리권한을 부여한다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없고 소를 제기당한 적도 없습니다(소명자료.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인후보자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후견인후보자의 소 제기부존재확인서, 사회조사보고서 Ⅶ. 후견인후보자 관련 정보 각 참조).

2) 또한, 후견인후보자는 후견인의 업무수행에 격함하지 않은 범죄(성범죄, 배임·횡령 등 재산관련 범죄, 상해·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신용침해, 비밀누설 등)와 관련된 전과가 없습니다(소명자료, 사회조사 보고서 Ⅶ. 후견인후보자 관련 정보 참조).

3) 후견인후보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후견인 판을 위한 범원제출용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습다. 한편, 후견인후보자가 본인확인용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확인용 범죄경력조회서를 범원에 제출하는 것은 발급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후견인후보자의 전과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건본인의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희망 여부

사건본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인바, 사건본인의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소명자료, 사회조사보고서 Ⅳ. 사건본인의 희망 참조).

6. 결론

소 명 자 료

[서식 2회 사전 현황 설명서]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전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지신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나.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원 거주지 및 현재 주소와 통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특별으로 지정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정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특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전 청구에 관한 사전본인의 친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친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다. 부통의자	

- 1. 사전본인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등본, 2010. 8. 5. 자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2009. 4. 23.자 장애인단서, 2013. 8. 23.자 장애인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장애인연금등대상자확인서

2. 사전본인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3.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후견계획서, 후견교육수료서약서, 후견인입부수행의향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소재기부존재확인서

4. 기타 서류

- 심07장의 후견심판청구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소명자료
2. 심판대리허가신청서
3. 사전현황설명서

4) 서식2 내지 서식15는 포진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8권, 2017. 70면 이하 참조

[서식 3호] 재산목록

재산 목록

■ 재산내역(사회조사보고서 자산 항목을 참조하여 기술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면 됨)

1. 부동산(동기사항전부중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 가. 급여
 - 나. 임대료 수입
 - 다. 이자수입
 - 라. 사회보장수급액
 - 마. 기타
2. 지출목록
 - 가. 정기적 지출
 -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서식 4호] 사회조사보고서

I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작성자가> (1, 2, 3은 음민동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작성, 4,5,6은 사회복지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사의 성상은 아래 III에서 기재하면 됨)
 성명(서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소속 및 직책(또는 본인과의 관계) : _____
 주소 : (☎ 0XXXXXXX0000000000)

[후견심판사건의 신청에 대한 사건 본인의 동의여부] 동의를 받았음 동의를 받지 않았음. 이 경우 특별한 이유()
 * 후견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사건 본인을 위해 후견개시가 필요하지 않음). 후견개시가 필요하여 동의하지 않을 때는 사유가 대표자인 제임 이 때 그 사유를 적으면 됨.

1.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년월일
주소		
금지신필경치신 또는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 5) 민법 제14조 2항은 특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은 본인의 의사를 소극적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특정후견에 대해서 반대사가 없다 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후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시할 수 있다.
- 6)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함. 주소는 가급적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주길 바람.
- 7) 한정후견, 금지신필경치신, 금치산선고와 관련된 사항은 후견등기사항전부중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 기존의 한정후견, 금지신 선고의 효력은 2018. 6. 30. 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완전한 영위능력이자 되도록 사무유원이 필요한 경우 정년후견신청을 법원에 새롭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사진본인의 일반적인 특성

결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족 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형제(제)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명) *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2 명)
활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형제(제)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본인을 포함한 총 활동가족(3명)
장애유무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등급: 2급
경제 상황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수급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건강보험 가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직장등:) <input type="checkbox"/> 기타(여유업:) <input type="checkbox"/> 아님
건강보험 특기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장보험 <input type="checkbox"/> 의료보험 1종 <input type="checkbox"/> 지역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의료보험 2종 <input type="checkbox"/> 특기 <input type="checkbox"/> 통근기 <input type="checkbox"/> 통근기 구입일: 임용 <input type="checkbox"/> 근무기 <input type="checkbox"/> 근무기 구입일: 수(3명)
주거 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다기주거시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3. 사진본인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대상 영역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함 것)

현금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연금(월 220 천원)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지니)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자녀학비지원(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분부경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웰치장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월 100천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월 천원)
복지 서비스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시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가방양자리(지니) 천원) <input type="checkbox"/> 노인경기요양복지원(시간) <input type="checkbox"/> 보충지원(지니) (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노인활동참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차량지원(지니)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관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인어발달지원(지니))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후커사업()
사회보장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신장보험(월 천원)

8) 4. 자선명목의 '수입' 중 '공적이전소득'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 참고자료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86,043	891,024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8인가구: 2,295,214원)
 ※ 현금급여 기준은 평가상계제에서 원통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원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의 전액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액 추가함으로써 지급할 수 있음
 - 교육급여, 재산급여, 장애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장액수당 및 장애연금	장액수당	장애연금
급여대상	4~6급 중증장애인	1~3급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3차상위) 기준 120% 이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13 기준) 배우자 부 월 928,000이하 배우자 월 월 580,000이하
급여액	기초생활/차상위: 3만원 차상위 초과: 2만원	최고 96,800원* 부기금여: 기초생활수급자(월 8만원) 차상위계층월 7만원, 차상위초과월 2만원)

5. 사건 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세부정보

가족 및 보호자 정보

■ 가족관계 및 보호자(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작성하면 됨!!)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통거주부

사건 본인의 사상상의 보호자(가족 등의 재산, 장모(장수, 장녀, 부계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 사건 본인의 돌봄 역할 (교양, 장애 등 참조)

- 사건 본인의 부양으로 부통산4대, 통산 1억 정도의 재산이 있음.
- 부는 건설회사에 재직하다 5년 전 퇴직 후 청원경찰로 근무하 여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음
- 사건 본인의 모는 화순군정에 근무하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음.

사건 본인의 무임할 가족의 상태의 자녀의 연령, 가족 중 장애가 있을 경우, 통거주, 가족관계에 대한 측면의 평가 등)

- 사건본인이 10살 때(1999년) 친모가 돌아가심
- 이후 아버지와 둘이 같이 살다 1999년 아버지가 재혼함.
- 아버지 재혼 후 세이머니와 둘이 거주함.
- 아버지 직장문제로 인하여 월 2회 정도 다녀가심
- 아버지 퇴임 후 아버지와 함께 세 가족이 살게 됨
- 사건 본인의 부는 건설회사에 다니던 5년 전 퇴직 후 청원경찰을 하고 있음.
- 모는 화순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심.
- 사건본인은 현재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집으로 오고 있음.
- 사건본인은 상담결과 현재 친보다 시설을 더 선호하고 있음 (어릴 적 아버지 재혼 후 세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심리적 으로 많이 단절된 상태로 보임)

보호자가 있을 때 연락처	성명	본인과의 관계
개인적 및 가족적 정보제공자		기타사항

11)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사건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표시되므로, 사건 본인의 형제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 다시 제의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자녀,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부모님의 상태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

6. 사건 본인의 주거 관련 정보

주거생활 영역

주거 상황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단기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거주시설 <input type="checkbox"/>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임미우스그룹홈 • 생활인 : 월-금 • 생활기간 : 약 3년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빌라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복합건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평수 : 31 • 방갯수 : 4 • 화장실 : 2 • 단독방사용:1
주거 상태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시기 : 1억 5천 • 전세금 : • 보증금/월세:
기타사항 (주거 환경을 직접 본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청결상태 등 포함)	
약도	
고통된 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을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적으면 됨)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그룹홈에서 거주까지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 집근근에 버스정장, 지하철역이 있으며 교통편이 좋은 편임.	

13)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만 기재.

II 시군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14)

시군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소

<직장자>(의 4.5.6을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성명(서명) : 주민번호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 XXXXXXXXXXXXXXXXXXXX

1. 일반적 사항

구분	내 용	
인상 생각 충격	1. 비행 : 독립변형 가능함 2. 신상 : 간단한 응시(리본)은 만들 수 있으며 혼자서 식사가 가능함. 3. 취업 : 개별 구직하여 못 했는데 함됨. 4. 용인 : 도움 없이 가능함. 5. 의사소통 :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함.	
현재 건강 상태	1. 질환 : 없음 2. 약복용 : 없음 3. 외상 : 없음 4. 중독 : 없음 5. 시각장애 : 없음 6. 청각장애 : 없음 7. 기타(근, 외, 감각 및 신체장애) : 없음	
교 육	기간	학교명
	20XX	XXXXXXXXXX 졸업
직업 관련 활동	기간	기관명
		XXXXXXXXXXXXX 내 용 단순임가공
대인관계 및 정서적 특성	내성적이며 고집이 뻔(본인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함)	
강 령	차분함	
장애 수용도	본인이 장애인 것을 부분적으로 인지하나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고집을 부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함.	

14) 후견인의 신상관련 서류확원 및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인지 또는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

기타	지원계공상태							
지원종류	불편정도	불편내용	조금불편	매우불편	불가능	충분	불충분	지원여부
이양기	✓							✓
복합하기	✓							✓
웃입기/웃기	✓							✓
공모신청	✓		✓					✓
용변보기	✓							✓
장보기	✓		✓					✓
식사준비	✓							✓
식사하기	✓							✓
청소/생거지	✓							✓
세탁	✓							✓
누워서 앉기	✓							✓
안아서 사기	✓							✓
화장실 가기	✓							✓
보행	✓							✓
텔레어 이동								✓
교통수단 이동			✓					✓

2.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등급	지리장애 2급	장애장예유형	무
장애발생시기	20XX년 9월 27일	장애진단기관	XXXXXXXX
약복용 여부(약명/용량)의 무	무		
또는 필요 여부	무		
장애관련 치료 현황	무		

15) 어떤 증상, 질병에 관한 약동인지 같이 표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3. 행동특성

번 호	내용	평가	기타사항
1	주요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미주 ☐가점	- 부모, 자언(자)에 서 적인 시 본인 이 이해하지 못하 는 부분에 대해서 는 고집을 부리며 단정하지 아닌 다 른 사람이 지시할 경우 동일한 행동 을 보임 (고집을 부릴 시 아무행동도 하지 않으며 심해지는 경우 고의로적인 물에 뿌려놓는 등의 행위들 함)
2	원근에 귀찮아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기 나왔다고한다며 일주일 쯤 못한다.	☐미주 ☐가점	
3	길을 잃거나 헤매면 적이 있다.	☐미주 ☐가점	
4	좌를 넘어 혹은이나 욕망을 하는 등 위법적인 행동을 보인다.	☐미주 ☐가점	
5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물 뿜 수 가 없다	☐미주 ☐가점	
6	몸전이나 옷을 망가뜨리거나 부른다.	☐미주 ☐가점	
7	의미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미주 ☐가점	- 대충고통 이용 시 문단을 통하여 혼자 이용이 가능 하니 잘못 내리는 경우가 있음

4. 인지기능(행동수준에 체크X)

인지/쓰기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쓰는데에는 무리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것을 기억하여 쓰는 것은 어려움
수계법	수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계산 능력이 부족함.
남파개념	요일, 날짜를 인지하지 못함.
위치개념	익숙한 곳은 인지하나 새로운 곳은 인지하지 못함.
자시이해력	단순한 지시는 이해하고 이행함.
상황판단력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익숙한 상황(슈퍼마켓에서 화장실 가기 등)에 대해서 는 인지하나 낯선 상황에서는 제대로 못 판단을 하기가 힘듦.

10)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을 파악하고 지인이 필요한 후견사무 및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평가요소.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① 언어이해 능력

평가내용
☐ 말을 이해하는 데 2문장 이상의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가 가능하다. (예. 어제 영미가 시 온 도란색 가방을 좋아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빨간 가방이 기쁨으로 좋아?)
☐ 말을 이해하는 데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할 때 잘 이해한다. (예. 가방 하나 보여줄까? 좋아?)
☐ 말을 이해하는 데 단어 수준으로 제시할 때 이해를 잘 한다. (예. 기쁨? 밥? 옷?)
• 기타사항 : 1개이상을 지시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음.

②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 말을 표현 할 때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영미가 주스 줘)
☐ 말을 표현 할 때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어어(영미), 두드(주스))
☐ 말을 표현 할 때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어어(영미), 두드(주스))
• 기타사항 :

③ 의사소통이해 능력

평가내용
☐ 상대방의 의사를 잘 할 때, 상대방의 대분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상대방의 의사를 잘 할 때, 상대방의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여기 없어)
☐ 상대방의 의사를 잘 할 때, 상대방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손짓, 얼굴표정)
☐ 상대방의 의사를 잘 할 때, 상대방의 억양이나 문음 이해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④ 의사소통표현 능력

• 기록방법: 내용 ☑ → 수준 ☑ 혹은 기타사항 또는 예를 기입한다. (예. 기쁨나 요구하기에서 내용: ☑의사소통 시 말로 문장을 요구하기 어렵다를 체크했다면 → 수준: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데 다시 체크한다. 수준에서 체크로향이 없거나 기타사항이 있을 시 기타사항: 무시한다되는 식의 예를 써준다.)
--

기타 사항	
내용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가 부/지칭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심야함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 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말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아니, 싫어)
수준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가 부/지칭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심야함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 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말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부정적 표현)
기타 사항	

내용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가 부/지칭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심야함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 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질문에 대한 해당 내용을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질문에 대한 해당 내용을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말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해당 대답을 표현)
수준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가 부/지칭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심야함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 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질문에 대한 해당 내용을 표현한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질문에 대한 해당 내용을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말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해당 대답을 표현)
기타 사항	

*기능3- 주관적 진술하기

내용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기분이 어쩔지, 강정이 어쩔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슬퍼요) 등을 표시한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기분 좋아요", "슬피요" 등을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말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좋아요", "슬피요" 등의 소리로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
수준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기분이 어쩔지, 강정이 어쩔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슬퍼요) 등을 표시한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하여 표현 가능 (예. "기분 좋아요", "슬피요" 등을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말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 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좋아요", "슬피요" 등의 소리로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
기타 사항	

*기능1- 요구하기

내용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복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 로도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수준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복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 로도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기타 사항	

내용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말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예. 휠체어를 끌어달라고 요구) <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 로도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끌어주세요" 또는 "휠체어 끌어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끌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끌어)
수준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말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예. 휠체어를 끌어달라고 요구) <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 로도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끌어주세요" 또는 "휠체어 끌어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끌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으로 끌어달라는 것을 표현)
기타 사항	

*기능2- 반응하기

내용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긍/승용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 로도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끄덕여보거나 음이음, 긍정적인 외양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네, 좋아)
수준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긍/승용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 로도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나 문장 으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끄덕여보거나 음이음, 긍정적인 외양을 표현) <input type="checkbox"/> 단어 수준 으로 표현 가능 (예. "오오"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
기타 사항	

나. 의사소통 단계 선정

해당 여부 (예/아니)	단계	특성	피호감인 주 의사소통 수단 유형 예 (예: 구어, 몸짓 등)
<input type="checkbox"/>	4단계 (구어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인식하고 본인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음.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인식함 ● 그림, 글자, 말, 몸짓 등 구체적인 상징이나 구체적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3단계 (상징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상장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고, 다만항으로 대화가 가능함(OK 이때 야구 가쓰모)
<input type="checkbox"/>	2단계 (의도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상장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input type="checkbox"/>	1단계 (전 의도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 주로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상장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 의사소통 상대방이 의사소통자의 행동을 해석해야함.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피레오", "빨간색", "빨간색" 등의 내용을 통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기타 사항	<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아름", "피레오", "빨간색" 등의 단어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물이나 생각을 표현)
내용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 "더 큰 모양으로 그려", "이것이 더 좋아"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수준	<input type="checkbox"/>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 "더 큰 모양으로 그려", "아름"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몸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아름", "피레오" 등 단어로 표현)
기타 사항	

IV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1.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욕구(17)

(복지지원등을 받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또는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사항 기술)

현금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용수업(본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본인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자녀학비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부장애수당(가족특별화) <input type="checkbox"/> 형제장애수당(가족특별화)(월 친원 친인) <input type="checkbox"/> 기립금지원(월 친인)
복지 서비스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호지원(월 시간)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신도신앙도우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보험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보장구제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조기구 포부타어 <input type="checkbox"/> 보장구제원 <input type="checkbox"/>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추가지원	<input type="checkbox"/> 주택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원(주택수리)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양취미 <input type="checkbox"/> 노인대학 <input type="checkbox"/> 진보화교육 <input type="checkbox"/> 문화체험 <input type="checkbox"/> 여행나눔이
기타지원	

17) '사건본인의 알현현황'에서 현재 사건본인이 지원 받는 복지서비스는 기재함.

2. 의사결정지원(18)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대리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18) 및 의사결정능력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 가결 문은 예시임). 이를 참조해서 기술하되, 절, 피호, 백을 참조해서 수적으로 기술하되, 절)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건강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현재 병원을 다니는 데 의사결정에 지장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병원을 다니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장이 필요한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입원수술, 퇴원수술,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건본인이 아프고 이어나갈지 모르니 정확히 어디가 아프게 이어나갈지 모르니 수술을 잘하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병원치료 및 입원에서 계약의 대리자 필요함(223)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원 치료, 입원에서의 동의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가(221)
거소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거주하는 곳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스로 짐장이나 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주 권리가 필요함.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신청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서의 대리자 지원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주거와 관련된 계약체결 변경, 해지의 대리권이 필요함(223) <input type="checkbox"/> 주거 권리를 복적으로 하는 계약(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포함)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신청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계약체결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223)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서의 대리자 필요함?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건본인은 현재 그룹홈에서 거주하며 주말에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나, 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서의 대리자 필요함?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8) 지원자에 의한 정보제공, 의사소통지원 등을 통하여 사건본인이 본인의 기호, 선호에 따른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함.

19) 의사결정능력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적 사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임.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임을 위임이 부하지 대리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유는 어떤 은행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용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며 아버지가 부채를 주는 경우가 많음.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기타	*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반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상황을 기술하시.	

* 위 항목을 기재할 때는 특히 후견이 필요인지 여부를 조정을 맞추시기 바림. 물론 당해 사원(대리인, 주주 등)에 대해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이 필요하다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교육, 여가, 노동에 관한 사항	간병인이 후후 거주지 변경 시 사전본인이 인지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발프로그림, 치안훈련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직업활동의 수행(보조직업장에서의 근무,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합니까? 현재 보로 작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직장내경 등의 상황에 발생 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함.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 이용계약의 대리가 필요합니까?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공법상의 행위와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인공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합니까?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의 대리가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인공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합니까? * 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입상·생활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금융 상품을 둘러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강제추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관리를 위한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금융 상품을 둘러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강제추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 20) 사전본인이 부원치료를 받 원치 않거나, 입지능력의 부족으로 그와 관련된 입원 및 치료계약에 대한 사무처리 등이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함.
- 21) 사전본인이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에 의한 대응 결정이 필요함. 다만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후견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 대해서는 대리의 인정, 대립된 사전본인이 인정 및 부원치료를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함이 따르는 것은 후견인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함이 따르는 것이 중요함.
- 22) 주가와 관련된 결정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으로서 후견인이 대리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의 대립이 있다. 따라서 사전본인의 의사결정지원을 통해 직접 결정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주가와 관련된 결정이 가능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는 것은 가능함.
- 23) 역시 신상과 관련된 결정으로 사전본인이 직접 결정이 가능한 경우, 시용이용계약의 체결 등을 특정 후견인이 지할 수 있음.
- 24) 금전관리 및 금융상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필요함. 또한 사전본인이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 친족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시용계약 및 지원자에게 지원사유를 확인하고 관리, 통제하기 위해 후견인에게 권리가 필요함. 또한 후견인의 사전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도 본인이 이를 비교판단하여 적절한 신조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중요함.
- 25) 상속의 관점에서 있어 상속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보령금 수령과 관련된 지원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기재하면 됨.

3. 후견 관련 의사결정 능력의 정도

(후견이 필요한 영력(언장, 귀소,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 등 공법상의 행위, 여가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 관리 등)의 영역, 자발사업 참가 신청일지서 참조)를 영력에 두고 작성하기 바랍. 그 영역에 있어서 후견수요자의 의사결정 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부부의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를 참조하기 바랍.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질문 하기 바랍.)

- 1) 각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
 - 없음 변동적(시간, 사안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 지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 지원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 2) 대립되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X라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유, Y 입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일관된 판단을 하는지, 부록 참조)
 - 없음 변동적(시간, 사안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 지원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음 지원 없이도 비교할 수 있음
- 3)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
 - (여 1, 2에서 변동적이거나 있다고 한 경우에만 답변하면 됨)
 - 분상화하여 정당화할 수 있음 단문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
 - 행동 또는 표정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움

▶ 시간본인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하거나? 병원치료의 내용이 복신해서 의사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나요? 후견수요자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있나요?

▶ 시간본인이 주거를 옮기야 하거나? 임차료를 올려 주어야 하거나? 지금 임차료가 비싼 것 같은가요? 아니면? 주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시간본인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신중적으로 집단방문유가의 가능성이 있나요?

▶ 시간본인이 경제적으로(불리한 계약 체결 등), 장사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나요?

▶ 시간본인이 일상생활(식사, 청소, 빨래 등)을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렵나요? 활동보조인을 이용하고 있나요? 현재 후견수요자의 일상생활상의 돌봄에 충분한 것이 있나요?

▶ 시간본인을 돌보는 기력이 있는데, 그 기력도 장약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보호에 충분한 것이 있나요?

▶ 시간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위험이 되나요?

▶ 시간본인이 사회복지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 시간본인이 사회복지 급여의 관리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나요?

▶ 시간본인이 스스로 돌잔관리자를 할 수 있나요? 은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IV 사건본인의 희망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의견장> (제 III, IV를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성명(서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_____
 주소 : (☎ XXXXXXXXXX)

※ 의사소통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선 말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의사확인되지 아니한 정제 또는 정서의 확인인자는 구분할 것.

1. 후견인에 대한 희망

1) 사건본인은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_____-
 _____ 예
 _____ 아니요

2)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_____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과의 관계(연대장사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
 _____ 부

2. 후견업무에 대한 희망

1) 본인은 후견인이 어떤 일을 도와 주셨으면 하나요?

※ 이 부분의 작성에는 도움을 받고자 하세요.

사건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역할, 사건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 를 채워줘 주는 역할, 사건본인이 결정할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사건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등이 후견인이 할 일입니다.

2) 후견인이 본인을 도와주거나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일(해당부분 체크)

- _____- 의료 관련 사항
- _____- 주거
- _____- 대인관계
- _____-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
- _____- 교육 관련 활동
- _____-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

- _____-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
- _____- 사회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 _____- 기타()

3)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내가 특별히 희망하는 내용

※ 이 부분의 작성에는 도움을 받고자 하세요.
 기명 반드시 내거 내용을 설명해 줄 것, 필요 및 희망사항 등, 통장관리 등등이 사건 본인의 희망사항의 예일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인에 대한 희망

1)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적절한 감독관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감독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필참용이요?

2) 후견감독인으로 누가 적당할까요?

V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과정 진술서

(사회조사보고서 양식 I,4,5,6 및 II, III, IV를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여기까지가 사회조사보고서의 핵심부분임)

성명: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인은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 다음 내용에 따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전 본인의 현황, 활동능력 등을 판단할 때 충분한 의견
후견수요자와의 관계: 부

사전 본인의 면담
시간(연월일 및 면담 시간): 2000년 X월 2일
장소: 엠마우스센터
분위(공중이 우려하는 공간, 상담실 등): XXXXX센터 상담실에서 조용한 분위기로 상담
하였음.

본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	
주요경력	

2000년 월 일

VI 후견인 후보자 관련 정보

* 이 부분은 후견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사전 본인

사전본인 성명	성년월일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2.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후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그 외 연력이 가능한 사항	관계: 연락처:

3. 경력 및 사전본인의 관계 등(27)

사전본인과 이해관계 유무(예): 부
피후견인후보 지원활동(대정사업) 경력: 부

4. 후견인관련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이수 여부

- 1)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 2)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
- 3)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계획임

2) 교육 이수 내용

- 교육시행기관: (후요내용을 기술)
- 교육이수 기간: (교육과정(중) 시간):

5. 후견인 권리사유 (헌법 97조) 여부: 없음 있음

1. 미성년자

27) 후견인으로서의 사무처리 능력이나 전문성, 사전본인과 의사소통 능력등 할이가능한 내용, 일반적
으로 학력, 경력, 전 직업, 자격증 등, 범인해능능력에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전본인
과의 관계 기재 요구

28) 사전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후견인인의 결정사
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것. 또한 후견인후보자가 사전본인과 입대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전본인
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등과 같이 관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재할 것.

VIII 총괄보고서

*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교육지원기관의 후견인후보추진위원회의 전문가 또는 기타 사례관리경험이 있는 자로서 후견체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사회조사보고서 참고하여 작성

사건본인 성명	성년별입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1. 본인의 인력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		

2.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1) 사건 본인의 상태
가. 장애 유형, 발견시기, 장애등급판정 사항
사건본인은 2000년 XXXX병원에서 지능지수 45이하, 사회지수 44이하로 지적2급 판정을 받았음

나. 한치산, 등치산산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없음
다. 사건본인의 생활 및 현황 일반(가족관계, 양태, 부양여부, 주거형태, 동거여부 등 포함):

1999년 사건본인의 친모 사망함.

1999년 사본본인의 부 재혼함.

아버지 재혼 후 새어머니와 동거 거주하며 아버지는 월 2회 정도 다녀가실

아버지가 청년 퇴직 후 세 가족이 함께 살다 현재 그물동에 거주하게 됨.

라. 소득(착취지원포함), 기타 생활비 증빙내용(가족의 부양 포함)

사건본인은 매월 22만원의 장애인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10만원의 소득이 있음

사건본인의 부는 현재 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하여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또는 XXX군정에 근무하며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음.

다. 병원치료와 관련된 사항: 없음

2) 사건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가. 일상생활영역: 사건본인은 보행, 의복 착탈의와 같은 일상생활의 수행이 가능하나 의사준비, 텔레 등의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나. 인격능력

사건본인은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쓰기가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억하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매양된 집행대리인
6. 법원에서 매양된 집행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파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 있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6. 위 5. 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후견인 후보자는 사건 본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일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예(V) 아니오 (), 잘 모름()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서술해 주
세요. ()

7. 아래 내용 중 귀하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 V. 1) 나는 성립의 독립 전파성, 금고, 신의유예, 구부, 탈권, 불수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V. 2) 나는 법원 및 특별 중 재산과 관련된 범죄의 전과가 없습니다.
- V. 3) 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강간, 횡방, 중과, 관행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 V. 4) 나는 명예훼손, 신용 음해, 비밀누설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 여 쓰는 것은 어려움.
 숫자를 말하며 손가락을 4개를 펴는 등 수에 대하여 인지가 많이 부족하며 돈을 인지하거나 직급 불진을 사고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음.
 다. 의사소통능력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나 간단명료로 현재 상황(결문)에 맞게 많은 말이나 대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대답을 회피하거나 고개를 부리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려 함.
 라. 사무처리능력(특히 계약체결능력, 재산관리능력, 의사결정능력)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으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작성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4. (특징)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2) 후견인 후보자의 경력 등(경력, 시민공공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 시범사업 참여 등)
 3)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
 4) 후견인 경력 사유 등
 5) 사전본인의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희망여부
 6) 사전 본인이 후견인 보수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5. (특징)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1)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기본 사항
 2)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3) 후견감독인의 경력사유 및 이해관계
 4) 후견감독계획

작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작성일 기타 특이사항	

- 3) 사무 후원의 필요성
 가. 사무후원 필요성의 원인 및 위험성(인사생활·활동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사전본인은 수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산능력이 부족함.
 나. 일상생활, 복지서비스이용, 계약체결 등 사무처리 등의 후원의 범위(주된 후원이 필요한 부분):
 사전본인은 현재 보호 계약강, 그룹홈 등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본인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단순한 단어 등은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사전본인이 어릴 적 어머니 사별 및 아버지의 재혼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충격이 많으며, 공법상의 신청행위(복지지원의 신청,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의 기회: 사전본인은 현재까지 주민 센터 업무를 진행 해 본적이 없음
 라. 본인 관련 정보제공 신청행위(은행정보, 공과금정보, 의료정보 등 본인 관련 정보제공의 신청 등)의 기회:
 사전본인은 은행에서 금전거래를 해본 적이 없으며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나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함.
3. (특징)후견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가. 독정후견의 목표	
나. 후원할 사무	-
다. 대리권	-
라. 기간	
마. 사전본인의 후견 희망 여부	

[서식 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사건본인용)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 사건본인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상기 당사자는이 본인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직등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장애인증명서 1통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장애인특례 판정을 위한 진단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원본 대조필 날인)
 6. 장애인근로대상자확인서 1통(주민센터에서 발급)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제증명서 1통(가정법원 또는 관할법원)

[서식 6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는(은) 사건 본인인씨에게 가정법원의 판사님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도 좋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고, 사건본인은 이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년 월 일

사건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사람: (인/서명)

- 소속 및 직위:

- 생년월일/성별:

[서식 8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

성명: _____ (인/서명)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상기 당사자는 _____께서 청구하는 후견심판사건에서 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첨부: 1.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후견인의 경력사유(민법937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통
 4. 후견인 후보자 교육 이수증(또는 이수서약서) 1통
 5. 이력서 1통
 6.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증명서 1통
 7.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검색적응력에 관한 자료
 8. 소재기부존재확인서

[서식 7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 이해관계인

성명: _____ (인/서명) 생년월일/남·녀: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시간본인과의 관계: _____

상기 당사자는이 사건본인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
 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첨부 : 이해관계자의 인감 증명서 1부

[서식 9호] 후견인후보자 후견교육 참가 서약서

후견인후보자 후견교육 수료 서약서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연락처:	
상기 당사자는 후견인후보자 후견교육을 받고 수료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식 10호] 후견계획서

후견계획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속/직위			연락처

사건 본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후견인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수임발고자 하는 후견사무의 내용(아래 부분은 예시임)

-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의 지원) 및 대리

	구분(필요한 영역에 체크) (예 3.에서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란 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병원을 다니어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원이나 병원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임원수속, 목원수속,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input type="checkbox"/> 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input type="checkbox"/>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임대차는 아니지만, 추가증소를 발급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진 청소나 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p>의상생활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생활비 관리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서비스구매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글을 잘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공문서 관련 서신을 이해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경제학, 신체학, 성격학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p> <p>*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p>
<p>기타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p>	

□ 의사결정용 지원 또는 대리할 때(후견사부의 수행)의 계획

○ 후견의 목표

○ 후견인이 후견할 사무

1)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

<p>교육, 이가, 노동에 관한 사항</p>	<p>거소 권리가 필요한데,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p> <p><input type="checkbox"/>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추가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p> <p>*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p> <p><input type="checkbox"/>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치료모임) 등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p> <p><input type="checkbox"/> 직업활동의 수행(보충직업에서의 근무,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p> <p>*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p> <p><input type="checkbox"/> 양반적 중립성의 행위(주민등록의 신청, 경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p> <p>주민등록등본 등을 재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주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할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p> <p>사회복지급여의 의미,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신청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대리할 필요가 있음.</p> <p>*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p>
<p>관법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p>	

[서식 11] 회 후견감독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 특정후견감독인이 위기를 희망하는 00시는 특정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000 간에, 000이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고, 00시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경우 다음과 같이 후견사무를 지원하고 감독하기로 계획하고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함.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에게 후견사무의 처리를 검토할 수 있는 비누언을 교부하기로 함.
- 특정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모르는 사항,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특정후견감독인은 그 자문에 응해 적절한 지도를 해 주기로 함.
-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이 제공할 지침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후견감독인은 후견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번상을 위해 후견인에게 매월 소정의 심비반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교육기만을 경하여 특정후견인 교육을 위한 지원,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교육기만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음).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교육기만을 경하여 특정후견인 교육을 위한 지원,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교육기만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음).
- 특정후견인은 후견이 종료한 경우, 후견종료와 관련한 사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피후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일체를 특정후견감독인에게 반환함.
- 후견업무 수행 중 하달된 피후견인에 대한 개인 정보는 가정법원, 특정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후견 업무 지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를 이외에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이를 그 밖의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약속함.

후견감독인 후보자 _____ (서명 또는 인)
 후견인 후보자 _____ (서명 또는 인)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약의 체결

3) 보호피업장에서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은 피의제결이 안됨)

○ 후견인이 대리권을 보유할 때 행사 방법 및 계획

1) 사전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 및 관리통위

2)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권

3)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장계좌은행 등이 보유한 개인 관련 정보신용데이터권

후견인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확인서

- 후견인후보자는 후견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후견인후보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확인함

- ① 성별의 관련 권리장익, 금고, 신고유에, 구류,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이 없음
- ② 배임 및 횡령 등 재산의 관련된 범죄의 전과가 없음
- ③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강간, 협박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 ④ 명예훼손, 신용 침해, 비밀누설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서식 12] 심판결과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사건번호 2016년도 항 구 인 ○○사장 ○○ 사건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사비송심판결과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당양재판부 : 제 단독) 29)
1. 대리허가신청 대리할 사람의 이름 ○○○(지방지지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주 소 ○○○ 연락처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2. 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위 ○○○은 ○○○이해서 성년후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입니다. [행위서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분증 증명하는 증명서 1부	2017. . . .
3. 위임할 사항 가. 달체의 소송 행위 나. 청구의 취하 다. 항고의 제기 또는 취하 라.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신확인 및 위임인 이름 : 항구인 ○○사장 ○○○ (불인 또는 서명) ○○가장법원(또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법) 귀중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 하단의 이통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 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 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9) 심판결구서 접수후 사건번호 및 사건배당 완료된 후 사건번호 등 표시하여 접수

[서식 13] 후견심판결과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사건번호 2016년도 항 구 인 ○○사장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를 위한 보조인 출석허가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73조).	(당양재판부 : 제 단독) 30) ○○사장
1. 보조인출석허가신청 보조인으로 출석할 사람의 이름 ○○○(○○경제인협회 서행복지나 또는 교육기관 관리자) 주 소 ○○○ 연락처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2017. . . .
위 사람은 사건번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인으로 출석하기를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조력할 사항 가. 사건 본인에게 심판 결과의 설명 나. 사건 본인의 의사 또는 희망의 전달 다. 가장법원의 결정 사항의 전달, 본인의 답변의 전달 라.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보조인 출석희망자 ○○○ (불인 또는 서명) ○○ 가장법원(또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법)
3. 보조인출석허가 신청 사유 사건번호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리기법에 출석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	귀중

30) 심판결구서 접수후 사건번호 및 사건배당 완료된 후 사건번호 등 표시하여 접수

[서식 14회] 후견심판결정구조신청서

후견심판결정구조신청서

수인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니다 특정후견게시 등의 심판
신청인 000 시장 000
주소 : 000시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사전본인 000
주소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아래 표시부분은 예시임)

- 인저대 (심판청구서 항고장 기타()]
- 변호사비용
- 기타 (정신장애 감정료)
- 위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가. 사전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심판청구서사본의 첨부로 같은 기능).
- 나. 사전 본인의 자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 위 대상자 외의 자 :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소명자료 첨부

- 다. 사전 본인 가족의 자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소송 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사전 본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신청인 000시장 (서명 또는 날인)

000가정법원 귀중

31) 가족이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소송구조 재신청제진술서

[서식 15회] 후견등기사항부존에 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명	수임인 신분확인 주민등록번호	②
-----------	--------------------	---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임인 _____는(은) 아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_____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제32조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서 제출 및 수령 또는 후견등기신청서 등의 열람 신청서 제출 및 열람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년 월 일

<위임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첨부서류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건 본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직업	무직	주소			
	이름	사건본인과의 관계	나이	직업	주소	등기여부
가족관계	○○○	본인	○○○	무		
	금액					
사건본인의 위임	내역	기초생활수급비 (만원), 장애인금 (만원, 장애수당3만원				
사건본인의 주거	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터, 영구임대)				
	소유관계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 (소유자: -)				
		임대차(월세: 보증금 원, 원)				
		가터()				
사건본인과의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내역	부동산	확인 곤란				
	예금	확인 곤란				
	자동차	확인 곤란				
	연금	확인 곤란				
	기타					

이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다른 사실이 밝혀지는 때에는 구조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2017.
신청인 ○○○서장 (서명 또는 날인)

○○ 가정법원 귀중

[서식 16회]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서

청 구 인 ○○○도 ○○○서양 ○○○

주소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게시 받은 장애인등록증에 따르면 추정연령은 저능자수 48 수준으로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합니다(참고자료 5. 사건본인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2) 의사결정능력의 정도

사건 본인은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의 사무에서도, 다른 지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위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의사결정에 쉽게 영향을 받아 내린 결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특히 2016년도호로 신청한 특정후견 등 심판청구사건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바의, 재산적, 정신적, 피하여 대한 구제와 피해 보상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후거 이전의 취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기도 어렵습니다.

3)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를 지원해 줄 적절한 사람의 부재

사건본인은 자처 장애인으로 ○○○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게는 현재 요양시설에서 거주 중인 고향의 어머니 ○○○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8. 사회복지사보고서 1.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참조).

4) 특정후견개시 등의 개요

위 사건본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정후견 등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2017년 호 특정후견 등 심판청구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7. . . 이 법원 호로 특정후견 등 심판청구를 하였습 니다.
 2. 특정후견 등 심판청구의 개요
 - 1) 의사결정능력의 장애
- 사건본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2006. 06. 06.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참고자료 4. 사건본인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2010. . . ○○○도 ○○○서 양 주소지 ○○○동 소재 ○○○원 소속 정신과 의사 ○○○에

특정후견의 기간	오 범
특정후견사무	형사절차 진행 사무
	재산적·정신적 피하여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주거 및 임시주거를 결정하는 사무
	의료서비스사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주거환경개선 사무	
특정후견의 대리권의 범위	형사법 및 민사소송법, 기타 민사적 예방조치 등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변호사 선임계약체결의 대리권
	사건본인의 재산 피해상황 임종을 위한 금융장보 조의 대리권
	통장개설 및 통장관리
	임시주거의 이용계약 체결 및 렌저 대리권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이용계약 체결 대리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약 체결 대리권

구제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간본인을 위해 인건비를 결정하는 사무에 대한 후견인의 지분이 필요하고, 임시주거의 계약 연장 및 퇴소 시 필요한 절차에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가. 지원사무

지원사무	내 용
임시절차 진행관련 사항,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주거 및 임시주거를 결정하는 사무	

나.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내 용
형사범의 및 민사손해배상, 기타 민사적 예방조치 등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변호사 선임계약체결의 대리권한, 임시주거의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 대리권	

5. 이에 임시후견인의 위임을 구하는 사전제본을 신청합니다.
6. 임시후견인으로는 ○○○을 추천합니다.

성명	○○○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시간본인과의 관계	아래관계 없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시민공공후견인)

별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신청인, 시간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시간본인) 각 1통

특정후견의 기간	○년
가시도우미 서비스 계약 체결 대리권	
기타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대한 대리권 (시간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행위)	

3. 사전제본의 필요성

- 1) 주거의 불안정성

시간본인은 ○○시 소재 ○○생활복지시설로 강제 입소되어 생활하다가 위 강제이주 사실이 인본에 알려지면서 같은 해 10, 24,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실상 집 안에서 감금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같은 해 11. 8. 00시 ○○○소제 ○○○의 임시 거주시설로 다시 입소되어 같은 달 21. 까지 생활하였고 현재 다시 현재의 거주지로 주거를 옮겨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6. 사회조사보고서 1 시간본인의 일반현황 참조).

시간본인은 점으로 특구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인정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빈 전착인 ○○○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설에 재입소되거나 이주의 위험이 있고, 위 ○○○은 시간본인의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본인의 주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 사전제본의 필요성

시간본인의 사법재판소를 받고, 양성적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시간본인을 위해 가택방문을 위한 형사법적 조처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것 뿐 아니라, 민사법적 조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이루라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후견인으로 추천한 ○○○으로 하여금 특정후견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에 노력을 발상하기까지 임시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4. 임시후견이 필요한 사항

시간본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은 시간본인을 위해 형사절차 진행관련사항 및 민사적 구제 등에 관한 제반 사무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에게 할 사항의 및 민사손해배상, 기타 민사적 예방조치 등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변호사 선임계약체결의 대리권한이 필요합니다.

[사식 17회] 후견인 직무집행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지문

-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주소 및 패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4. 장애인증명서 1통
- 5. 장애전담서 1통
- 6. 사회조사보고서 1 사건본인의 말변환장 1통
- 7. 상담기록부 1통
- 8. 견술서 1통
- 9. 추가저원 요청서 1통
- 10. 수급자증명서 1통
- 11. 장애인연금확인서 1통

2017. . . .

위 신청인 ○○○도 ○○○군수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p style="text-align: center;">후견인 직무집행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지문</p> <p>신청인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p> <p>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p> <p>후견인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p>	<p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취 지</p> <p>1. ○○가정법원 2013년0000호 ○○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주민등록번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원 인</p> <p>1.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2013년0000호로 ○○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후견인 ○○○은 선임된 후 등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의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변경심판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후견인 ○○○이 이대로 계속 관리를 한다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후견인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4. 직무집행자의 권한범위 관련된 의견 □ 기존 후견인과의 동일한 권한을 갖길 원함</p>
---	---

[서식 18호] 보정서

보정서

사 권 2017년0000
 청구인 경기도 고양시장
 사건본인 000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사건본인의 제척등본을 제출합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사건본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에 해당하지 여부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 000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상속인 000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5. 사건본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제척등본
2. 사건본인의 부 000의 제척등본
3. 사건본인의 모 000의 주민등록등본
4.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증명서
5.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2017. 7. 13.

청구인 경기도 고양시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직무집행자의 권한범위를 새로 정하권 원형(이 경우 별지 제크리스트 활용)
 5. 사건본인의 직무집행자로는 000를 추천합니다. (또는 가정법원이 직임자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직무집행자 후보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부서류

1. 가쪽관제명서 및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직무집행자후보자)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부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별소 및 폐쇄사항 포함) 1부
4. 직무집행자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별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 부존제출명서 각 1부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증명서만 제출)
5. 신청인 및 직무집행자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척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부
(소명자료)
6. 기타 (소명자료) 0부

2018. 0. 0.
 위 청구인 000 (인)

○○가정법원 귀중

[서식 19회] 기일변경 신청서

기일 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청 구 인
사건본인

위 사건에 관하여 후견인 후보자 ***에 대한 신문기일이 2000. 0. 00. 00:00시로 지정 되었으나, 후견인 후보자 ***는 해당 시간에 발표자로서 강연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출석에 곤란하므로 신문기일을 1주일 정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망 기일 :

첨 부 서 류

1. 강연 일정 증명서류 1부

2000. 0. 0.

위 후견인 후보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20회] 즉시항고장

즉시 항 고 장

사 건 2017년단0000 한정후견 개시

항고인(청구인) 000시강

사 건 본 인 000

주소 및 등록기준지

항 고 내 용

00가정법원 2017년단0000호 한정후견 개시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이 2017. 0. 00.에 심판한 것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항고인은 위 심판문을 2017. 00. 00.에 송달받았습니다).

원 심판의 표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000을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 4.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으로 000을 선임한다.
- 5. 한정후견인은 2017. 00. 0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17. 00. 00., 인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회차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한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한정후견감독인은 2018. 00. 00.을 시작으로 매년 00. 00.까지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후견감독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8. 31.)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정후견인은 2018. 9. 30.을 시작으로 매년 9. 30.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8. 31.)를 작성하여 한정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 취지

원 심판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이유

청구인은 사건본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2017. 00. 00. 귀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으나

_____ 하여 이에 항고합니다.

2017. 10. 26.

위 청구인 0000시정

00가정법원 기사2단독 귀중



[서식 21회]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

후견감독 절차 안내문

귀하는 서울가정법원 2017년 002497 호년복권 개시 사건의 후견인입니다.

법원은 후견이 시작된 후 적정으로 기능후견감독직을 제시하고,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권익보호 및 1회 이상 3회주회차에 관한 그 밖의 조항을 제시하며, 친박후견인은 1개월 내에 친박후견인 자격을 받은 후 그 목적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은 후견개시후 2개월 이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고, 해 1년마다 같은 시기 및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후견인의 청산상태와 재산상태를 알려 줍니다.

법원은 제출된 후견사무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보호 상황등 과 자세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견인과 유감, 양심상함을 인정하거나 피후견인의 상과 과익을 위해 기초출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후견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의미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절차와 관련하여 의사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법원의 감독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조: 민법 제854조, 제948조, 제959조의6, 제959조의12, 제960조의16 제2항 등)

※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 후견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후견 종료일기를 신청하여 하고(별도행시에는 과료료가 부과될 수 있음), 후견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4조).

■ 아래 사항을 참고하고 기본 내 포선영문보고서, 출결사무보고서 및 관련 증명장부를 제출하십시오.

1. 후견인은 대한민국법률 "나눔소스망" 홈페이지(<http://nmsf.org>)로, "후견인후보 재산목록보고서/후견사무보고서" 다운로드(인터넷, 재산목록보고서와 출결사무보고서 작성용)를 받습니다. 후견인은 대상사건을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고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이 지명된뒤로 기본사항 작성시 용이하며, 나의 용수함에 저장해 두고 다음 해에 관할사정을 수정하여 개사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내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영사민원"에서 영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각 문건에는 해당 후견감독(기)본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담당재판부에 문의하거나 해당문건 번호 홈페이지의 사건번호를 이용합니다.
4. 인터넷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법원의 홈페이지(민원포털)에서 전자수용시스템(<http://ecis.scourt.go.kr>)에서 제출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이 인의 친박장을 제출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있는 후견인의 고백 받은 때는 드려요.



[서식 22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등기고유번호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사람번호	구분	성명	내용
1	후견등기거부작성	[성명] [성별] [출생일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속기준지] [등기] 시용	

등기일련번호

【성년후견사항】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사람번호	등기목적	성년후견개시	내용
1		[심판법원] 서용가경법원 [사건의표시] [재판화경일] [등기] 시용>	
사람번호	등기목적	(후견인에 관한 사항)	
1	성년후견인선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표시사무소] [대리권등록목적]: [등기] 시용가경	

발행번호 701715000020301703030300021169000223
발급특인번호 00X-WHP-526P 1 / 3

발행일시 2017/03/22 15:58:26



대리권등록록

<p>I.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p> <p>취소여 기입 필요</p>
<p>II.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p> <p>법정대리의 권한, 내용, 범위, 기간, 종료에 관하여 당사법원에 법원에 법원을 필요로 함 1. 유언을 취소하는 행위 2. 유언의 철회, 변경, 유언의 효력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행위 3. 상속의 상속유지, 유증유지,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행위 4. 조약행위 또는 이를 위한 협약사 진행행위</p>
<p>III.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p> <p>이해 시중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진 1. 피성년후견인 신상 관련 결정 2. 피성년후견인 재산 관련 결정 3. 피성년후견인 친한 결정 4. 피성년후견인 친척보는 결정 5. 피성년후견인 친척보는 결정</p>

발행번호 701715000020301703030300021169000223
발급특인번호 00X-WHP-526P 2 / 3

발행일시 2017/03/22 15:58:26

[서식 23호]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신청인	성명	사단법인 온울
	자격	성년후견인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건명
	2016년단50104	성년후견개시
열람할부분	재판부	
	가사21단독(비송)	
열람사유	기록 전체	
소명자료	후견인으로서 기록검토를 위해 등사하고자 합니다.	
2017. 2.		

후견인
사단법인 온울
대표자 이사 소순무

서울가정법원 귀중



[서식 24호] 공후후견인의 정기보고서
후임인의 정기보고서

보고 기간	부터 ~ 까지
1. 피후견인 주소	
주소 변경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 있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
2. a) 자유가 제한되는 시점에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 b) 자유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생활시설, 요양 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지 (특히 피후견인이 임의로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원의 배치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 자유제한 시설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 확인 필요
3. 피후견인의 상태	<input type="checkbox"/> 스스로 신변을 돌볼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지
4. 근로관계	근로 장소 : <input type="checkbox"/> 월 원
5. 인금 및 기타 사회복지급여수령 ※ 최초로 수령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그 시정을 설명하기 바람.	(인금 등의 종류, 지급장소, 액수 등)
6. 급여 및 인금 등을 지급받는 은행	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 내역)
생활비의 사용처: <input type="checkbox"/> 식비 <input type="checkbox"/> 의복 등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일상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7. 생활비 부담자(법정인 경우 법적 주체, 주소지)	
8. 기본 생활비 이외의 용돈의 사용처	<input type="checkbox"/> 용처 <input type="checkbox"/> 월 액수 <input type="checkbox"/> 관련 은행 및 계좌번호
용돈 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후견인이 지급할 경우 지급일차 등)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사용 등
9. 피후견인이 금융자산(정기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은행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액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저번이 가능한 피후견인의 금융계좌(정기예금 등)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액수	계좌번호
매월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액수(원)	<input type="checkbox"/> 액수	
그 밖의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내역	
10.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이 구입한 물건(일상생활용품 제외) 또는 권리		
11.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행위 또는 신상결정을 대리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input type="checkbox"/> 주거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input type="checkbox"/>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법률행위(부동산거래, 돈을 빌리는 것 등) <input type="checkbox"/> 은행 관련 업무 <input type="checkbox"/> 중립성의 신청행위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과의 직접 방문 또는 대면한 횟수(피후견인의 주거지 방문, 피후견인의 직장 방문, 피후견인을 초대할 경우 등)		
13. 피후견인에게 비탈린 증요한 우편물, 통지 등의 처리상황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이 스스로 처리 <input type="checkbox"/> 후견인의 지원		
14.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및 긴급연락망		
15. 기타 보고할 사항(피후견인의 일상생활상의 모습, 건강 상태, 기타 주목할 만한 부분, 어려움 등)		

이상 보고 내용은 본인이 조사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조사한 것에 일치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서식 25호]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재산명령 청구서(강독인 부동)

심 판 청 구

청 구 인 000
(후견인)
사건분인 A
(피후견인)

사건분인과의 관계 사건분인의 후견인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수행에 관한 허가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분인(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후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 2000-2단0000 후견감독(기본)사건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5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은 사건분인의 후견인입니다(갑 제1호증 - 사건분인의 후견등기부등본 참조).

2.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성

사건분인은 현재 서울시 00구 00동 00-00번지 지하 101호를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거지는 대로변에서 떨어져 있고, 지하 단칸방으로 곰팡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생활에 애로점이 큰 상태입니다(갑 제2호증 - 주거지 사진 등).

이에 사건분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주거지를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2017. 9. 28. 사건분인의 위 뜻을 존중하여 사건분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지속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했고(갑 제3호증 - 갱신거절 통지서), 조만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사건분인은 현 거주지에서 피거해야만 합니다.

2/5

소 명 자 료

- 1. 갑 제1호증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부등본
- 1. 갑 제2호증 - 주거지 사진 등
- 1. 갑 제3호증 - 갹신거절 통지서
- 1. 갑 제4호증 - 청구인 송부 동의요청서

첨 부 서 류

- 1. 위 각 입증자료

2017. ...

청구인(후견인) 000

3.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성 및 미동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임대차가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17. 8.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후견감독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갑 제4호증 - 청구인 송부 동의요청서 참조), 후견감독인은 묵묵부답입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원룸 여러 개를 몰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놓치지 일쑤였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후견감독인의 미협조로 아직까지도 사건본인이 머무를 주거지를 몰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위 사무를 처리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가정법원 가사00단독(비송) 귀중

별지. 예금 계좌 목록

순번	은행	계좌번호	판기도래일
1	하나은행	118-911014-85115	2017. 4. 8.
2	하나은행	118-910255-83111	2017. 4. 8.
3	하나은행	118-910014-86715	2017. 4. 27.

표.

[서식 26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
 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별원 2016년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위 심판에 의하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
 의 허가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필
 요성이 발생하였고, 마칠 000로부터 위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
 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에 대
 한 허가를 구합니다.

[서식 27호] 후견사무보고서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통
4. 기타(소립자료)

2016.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후견사무보고서

서울가정법원

기본 후견등기권 시간번호 2017년

의후견인의 후견인의 기본 신분 정보를 기재합니다.

보고 대상기간 2017.03.09 ~ 2017.10.26	후견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	--

피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 후견인 과 관계	주소 변경 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없음 있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락처

후견감독인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있음에 /없음에 **경유사유**를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락처

후견감독인이 있음에 **경유사유**를 작성합니다.

있음에 /없음에 **경유사유**를 작성합니다.

신상번호

의후견인의 신분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순서로 하고, (나)만 관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소변경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소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주소변경 있음	변경주소
	변경시기	
	주소 1	
	주소 2	
주소 3		

● 1년봉안의 피후견인의 주소변경사항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

☞ **송의사항**
 수임인지 : 사건본인 수 x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청구인수 x 3,700원 x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결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 및 사법(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타입업종인도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주()회 <input type="checkbox"/> 월()회 <input type="checkbox"/> 연()회 <input type="checkbox"/> 연()회
기타업종인도	<input type="checkbox"/> 연회, 개인, 이메일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간행인, 자녀견 탁)

정규형태	지주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소양학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바(은)
	소유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규형태	보유권이 인정되는 주택인, 소유가 또는 계약자는 누구입니까(성명(실제명), 본명(본인))	
	성명	미유권인
경관상태	경관인	성
	성	세
	성	세
	성	세

병당□의 의료비, 약제비, 약제비가 있는 경우 약제비에 구체적인 상환을 작성합니다.

정신과상해

신체과상해

서비스 항목

- 생활유지
- 간 호
- 주거환경보
- 러 프
- 고 육
- 계 광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간호사)가 필요하면 보충하고 있음.

요양보호사(간호사)가 필요하면 보충하고 있음.

요양보호사(간호사)가 필요하면 보충하고 있음.

요양보호사(간호사)가 필요하면 보충하고 있음.

□ 사생활보호	
□ 거 리	
후견거주여부	<input type="checkbox"/> 자숙 <input type="checkbox"/> 공유
사유	
후견행위	<input type="checkbox"/> 변경 있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없음
변경이유	
항 후	거주자 및 사비(타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예정입니다.
보호필요	

세 신 목 록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제출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을 시, 해당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있을 시, 해당 부분은 아래 표 다른 부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실유족 증명서, 과실유족 증명서 또는 진중서의 기재내용의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하위 조항 특은 특상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행위	해당유무	건수	항목소계	(단위: 원)
1. 부 풍 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2. 보충금 반환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3. 세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3		
4. 보 령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5. 장 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6. 인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7. 차 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8. 유 계 등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계합) 적극적행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9. 기 타 세 간 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계합) 적극적행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10. 대 이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11. 기 타 채 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① 적극적행위				
적극적인행위	해당유무	건수	항목소계	(단위: 원)
12. 담 보 대 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0		0

13. 보증금 반환 여부 있음 없음 0

14. 기 타 의 견 있음 없음 0

② 소극채산 판결 0

채산 중역

구분	구분	소액지	서지
부동산	부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중이거가)
	부2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3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4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5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6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7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음 작성한 부록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기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부동산 중역

구분	구분	기회번호	참고
예금	예1	KB국민은행(20180628 만기)	
	예2	KB국민은행(20180628 만기)	
	예3	KB국민은행(무시용계좌)	
	예4	영풍농협	
	예5	영광농협	
	예6	영광농협	
	예7	한국산업은행	
	예8	SBI저축은행	
	예9	SBI저축은행	

예10	SBI저축은행	
예11	대산저축은행	
예12	동부저축은행	
예13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예14	OSB저축은행	
예15	OSB저축은행	

음 작성한 부록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기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금 중역

구분	구분	중역번호	비고
보통	보1	KB생명보험(연금보험20200402만기)	
	보2		
	보3		
	보4		
	보5		
	보6		
	보7		

음 작성한 부록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기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보험 중역

구분	구분	보험번호	참고
증권	주1		평가중역 (1주 평가역 x 보유량)
	주2		
	주3		
	주4		
	펀1		평가중역

권2		
권3		
권4		
순의정안 부속시, 간행권속 기재하여 별지표준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중권 등 총액 0		

지식항목	내용			
	소세지	보증금	임대기간	
보증금 반환채권				
원금				
차량	건명	작종	면적	등록번호
	차1			
	차2			
유계동산	유계동산명	시	가	유계동산명
	유1			유1
	유2			유7
	유3			유8
	유4			유9
	유5			유10
기타 재산권	세신권명 ▷ 피후견인의 처각권, 특별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 피후견인의 처각권, 특별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대어금과(KB국민은행 외상통지표) 가 액 (신청 가능한 경우)			
대어금	대어금	제부작성	차권액	지권피수일

기타채권				
지권필생권				
제부작성				
차권액				
지권피수일				
5. 그 외 각구제신종 0				
액				

진정	금용기간	내용금	상액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압포대출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보증금 반환채무	지권자	지부원금	반환거부액	
기타채무	금용기간	내용금	내용기간	
차용금	차용액	지권자	차용금액	

이차소득	22,735	점부서별
수입항목	소득금액	점부서별
저당수입	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해당기간분
근로소득	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개인연금소득	0	수입 증명서
보험료수입	0	보험금 수령 확인서
기타수입	0	편의증정서
수입총액		원천 증명서

이차소득의 수입내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지출항목	지출금액
주거비 (임대료, 관리비 등)	별지참조: 월()원 × 12개월 = ()원
식비	별지참조: 월()원 × 12개월 = ()원
건강유지및의료비	별지참조: 월()원 × 12개월 = ()원
공과금	별지참조: 월()원 × 12개월 = ()원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별지참조: 월()원 × 12개월 = ()원
피복비	별지참조: 월()원 × 12개월 = ()원
기타	별지참조: 월()원 × 12개월 = ()원
지출총액	7

원금 차액 유채물산 기타 재산권

대여금 대여액

내역	금액
기타	
승락제한 부유세 건물 전세 기계약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소극재산총액	0
재산총액	

부동산의 수입내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승락제한 부유세 건물 전세 기계약서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동산 현황	월소액 X 12개월 = 1년 임대소득
임대소득	월()원 × 개월 = ()원
	월()원 × 개월 = ()원
	월()원 × 개월 = ()원
	월()원 × 개월 = ()원
	월()원 × 개월 = ()원
① 임대소득합계	0
수입총액	월소액 X 12개월 = 1년 수입총액
연금 및 사회보장수급권	월()원 × 개월 = ()원
	월()원 × 개월 = ()원
	월()원 × 개월 = ()원
	월()원 × 개월 = ()원
② 수급합계	0
연봉	연지수액
승령이가	22,735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녀를 친원의 용어가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후견인 모두 친해가 나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결재를 거친다는 점도 고지하였습니다.

(5) 무엇보다도 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이 편안하게 인권하게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본성이 가라앉고 사건본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합심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외하고, 사건본인의 돌봄과 관련하여 자녀들의 의견 합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 예를 들어, 사건본인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자녀들은 현행을 유지 하자는 것과 사건본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철학과 같이 결버 판문에 아무르느 것보다는 사실이 좋은 요양병원 등으로 이전하자는 이 대립했는데, 후견인은 요양병원으로 가더라도 특별한 전문적 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는 메다가, 신체 구축, 영양공급 잘 섭취 등의 원리적 의료행위로 인해 실버타운에 아무르는 것보다 존엄한 삶을 사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자녀들은 비록 그 방법이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하지만, 사건본인이 최대한 안전하고 인격하게 존엄성을 지키며 여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는데, 후견인은 그와 같은 공과대에서부터 자녀들을 설득해 나아갔습니다.

아울러 후견인은 예게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킨다고 하더라도 원정보다 특별한 나은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것은 아니라는 요양병원 상점에 대한 진술서(유류분서류 20110606, 진술서 참조) 사건본인의 상태에 대한 신경과, 정신과 진단서를 각 전달받았습니다(유류분서류 5, 사건본인 진단서

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각 자녀들은 후견인이 누구를 먼저 만나는지 대부분 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각자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해오기 시작했습니다.

(3) 는 비용정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위촉된 도수를 보이면서 다른 형제들이 후견인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소한 내용까지 모두 알고 싶어 했고, 후견인의 사건본인 재산관리 내역을 상세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 으며,

은 망 가 피보핍자 사건본인, 수위자 로 정하여 제 결한 보핍제약 3건(보핍금 총 5억 원)을 행거하고 반환금을 사건본인의 계좌로 물러줄 것/과 사건본인 역시 등서 대해 유류분 부족액이 있으므로 본인들과 함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아래서 항을 나누어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를 2 망 3 로부터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메다가, 후견인을 통해 사건본인을 부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실버타운 생활비, 의료비, 약제비, 파질, 영양제 등)을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 견인에게 조장스럽고 신중할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미주어 거주하고 있다는 불리함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과 정동서 대하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견인은 최대한 자녀들 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의 상형서 공감해주되, 상식적으로 후견인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건본인의 재산 및 신상관리에 대한 요청

1 그러나 위 보핍제약 상지위 역시 상속인들 전원이 유류분수하 권이기 때문에 보핍사에서는 상속인 권 원의 용의 용이하는 해기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은 **크고정당함을 인정하게 되면유류분제정하는 것**은 **크고정당함을 인정하면유류분제정하는 것**은 **합리** 보핍제약, 해핍한 사형의 모든 이상 이부 해기행의 판관들을 사건본인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합리 고 부경 따위로 지어내기 불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2010. 19. 5. 21. 이틀에 걸쳐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와 유망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본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 장인과, 신장과 주치의를 각 면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의 장 모부터 위 각 주치의들의 소견서를 진찰받았습니다. (첨부서류 5. 사건본인 진찰서 참조).

라. 사건본인 방문 면담

- (1) 후견인은 2010. 11. 5. 10. 25. 각 시 상패를 확인하였습니다.
- (2) 다만, 위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 후견인을 인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신상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요양보호사와 가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3) 또한, 요양보호사는 후견인에게 월 1 C 2의 정도 위 신상에 대한 상태를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고, 위 생활모습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도 보내고 있습니다.

마. 의 유류분 반환청구 제기 요구

- (1) 사건본인의 말¹⁾ 는 현재 말 의 상속재산을 두고 장녀²⁾ (이항)에서 이들을 총칭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합니다(상대방 2016가합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2) 는 사건본인 역시 말 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있으므로, 자신들과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조).

그리고 사건본인의 자녀들에게 사건본인의 거주지는 현행 을 유지하되, 만약 사건본인 신상에 급박한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요양병원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나.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버타운 축과의 관계 형성 노력

- (1) 후견인은 2010. 10. 20.경 사건본인이 머무르고 있는 실버타운에 대해 후견인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2) 그러나, 후견인이 선임된 것은 더 이상 에서 머무를 수 없다며 퇴거를 요구하였고, 부속 의실에서 사건본인에게 지급하던 편의약 등 기본적인 약품들도 후견인이 직접 피후견인과 내원하지 않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시켰습니다.
- (3) 이에 후견인은 2010. 5. 10. 을 방문하여 일정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후견제도의 취지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설명하였고,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어떤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4) 그러나, 부속 의실의 담당 의사는 편의상 요양보호사에게 사건본인의 편의약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후견인이 선임된 이상 원칙적으로 병경대리인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모시고 직접 내방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편의약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후견인은 귀원 2012년 10. 20.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수행에 관한 허가장구를 제기하였으며, 귀원의 허가심판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편의약 수령을 위한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다. 사건본인 주치의의 면담

(3) 그러나 후견인은 유류분 부족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특히 이해권이 있다고 보이며, 의 유인장을 보더라도 아들 게 많은 재산을 유증하는 대신 사간본인을 죽인다고 지시하고 있고, 형제 까지 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간본인을 잘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원부서류 6. 평 후견장 참조).

사간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 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4) 후견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뜻을 전달받았 으나, 쉽게 승낙하지는 않았고, 후견인은 만약 범권의 명령이 있다면 그에 따 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5) 이에 는 민법 제952조에 따라 귀원 2010년2월5 후견사무에 관한 최분명명정구를 제기하여론 상해입니다.

바. 기지근 비용 반환

(1) 는 사간본인이 로 틀어간 2016. 6. 경 이후부터 자신이 사간본인 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반환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후견인은 사간본인을 위한 비용은 사간본인의 재산에서 지출한다는 원칙 아래, 일단 영수증 등 증빙을 한다면 비용 반환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요 는 2016. 6.경부터 2010. 5.까지 본인이 지출한 내역들을 영수증들을

대한 보수 중 일부(250)도 포함되어 시 사간본인을 위해 병원 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 받아 제공하거나, 필요한 생활용품, 영양제 등을 구입 하여 제공하고, 월 1 02회 정도 사간본인을 방문하여 상해를 확인하고 있으 로, 귀 보수 중 일부(250)를 사간본인의 비용에서 부 담하기로 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250라는 비율은 후견인이 으로부터 임무임지를 받아보고, 총 업무시 간 중 사간본인을 위해 사용한 시간을 나누어 본 결과, 약 10%정도를 사간본인 에게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사. 일상적인 재산관리 업무 수행

- (1) 후견인은 사간본인을 위해 일상적인 재산관리, 병원비, 생활비 지출 등의 업무 도 자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통상 사간본인의 대하어는 월 약 220만 원 정도의 생활비(월 차임 포 함), 오양보호사 보수 월 250만 원, 제가부거센터 본인부담금 월 155,000원, 사 신지출, 후정구하는 생활비(과일류, 영양제, 기저귀, 린포비, 약제비 등) 월 평균 약 100만 원, 합계 약 5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3) 현재 명의의 예금자산이 약 10억 원 정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와 같은 월 지출은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4) 상세한 후견인의 사간본인 재산 관리 내역(지출, 수입 등)은 별지, 제출내역을

첨부하여 보냈고, 후견인은 그 내역을 검토한 뒤 기 지급한 비용 5000,503 원을 반환해주었습니다.

(6) 이 내역에는 대한 보수 중 일부(250)도 포함되어 시 사간본인을 위해 병원 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 받아 제공하거나, 필요한 생활용품, 영양제 등을 구입 하여 제공하고, 월 1 02회 정도 사간본인을 방문하여 상해를 확인하고 있으 로, 귀 보수 중 일부(250)를 사간본인의 비용에서 부 담하기로 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250라는 비율은 후견인이 으로부터 임무임지를 받아보고, 총 업무시 간 중 사간본인을 위해 사용한 시간을 나누어 본 결과, 약 10%정도를 사간본인 에게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사. 일상적인 재산관리 업무 수행

- (1) 후견인은 사간본인을 위해 일상적인 재산관리, 병원비, 생활비 지출 등의 업무 도 자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통상 사간본인의 대하어는 월 약 220만 원 정도의 생활비(월 차임 포 함), 오양보호사 보수 월 250만 원, 제가부거센터 본인부담금 월 155,000원, 사 신지출, 후정구하는 생활비(과일류, 영양제, 기저귀, 린포비, 약제비 등) 월 평균 약 100만 원, 합계 약 5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 (3) 현재 명의의 예금자산이 약 10억 원 정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와 같은 월 지출은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4) 상세한 후견인의 사간본인 재산 관리 내역(지출, 수입 등)은 별지, 제출내역을

3 본래 220만 원만 지출하였으나, 2010.9.부터는 간병인의 월 2만 원주에 따른 대체인비 보수 20만 원을 보전해주시기로 하여, 2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생활비 등 지출 제외) 1건, 합계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국민은행 계좌는 모두 해지하였습니다.

연번	계좌번호	만기일	이자	예금액(원)	비고
1	2010020	1.090			
2	2010020	1.090			
3					주사유 계좌
0		2020.0220			보합계좌

(5) 위 라원은 사건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약 25건이 이르고, 금융기관만도 2곳에 이르는 바, 다수의 후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후견인의 여력상 한 번에 위 업무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향후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해당 내역물을 별도로 귀 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2. 상속예금 처리

가. 상속예금 1 입금

후견인은 2010.5.11. 사건본인이 배우자 : 로부터 상속한 예금 권역을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첨부서류 0 상속예금 해안, 이체 영수증참조).

나. 사건본인(자녀)를 부양 상속재무 등 지급

후견인은 1 생활비지출을 배 의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각종 세금 중 자녀들이 납부한 부분과 학내 살 1 상속한 부동산에 대하여 망 사 망 이후 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차입(借費)을 각 지급하여 주었습니다(첨부서류 00.

6 첨부서류 20. 00국민은행 계좌내역표의 참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금계좌-통계항 관리

- (1) 후견인은 후견이 개시된 이후, 사건본인의 00국민은행 계좌 외 다른 은행의 계좌들은 현황을 파악하기만 하고, 별도로 이용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 (2) 또한, 후견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부여된 있는 예금을 합쳐 모아 외부는 보류에료으로 두어 해당 계좌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 불요은 정기예금으로 모아 관리하는 원칙 아래 각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먼저 후견인은 2010.02.20 아래 각 만기가 도래한 00국민은행 정기예금과 상속재물 납부하고 남은 예금 중 1 생활비로 사용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정기예금이 해지하였습니다.

연번	계좌번호(00국민)	예금액(원)	만기일	이자	비고
1 ⁰			2010020	1.090	
2 ¹			2010020	1.090	

(4) 또한, 후견인은 2010.10.26. 사건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2개를 통-계좌와 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00생활정보원(연금보험) 계좌 1건, 정기예금 2건, 보통예

0 첨부서류 23. 00국민은행
1 통장 사본(생기예금) 및 기존 정기예금 해지 영수증 참조
2 첨부서류 22. 00국민은행
3 통장 사본(생기예금) 참조

정구속 정리 표, 첨부서류 02 내지 10, 첨부서류011, 201005150515금
과
과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구 기납부 세금 등 내역			
정구인	내역	금액(원)	납부지료
			합계(원)
			총합액(원)

다. 세부내역(조정료, 일부미지급분)지급

아울러 후견인은 망
조정으로 중 미지급된 것 920,000원
1 지급하였습니다(첨부서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각 참조).

라. 상속세(납부

후견인은 2010. 6. 19. 위 상속세법에 대한 상속세
부서류 921, 20100619C상속세 납부 영수증 및 상속세 내역 참조).

아울러, 후견인은 2010. 6. 19.
반환하여 주었는데, 이는 국세청이
숙세 분을 사건본인의 상속세에 미리 출당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고지하였는바,
그에 따라

마찬가지 이유로, 국세청은
과하였는바, 후견인은
내역, 첨부서류 2010년 각 참조).

3. 신상보호

가. 사건본인의 상태 호전

- (1) 후견인은 2010. 01. 11., 5. 10., 02. 25. 각
나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2) 후견인이 최초 사건본인을
심했고, 오른쪽 손은 펴고 있었으며,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첨
부서류 10-1, 20100111C촬영 사건본인 모습).
- (3) 그 후 후견인이 2010. 5. 10. 부채로 사건본인을 면결하였을 때에도 사건본인
의 상태는 그리 호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점 부 서 류

3중

10. 부	11. 부
12. 부	12. 부
21. 00	21. 00
22. 00	22. 00
23. 00	23. 00
24. 00	24. 00
25. 00	25. 00
26. 사	26. 사
3. 업무	3. 업무
02010	02010
5. 사건	5. 사건
6. 망목	6. 망목
0 상속	0 상속
01. 판	01. 판
02. 201	02. 201
03. 201	03. 201
04. 가	04. 가
05. 201	05. 201
06. 201	06. 201
07. 201	07. 201
08. 201	08. 201
09. 201	09. 201
010. 20	010. 20
011. 0	011. 0
012. 0	012. 0

- (4)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101225, 사건본인을 면접한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상태가 원상 손의 복기는 원상이 사라졌고, 양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웃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요양보호사나 후견인 담당변호사와 계속 눈을 맞추는 등 상당의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첨부서류 10.2.201012250촬영 사건본인 모습 참조).
- (5) 그 외에도 후견인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사건본인의 사진을 전달받고, 정기적으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사건본인의 상태를 정례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 10.3. 요양보호사 송부 사건본인 사진 출력).

나. 요양보호사

- (1) 요양보호사는 사건본인을 열과 성을 다해 가족도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의 상태도 계속 후진 개시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되었으며, 이 때문에 반복하는 사건본인의 자녀를 조차도 대하여는 큰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 후견인은 이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돌볼 수 있도록 권의를 적극 요청합니다.
- (2) 이에 후견인은 총액 230만원이던 요양보호사의 월 보수도 요양보호사 월 이월 후유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보편의 성격으로 20만원 원상하여 250만원 원상하고 있습니다.
- (3) 또한, 긴 추석연휴 때도 2 이월을 제외하고는 오롯이 사건본인을 돌봐 주었는바, 후견인은 2010.10.분 간병비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후유로 개인하여 지급하지 않는 보수 부족분 196,200원도 총당하여 주었고, 기존 월 이월 후유에 명절휴무 이월을 추가로 인정하여, 대체인력 보수 보편역으로 10만원 원상 지급하여, 총 2,096,200원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91. 201□□619□
 92. 상속세 내
 101. 201□□□11□
 102. 201□□□5□
 103. 요양보호
 111. 201□□□15□
 112. 201□□□15□
 113. 201□□□1□
 114. 201□□□52□
 115. 201□□□52□
 116. 201□□□52□
 11□□ 201□□□530□
 119. 201□□□530□
 1110. 201□□□53□
 1111. 201□□□53□
 1112. 201□□□602
 1113. 201□□□613
 111□ 201□□□62□
 1115. 201□□□62□
 1116. 201□□□62□
 111□ 201□□□6□
 111□ 201□□□□
 1119. 201□□□25
 1120. 201□□□25
 1121. 201□□□□
 1122. 201□□□25

1123. 201□□□6□
 112□ 201□□□□
 1125. 201□□□□
 1126. 201□□□□
 112□ 201□□□□
 112□ 201□□□□
 1129. 201□□□□
 1130. 201□□□1□
 1131. 201□□□12□
 1132. 201□□□25□
 1133. 201□□□25□
 113□ 201□□□26□
 1135. 201□□□□
 1136. 201□□□1□
 113□ 201□□□25□
 113□ 201□□□25□

201□ 10.,.

귀중□

서울가정법원□가사

권장사항 (3236) **후견사무보고서**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기본 사항

피후견인의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입합니다.

보고 대상기간	20 20	후견종류	<input type="checkbox"/> 상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피후견인 성명	후원번호 (-)	후견감독번호	원래처
후견인 성명	후원번호 (-)	후견감독번호	원래처
피후견인 관계	후견종류	후견사실	원래처
후견인 피에 대한 후견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후견 감독인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신상 정보

피후견인의 신상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본인인 피담보인 □의 경우 □표하고, ()는 본 표하지는 구제권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소명 없음	<input type="checkbox"/>	주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주소명 있음	<input type="checkbox"/>	주소	변경 주소
주소 1		주소 1	
주소 2		주소 2	
주소 3		주소 3	
출생일	□년 □월 □일 ()	출생지	□년 ()
가족구성	□친화, 사인, 이혼 등	가족구성	□년 ()
가족구성	□기타()	가족구성	□년 ()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요양원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득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무상
소득금액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부구입납자가 성명() 관계()
동거인	성명 신용인의 관계 연령 직업 학수입
정신적 상태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type="checkbox"/> 상태 악화
신체적 상태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음 <input type="checkbox"/> 상태 호전 <input type="checkbox"/> 상태 악화
서비스 항목	서비스 항목
간호	<input type="checkbox"/> 간호 <input type="checkbox"/> 간호 보조
의료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의료 보조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
재정	<input type="checkbox"/> 재정 <input type="checkbox"/> 재정 보조
서비스비	<input type="checkbox"/> 서비스비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후견종류	후견종류
변경 사유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 내용

계 산 목 록		계 산 목 록 요 약 표	
각 부 계 산 항목	허당유무	권 수	합 목 소 계 (단위: 원)
1. 부 동 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보증금·임대차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예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보 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증 권 증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현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차 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유 제 동 산 (현금, 광물, 석유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기 타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0. 대 여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1. 기 타 채 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① 리 크 계 산 합 계			
소극재산 항목	허당유무	권 수	합 목 소 계 (단위: 원)
12. 담 보 대 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3. 보증금반환채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4. 기 타 채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소 극 계 산 합 계			
계 산 중 역			
①-②			

연명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부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등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신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승·적상한 부록시 권별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부동산 중역			
연명			
연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91			
92			
93			
94			
95			
96			
97			
승·적상한 부록시 권별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 금 중 역			

이 장치를 평판대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예 「 있음」에 「 없음」을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부록시 모두 「 있음」에 「 없음」은 아래 표 다음 부분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적산목록 요망표와 소액자료 또는 진출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허위 진술 또는 불경험 보고로 간주하여 불이익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출 내 역	
공공후견인의 지출에 따라 구제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지 출 품 목	지 출 금 액
주 거 비 (임대료, 관리비 등)	
식 비	
건강 유지 및 의료 비	
중 파 금	
교통 비 및 차량 유지 비	
피 녹 비	
기 타	
지 출 증 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보험 <input type="checkbox"/> 증원 물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차량 <input type="checkbox"/> 유채자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권 <input type="checkbox"/> 태어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권 <input type="checkbox"/> 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보증금/잔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채무 <input type="checkbox"/> 변동 없음 * 적용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input type="checkbox"/> 에 표 √하고, 적용상황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	
공 부 시 출 액 관 리 계 회	
재 인 고 기 권 특 이 시 행 목 적	
후 견 인 의 건 제 목 적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8호] 관리계산보고서

관리계산보고서

사 건 2016년도 후견감독(기본)

사건 본인 000

성년후견인 사단법인 은솔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이 후견사무종료에 따른 관리계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재 산 목 록			
의무연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연도이다. 재산으로 요약해서 필만 재산이 있는지 √하고, □있음/□없음 단, 보유는 위해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작성한다.			
재 산 목 록 요 약 표			
적극재산 항목	해당 유무	건 수	합 목 소 계 (단 위: 권)
1. 부 동 산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2. 보 장금 환 관 전 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세 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8
4. 보 권 증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5. 증 권 증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6. 현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7. 차 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8. 유 채 동 산 (주택, 자동차, 부동산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9. 기 타 재산 권 (채권, 상표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0. 대 여 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1. 기 타 채 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① 직류 재산 합계			
소극재산 항목	해당 유무	건 수	합 목 소 계 (단 위: 권)
12. 담 보 대 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3. 보 증금 환 관 채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4. 기 타 채 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② 소극 재산 합계			
재 산 중 역			8

1. 개요

보고 대상기간	2016. 7. 7. ~ 2017. 4. 30.		후견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년후견 <input type="checkbox"/> 영장후견 <input type="checkbox"/> 복장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비정년후견	
미 후견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4427) 경기 부천시				
후견인					
성명	사단법인 은을 대표자 이사	주민등록번호	11		
주소	우편번호 (대리동)				
피후견인과의 관계	생년후견인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견 감독인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계좌번호	잔고
연1	KD국민은행	
연2	우체국	
연3	우리은행	
연4	신협은행	
연5	신협은행	

승차성인 부록시 건명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금종역

제안종역	98
-------------	----

2. 이혼동 아파트 매각

성민후견인은 2016. 10. 21. 사건본인과 배우자 B를 대리하여,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이혼동 아파트를 C에게 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 및 매매대금에서 미납된 분담금, 채납 관리비 등을 남부한 내역은 귀원 2016 년도0000호 부동산매각허가신청사건에 제출한 매각완료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는바(갑 제7호증 - 2016년도00000 부동산 매각완료보고서 참조), 이번 관리계산보고서에서는 위 매각완료보고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3. 그 외 지출내역)

가. 주 사용 계좌(신한은행 16) - 갑 제4호증 참조

성민후견인은 2016. 8. 3. 사건본인의 계좌 중 우체국 04 계좌에 있던 예금 중 70원을 신한 은행 16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신한은행 계좌를 주(主) 사용계좌로 지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계좌에서 사용한 내역들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입증자료의 날짜는 실제 문서 작성날짜가 아니라, **최종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원)	증빙자료
2016. 8. 9.	6월 7일 D타워 관리비		갑 제13호증 - 20160809-67 월 관리비납부확인서 참조
2016. 8. 10.	강서구 지방세 용선구 지방세		갑 제13호증 - 20160810-거 방세납부확인서 참조
2016. 8. 29.	인저리 송림로(2016노단 79(07.79))		갑 제10호증 - 20160828-인 저리송림로 영수증(부동산매 각하기) 참조
2016. 9. 8.	인저리 송림로(2016노단 79(0))		갑 제11호증 - 20160907-인 저리송림로 영수증(보수수 에) 참조
2016. 10. 11.	8월 D타워 관리비 B 전라비 송금 수료		갑 제12호증 - 20160908-월 관리비납부확인서 참조 갑 제13호증 - 20160908-인 수증(비납부확인서) 참조
2016. 10. 25.	9월 D타워 관리비		갑 제14호증 - 20161011-8 9월호비납부서(09월) 참조 갑 제15호증 - 20161011-9 월관리비납부서 참조
2016. 10. 31.	이촌동 아파트 계약해지금		갑 제16호증 - 20161025-이 촌동 아파트 퇴약확인서 참 조
2016. 11. 2.	이촌동 아파트 미납관리비		갑 제17호증 - 20161031-이촌 동 아파트 미납 관리비명세서 참조
2016. 11. 8.	이촌동아파트 미납 분양금		갑 제18호증 - 20161102-이촌 동 아파트 미납분양금명세서 참조
2016. 11. 9.	이촌동 아파트 미납상환금 송금 수료		갑 제19호증 - 20161102-이촌 동 아파트 미납상환금 내역 참조
2016. 11. 2.	이촌동 아파트 미납상환금 송금 수료		2017. 1. 20. 명수인 C로보부 디 애플 발송
2016. 11. 8.	이촌동 아파트 미납상환금		갑 제20호증 - 20161108-요 양보호비납부서(10월) 참조
2016. 11. 9.	10월 D타워 관리비		갑 제21호증 - 20161109-10 월 관리비납부서 참조
2016. 12. 9.	중립부동산세 납부		갑 제22호증 - 20161209-중 립부동산세납부서 참조
2016. 12. 9.	11월 D타워 관리비		갑 제23호증 - 20161209-11 월 관리비납부서 참조
2016. 12. 13.	2016년 보수		
2016. 12. 19.	제남 지역세 납부 상동		갑 제1호증 - 20161219-제 남 지역세 납부서 참조
2016. 12. 26.	우려은행 대출금 일부 변제 송금수료		갑 제2호증 - 20161226-일 부(우려은행결제) 참조
2016. 12. 29.	후견인보수(2016.7. - 2016. 11. 5개월 분)		갑 제3호증 - 20161229-후 견보수명세서, 송판본 참조
2017. 1. 2.	관리회계장구(2017노단 00000) 인저리 관리회계장구(2017노단 00000) 송판본		갑 제4호증 - 20170102-회 리회계장구(17노단) 참조 갑 제5호증 - 20170102-인 저리회계장구(17노단) 참조
2017. 1. 4.	배려료 영수증		갑 제6호증 - 20170104-배 려료영수증 참조
2017. 1. 9.	우려은행 대출금 변제 송금수료		갑 제7호증 - 20170109-우 려은행(우려은행)의산관리 부) 참조
2017. 1. 10.	12월 D타워 관리비 건강보험료 배려료 영수증		갑 제8호증 - 20170110-12 월관리비 납부서 참조 갑 제9호증 - 20170110-배 려료영수증 참조
2017. 1. 19.	이웃집 관리업체 비용(A 집 정리) 이촌동 아파트 중간관리비 납부		갑 제10호증 - 20170119-이 웃집(중-재기물)관리업체(D 타워 출신 정리) 참조 갑 제11호증 - 20170120-이 촌동 아파트 중간관리비 납 부서 참조
2017. 1. 20.	부동산 중개수수료		갑 제12호증 - 20170120-부 동산중개수수료명세서 수수 표) 참조
2017. 2. 10.	법무사 확인서면 수수료 간서 구립 송금수료 건강보험료		갑 제13호증 - 20170210-법 무사 확인서면 수수료, 영수 증(법무사) 참조 갑 제14호증 - 20170210-구 립구입영수증(G해상) 참조
			차용이체

2017. 2. 14.	B 장래소득용(장래직장) B 장래소득용(채권장사) B 장래소득용(상주소득) B 장래소득용(A, 활동력) B 장래소득용(B, 일정사건) A 간섭비용 간섭비용 요양병원 기타 비용 1월 요양병원 병원비 간섭비용(B) 요양병원 기타 비용(B) 1월 요양병원 병원비(B) B 최장장 이용비 장래비용 기타 B 1월 요양병원 병원비 B 2월 요양병원 기타비용 B 3월 간섭비 중여세 치과진찰 구입비 건강보험료 이혼동 아바트 양도소득세 이혼동 아바트 저당소득세 간섭비용 양도소득세 등 신고 세부사 수료 후견사부수행비용(교통비 등, 2016.10.2017.1.) 후견인보수(2016.12-2017.2. 3개월 분) 3월 요양병원 병원비	2017. 2. 14.	2017. 3. 29.	2017. 4. 10.	2017. 4. 14.	2017. 5. 10.	2017. 5. 16.	2017. 5. 25.
감 제19호중 - 20170214-B 장래(장래직장) 참조 감 제10호중 - 20170214-B 장래(채권장사) 참조 감 제11호중 - 20170214-B 장래(상주소득) 참조 감 제12호중 - 20170214-A 장래(활동력) 참조 감 제13호중 - 20170214-B 장래(일정사건 제외용) 참조 감 제44호중 - 20170214-간 섭비 참조 감 제45호중 - 20170214-1 월 A 진료비 및 간섭비 참조 감 제46호중 - 20170214-1 월 B 진료비 및 간섭비 참조 감 제47호중 - 20170216-B 장래(기타비용) 참조 감 제48호중 - 20170227-2 월 B 진료비 및 간섭비 참조 감 제49호중 - 20170227-중 여세 부분 영수증 참조 감 제50호중 - 20170227-제 매장장 구입비용 참조 자용이세 감 제51호중 - 20170316-양 도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영수증(별첨) 참조 감 제52호중 - 20170316-간 섭비용 의구합비(G제세) 참조 감 제53호중 - 20170316-양 도소득세 신고수료 입금 참조 감 제54호중 - 20170316-사 부수행 관련 교통비 참조 감 제55호중 - 20170316-후 견인보수 (2016.1207-20170306) 참조 감 제56호중 - 20170316-2	3월 간섭비 A 명의 알뜰폰 결제·납부 요금 납부 E 상속분 이세 (상환분 개인회유에 따라 A가 파다하게 수령한 것임) B 귀중 비용 건강보험료 B 재산세(이혼용 아바트) B 공탁비용산세 B 공탁소득세 간섭비 3월 간섭비 3월 요양병원 병원비 후견인보수(월분) 건강보험료 후견사부수행비용(교통비등) B 후견비용등기발송 수수료 4월 간섭비 3월 요양병원 병원비 등 금융거래내역조회 수수료 특별보수(2017.2. 단 5000) 인거의송달료	2017. 5. 25.	2017. 5. 25.	2017. 5. 25.	2017. 5. 25.	2017. 5. 25.	2017. 5. 25.	2017. 5. 25.

고, 주기적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에 의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였습니

다. 위와 같은 조처에 따라, 사건본인은 G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외부에서 방문 사막고, 택시를 타거나, 간호사 등에게 잘 신물을 사는 등으로 자신의 보훈연금을 사용하였습니

다.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이 G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17. 2. 22., 위 계좌를 해지하고, 잔금을 주기때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보훈연금 수령 계좌도 주기때 계좌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첨 서 류

- 1. 갑 제1호증 - 사진본인 기본증명서
- 1. 갑 제2호증 - 사진본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3호증 - 사진본인 사망진단서
- 1. 갑 제4호증 -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16)
- 1. 갑 제5호증 - 금융거래내역(우체국04)
- 1. 갑 제6호증 - 금융거래내역(나머지계좌들)
- 1. 갑 제7호증 - 2016년7580 부동산 매각완료보고서
- 1. 갑 제8호증 - 20160809-67월 관리비납부확인서
- 1. 갑 제9호증 - 20160810-지방세납부확인증
- 1. 갑 제10호증 - 20160829-인지대송달료영수증(부동산매각하기)
- 1. 갑 제11호증 - 20160907-인지대송달료영수증(모수여)

나. 우체국 01 계좌(갑 제 호증 - 20170517-금융거래명세서회_우체국 참조)

우체국 4 계좌는 사건본인의 보훈연금이 입금되던 것으로서, 사건본인은 G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보호사의 도움 아래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을 때,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해 왔습니

다. 이런 조처는 ①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후견인이 대신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자기결정권 존중 및 보호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대한 사건본인이 자신의 판단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후견인의 임무이고, ② 사건본인에게 보훈연금이 아니라라도 출분할 자원이 있었으며, ③ 사건본인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서 생활해오던 것을 갑자기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현금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관리에도 더 좋다고 할 것이고, ④ 보호사가 1차적으로 사건본인이 사기 피해 등을 입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성년후견인의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조회함으로써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⑤ 보훈연금은 사건본인이 피람 홀려 우리나라를 지킨 것에 대해 국가가 예수를 더하는 것인데, 이를 사건본인이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고, ⑥ 적절하고 현명한 소비는 치매에 걸린 사

건본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건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적어도 보훈연금의 한도 안에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성년후견인은 2016. 8. 3. 종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0원을 사건본인의 주기

- | | |
|---|--|
| 1. 갈 제12호증 - 20160908-8월 관리비납부확인서 | 1. 갈 제94호증 - 20170119-임금확인증-폐기물처리업체(D타워 풀건 경리) |
| 1. 갈 제13호증 - 20160908-B진료비납부확인서 | 1. 갈 제95호증 - 20170120-이혼동 아파트 중간관리비 납부서 |
| 1. 갈 제14호증 - 20161011-요양보호비납부서(9월) | 1. 갈 제96호증 - 20170120-임금확인증(공인중개사 수수료) |
| 1. 갈 제15호증 - 20161011-9월관리비납부서 | 1. 갈 제97호증 - 20170120-확인서면 비용 청구서, 영수증(법무사) |
| 1. 갈 제16호증 - 20161025-이혼동 아파트 해약확인서 | 1. 갈 제98호증 - 20170120-파일구입영수증(G배송) |
| 1. 갈 제17호증 - 20161031-이혼동 아파트 미납 관리비명세서 | 1. 갈 제99호증 - 20170214-B장례(장례식장) |
| 1. 갈 제18호증 - 20161102-이혼동 아파트 미납분양금내역 | 1. 갈 제40호증 - 20170214-B장례(제단꽃장식) |
| 1. 갈 제19호증 - 20161102-이혼동 아파트 미납읍선금 내역 | 1. 갈 제41호증 - 20170214-B장례(상주의복비) |
| 1. 갈 제20호증 - 20161108-요양보호비납부서(10월) | 1. 갈 제42호증 - 20170214-A 불꽃 썬비용 |
| 1. 갈 제21호증 - 20161109-10월 관리비납부서 | 1. 갈 제43호증 - 20170214-B장례(영정사진 썬비용) |
| 1. 갈 제22호증 - 20161209-종합부동산세납부서 | 1. 갈 제44호증 - 20170214-간식비 |
| 1. 갈 제23호증 - 20161209-11월 관리비납부서 | 1. 갈 제45호증 - 20170214-1월 A 진료비 및 간병비 |
| 1. 갈 제24호증 - 20161213-요양보호비납부서(11월) | 1. 갈 제46호증 - 20170214-1월 B 진료비 및 간병비 |
| 1. 갈 제25호증 - 20161219-제남 지방세 납부서 | 1. 갈 제47호증 - 20170216-B장례(가타비용) |
| 1. 갈 제26호증 - 20161226-임금증(우리는행복제) | 1. 갈 제48호증 - 20170227-2월 B 진료비 및 간병비 |
| 1. 갈 제27호증 - 20161229-후견보수임금증, 심판문 | 1. 갈 제49호증 - 20170227-응여세 납부 영수증 |
| 1. 갈 제28호증 - 20170102-격리가정규(17는단00000) 인지대, 송달료 납부확인서 | 1. 갈 제50호증 - 20170227-차매장감 구입비용 |
| 1. 갈 제29호증 - 20170104-택배료영수증 | 1. 갈 제51호증 - 20170316-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영수증(패미안 매각) |
| 1. 갈 제30호증 - 20170104-요양보호비납부서(12월) | 1. 갈 제52호증 - 20170316-간식구입비(G배송) |
| 1. 갈 제31호증 - 20170109-임금확인증(우리는행복제신청관리부) | 1. 갈 제53호증 - 20170316-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입금 |
| 1. 갈 제32호증 - 20170109-12월관리비 납부서 | 1. 갈 제54호증 - 20170316-사무수행 관련 교통비 |
| 1. 갈 제33호증 - 20170110-택배료영수증 | 1. 갈 제55호증 - 20170316-후견인보수(20161207~20170306) |

[서식 29호] (당장후견)후견종료보고서

후견종료보고서

피후견인 성명 및 주소	성명: 홍길동 / 주소:									
가정법원 및 사건번호	법원 / 사건번호:									
증로사유	예사: 기간만료, 피후견인의 사망 등									
종로 시점의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재산목록서식붙임)	2016 발부정액인정원사영인내 [서식14호] 참고									
후견사무 종료 시점에서 보관 하는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서류(후견감독인에게 반환할 목록)	· 정기보고서 · 재산목록표(서식 14호) · 신상정보 · 회계장부 · 인정명, 조력자, 긴급연락망 연락처 · 기타(소송자료 포함)									
후견종료 업무 처리 현황	· 채무변제 완료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채무기간</td> <td>채무액</td> <td>기타</td> </tr> <tr> <td>공진목케이</td> <td>1,000,000원</td> <td></td> </tr> <tr> <td>펀드펀(G)</td> <td>550,000원</td> <td>반제일료</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명내트위크 행정기관/담당자/연락처 · 사례관리 기관 연결기관/담당자/연락처 	채무기간	채무액	기타	공진목케이	1,000,000원		펀드펀(G)	550,000원	반제일료
채무기간	채무액	기타								
공진목케이	1,000,000원									
펀드펀(G)	550,000원	반제일료								
후견감독인 또는 교육기관에서 현상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아니오 경우 이유: "행정조사가 필요함" 이유: 후견종료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만약 현상이 필요할 시에는 재신청 진행)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한 진출 (특히 후견목표 달성과 관련)	심판청구서 상에 기재되어있는 후견목표를 비교하여 활동 달성사항 기재									
기타 특이사항 보고	후견종료 후에 발생 예상되는 위법사항 기재 필요									

※관련 민법
 - 민법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 민법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속)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과 관련 서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장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1. 갑 제56호증 - 20170316-2월 병원비 및 간병비
- 1. 갑 제57호증 - 20170316-알뜰폰 해지 미납금 납부
- 1. 갑 제58호증 - 20170329_입금확인증 B 상속(신한은행) E 추가입금
- 1. 갑 제59호증 - 20170329_입금확인증 B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주민센터 수수료
- 1. 갑 제60호증 - 20170414-B 제납 종부세,종소세,재산세 납부 영수증
- 1. 갑 제61호증 - 20170414-간식구입비
- 1. 갑 제62호증 - 20170414-3월 병원비 및 간병비
- 1. 갑 제63호증 - 20170414-후견인보수(20170307~20170406)
- 1. 갑 제64호증 - 20170516-교통비(주유대및통행료)
- 1. 갑 제65호증 - 20170516-B 종로등가신청서 우편접수비
- 1. 갑 제66호증 - 20170516-4월 병원비 및 간병비
- 1. 갑 제67호증 - 20170525-입금증(우리는행 금융거래내역 발급 수수료)
- 1. 갑 제68호증 - 20170525_입금증(인외대송달료)_2017년500000

성년후견인 000
 대표자 이사 000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비송) 귀중

2017. 5. .

[서식 30회] 후견종료등기신청서

별지 제5호 양식(법 제29조제1항, 제29조제1·2항) 종로동기

종료등기신청

정 수	20	년	월	일	처	리	인	제	진	수	기	입	교	합	각	종	동	지

사건본인의 표시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 별
	등록기준지			
	주 소			
등기의 목적	상년후견 종료등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 피상년후견인의 사망			

등 기 합 사 항	
종료할 등기사항과 그 원연월일	
기타	

결 부 서 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통 <기 타>
1. 관할을 증명하는 서면	통
1.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면	통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통
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신청인 성 명	번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서명 또는 인)		
(전화 번호)			
대리인 성 명	번	월	일
주 소	- (서명 또는 인)		
(전화 번호)			

- 가정법원 귀중**
1. 하나의 신청서로 2개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해당 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합니다.

(용지규격 210mm x 297mm)

필요서류 목록

1. 사진본인 기본증명서
2. 사진본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3. 후견인 인감증명서
4. 후견인 법인등기부등본
5.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서식 31회] 특정후견 지속여부 조사서

특정후견 지속여부 조사서

작성자 : _____ (소속 : _____) / 작성일 : _____
 응답자 : _____ (피후견인 후견인) / 기타 정보제공자 : _____

1. 사진 기본정보

사진내용	사진번호	노란	계시일	중복 여부
성명			생년월일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피후견인 연락처			장래유망/ 등급	거주 <input type="checkbox"/> 시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성명			생년월일 (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후견인 연락처			후견인유형	교육 수료기관
관련 기관	공공후견인 교육기관		□제3차 □가족 감독기관	센터 <input type="checkbox"/> 중영 <input type="checkbox"/> 지역 ()

2. 특정후견 개시 이후 변경사항(법원으로부터 판결, 허가를 받은 사항)

질문	신택	예라고 응답한 경우, 결정내용 또는 이유를 기재
1) 후견인 변경이 있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감독인 변경이 있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후견사무 범위지침 또는 대리 권 사항)변경이 있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현재 특정후견 사무의 목표달성 정도

1) 특정후견 사무(시월) : 심판결정문에 기록된 사무

현재상황	①사무종결	②스스로 가능	③지원체계 확보	④지원체계 연결예정	⑤후견계속지원
연번	사무의 내용	현재 상황	작성자의견		
1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종료		현재 상황에 대한 기술 등		
2					
3					
4					
5					
6					
7					
8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한 사무에 대한 내용					
기타					

2) 특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 심판결정문에 기록된 대리권

현재상황	①사무종결	②스스로 가능	③지원체계 확보	④지원체계 연결예정	⑤후견계속지원
연번	사무의 내용	현재 상황	작성자의견		
1	의료서비스 신청 및 이용제외결정에 관한 대리권				
2					
3					
4					
5					
6					
7					
8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한 사무에 대한 내용					
기타					

4. 새로운 사무후원 필요여부

※ 지원필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결정이나 사무처리에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대리필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 (지원, 대리 증복체크 가능)

지원 필요	대리 필요	필요사유여 (✓) 표시	구체적 내용 서술
		은행인두 지원(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계좌이체 및 출금, 체크카드 발급, 예금잔액 정보조회 등)	
		일상생활에 권리 지원(계획적인 금전관리 등)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정신병원 입퇴원 포함)	
		공법상 행위 사무 지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에 관한 재판 서류 발급 등)	
		건강증정서 발급 사무 지원 (사유:)	
		주거마련과 관련된 정보탐색 및 계약체결 지원 (양승민대리인도 신청, 주거이용에 따른 계약, 아파트 매수 등)	
		상속재산 처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지원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분할, 상속의 승인신청 승인 포기 등)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공적 서비스, 여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연계 등)	
		권리피해 상환 시 행사권자 및 민사적 구제절차 진행 사무(고소, 증거수집, 형사기록 열람신청, 형사합의,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등)	
		기타 ()	

5.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성명	연락처	거주지/소재지	비후견인과의 관계	지원내용 구체적 기술(민간의 회수, 요양, 지원방법, 의사소통, 연결 방법 등)

6. 복정후견 지속 여부 판단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지속여부 판단	() 종료필요	() 재신청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정후견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정후견 사무 계속지원 필요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의 희망에 의한 종료 필요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후견사무지원 필요	
중립의견		

작성자 ()은/는 (. . .) 종료되는 특정후견 사건의 지속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였으며
 본 사례는 (종료/ 재신청)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지 32호] 후견감독사부보고서

후견감독사부보고서

진신양식 C2606



기본 후견감독사권 사건번호

기본 사항

감독 대상 기간	20 - 20	후견 종류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성년후견
피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피후견인과의 관계	주소별경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복수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피후견인과의 관계	주소별경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후견감독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피후견인과의 관계	주소별경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없음	
감독명시			
감독 대상 감독 장소 및 방법			

감독 내용	감독 항목	구분	비고
신상 정보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 후견인이 간호, 주거확보, 의료, 재활 등의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호계좌를 적절하게 세우고 있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행치는 관찰되지 않았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학대는 관찰되지 않았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정기수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개인 관리	■ 피후견인의 정기거주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수입누락이 관찰되지 않았다.		
	■ 피후견인의 개인 지출이 관철되지 않았다.		
	■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이 관철되지 않았다.		
	■ 후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 후견인이 후견활동에 적극적이다.		
	■ 후견인이 감독에 협조적이다.		
	■ 피후견인 및 관계인의 불만이 관철되지 않았다.		
	■ 후견인 퇴장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일 의견	※ 후견인 퇴장의견이 관철된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퇴장 의사	<input type="checkbox"/>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피후견인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 퇴장 사유			
<p>※ 후견인의 신상정보, 재산관리, 일반사무 활동에 대한 감독의견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p>			

[서식 33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차분명칭 청구서(격리병원)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주소 :

전화 : 이메일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청 구 책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의료법인 요양병원[이사장 : ,

주소 : 경기, 연락처 : 032-]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와 같이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후 권 감 독 인 (서명 또는 날인)

관 득 내 용

신 상 보 호

재 산 관 리

중 합 의 권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6. 22. 귀 법원 2016년00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들어가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보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치매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요양보호사만으로는 사건본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매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지며, 요양보호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근무 중단을 통보하여 왔는데, **사건본인의 안전과 치매 치료를 위해서라도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격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본인은 배회증상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청구인의 능력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사건본인의 신상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시급하게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안전과 치매 치료를 위해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격리하고자 하오니, 이를 시급히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건본인의 상태 및 신상보호 현황

가. 사건본인의 치매증상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청구사건¹⁾에서 국립서울병원 의사의 2016. 1. 12.자 후견감정서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손상되어 있고, 일부 비현실적인 과대사고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계산능력 및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성년후견이 개시된 이후 청구인이 직접 사건본인을 관찰하고,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D 터워²⁾ 담당 사회복지사, 간호사, 배우자 C가 임원해 있는 E병원³⁾ 관계자, 사건본인의 딸 B, 사건본인의 요양보호사 F과의 면담 결과, 사건본인은 아래와 같이 치매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배우자 C를 알아보지 못하고, E병원에서 C를 배려했으며, 자신의 딸을 놓쳐 놓았다고 하면서 병원 관계자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임.

- 1) 서울가정법원 2015년000000호 성년후견개시
- 2) 이하 'D타워'라고 합니다.
- 3) 이하 'E병원'이라고 합니다.

② 배회증상이 심하여 새벽 3시에도 자다가 깨면 D타워를 떠나 배회하고, 요양보호사가 출근해 있는 때에도 의미 없이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닌다고 있음.

③ 망상증상이 심해져 국가의 명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함.

④ 2017. 1. 1.에는 요양보호사가 출근하지 않은 때를 틈타 부산에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택시를 타고 배회하였으며, 딸 B가 거듭 진화통화를 시도한 결과 A가 공양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나. 사건본인의 임상 생활 일반

사건본인은 D타워에 머무르면서 새벽 4시반 경 일어난 이후, 새벽 5시부터 하루에도 5-6차례 씩 배우자인 C가 입원해 있는 E병원을 방문하여 C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요양보호사를 마련해 주기 전까지는 홀로 택시를 이용하여 E병원을 왕복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치매증상으로 인해 길을 잃고, 택시기사에게 올바른 행선지를 알리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다. 사건본인 요양보호사 마련

청구인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정상화라는 성년후견제도의 입

법 취지에 맞추어 최대한 사건본인의 잔존 의사를 추정하여 그가 원하는 방식의 신상보호를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사건본인의 보호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건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생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하였고,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1.부터 요양센터(센터장, 전화 : 031- 010- 이하 '요양센터'라고 합니다)를 통해 사건본인에게 요양보호사 F(전화 : 010-)을 붙여 주었고, 사건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2016. 10.부터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새벽 5시까지 D타워로 출근하여 사건본인이 귀가하는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으로서의 치매환자 케어에 전문성이 있는 보호사가 사건본인과의 라벨(label)을 형성한 뒤, 사건본인이 병원에 방문하여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역시 사건본인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병원에 데리고 가 치매진단을 받는 것을 번번이 실패하였고, 단지 사건본인이 가자고 하는 곳을 같이 가주면서 사건본인 곁에서 그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4) 유대감,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수행하였습니다.

4. A. 신상보호 방안 변경 필요성

가. 요양보호사에 의한 보호방안의 적절성 여부

1) 요양보호사의 근태(勤怠) 문제

청구인은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근태(勤怠)를 관리하고, 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태를 시후적으로 월 1회 청구인에게 알려줬을 뿐이고, 상시적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는 사건본인과 라벨가 형성된 이후에는 사건본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고집을 고치겠다고 무단으로 결론하는 일도 있었고, 성년후견인인 청구인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사건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고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요양센터와 요양보호사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일을 상시적으로 반드시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기적으로 요양센터 및 요양보호사와 연락을 하며 청구인 차원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관리·감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 곁에 있지 않은 이상, 요양보호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사건본인이 요양보호사의 보호 아래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신상보호 원칙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2) 과도한 비용 소모

청구인은 최초 요양보호사를 마련하면서 요양센터에 시간당 10,000원 및 요양보호사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건본인을 태우고 사건본인이 가져오는 곳을 왕래하는 것을 감안하여 유류대도 지급하기로 하였고,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관리비용 등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요양센터와 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사건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계가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근무를 함에 따라 그 비용만도 월 4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반해,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적절한 요양병원 탐색

1) 들어가며

현재 사건본인의 생활패턴 및 치매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보호아래 생활하는 것은 고비용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고, 사건본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폐회증상 때문에 적절한 요양보호사를 물색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⁵⁾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요양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치매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건강보험 적용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였으며, 사건본인이 입원할 병원을 물색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사건본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상 보훈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요양보호사를 물색하거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 요양보호사 F의 부적절함 때문에 청구인은 강서구 지역 5곳의 다른 요양보호사도 물색해보았으나, 사건본인이 거동이 가능하고, 폐회증상이 있기 때문에 불박을 요양보호사를 찾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8. 사건본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등급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6. 12. 27. 사건본인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등급 4등급이 인정되었습니다.⁶⁾

3) 국가보훈처 위탁 요양병원 물색

아울러,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머무를 적절한 요양병원을 물색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위탁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간병비만을 부담하면 별도로 병원이기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인근의 국가보훈처 위탁 요양병원들을 물색하여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 인근의 국가보훈처 위탁 요양병원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G_요양병원(이사장 : , 주소 : 경기, 전화번호 : 032-), 인천 남동구 소재 H_요양병원(주소 : 인천, 전화번호 : 032) 두 군데인바,

청구인은 위 두 병원에 우선으로 입원상담을 진행 하였고,

2016. 12. 23. 청구인 담당 변호사 배광열 변호사가 위 두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병원 상태를 확인하였고, 더 구체적인 입원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병원 중 G 요양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설 병원이라 시설이 현대적이었고, 병실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배치되어 있는 등 환경이 좋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알고하였으며,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배우자인 C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3인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H 요양병원의 경우, 설립되지 오래된 곳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었고, I개 층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I개만 있었으며, 병실 내부 환기도 불량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 20161223-A 요양병원 방문 업무일지, 갑 제2호증의 1 - G 요양병원 리플렛, 갑 제2호증의 2 - H.요양병원 리플렛 각 참조).

청구인은 양 병원을 모두 방문하고 상담을 받아본 결과, 비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사건본인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이상, 환경이 양호한 부친 G 병원에 사건본인을 입원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본 건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4) 딸 B와의 협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B에게 알려 주었고, B와의 협의를 계속하였으며, 사건본인을 G 요양병원에 입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았습니(갑 제3호증 - B 이메일 참조).

7) 3인실의 경우, 2017. 1. 2.원칙은 공실이 없어 입소가 힘든 상황입니다. 3인실에 사건 본인과 배우자 C가 입원할 경우, 병실비와 간병비를 모두 합하여 월 약 600만 원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갑 제1호증 참조). 다만 사건본인과 C 명의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치부대금과 추후 사건본인 명의의 D세대 차분대금을 합하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사건 본인과 C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월 6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도 아니라고 사료되며, 딸 B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10/13

다.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러운 근무 중단

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건본인이 입원할 요양병원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격리허가청구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도 사건본인의 상태는 악화일로(惡化一略)를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건본인은 ① 2016. 12. 31. E병원에서 관계자들을 다 죽이겠다 고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으며, ② 2017. 1. 1.에는 요양보호사가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때 홀로 택시를 타고 부 산에 일을 봐야 한다며 공항에 방문하여 공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뒤늦게 사건본인을 데리러 온 요양보호사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본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평소에도 어려움을 토로해 온 요양보호사는 2017. 1. 2. 오전 청구인에게 건강이 의뢰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수속 을 받고 있는 중이며,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사건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해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재 사건본인은 돌봐주는 자도 없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1/13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무친 G 요양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분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태의 긴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서어 시급하게 분 건을 판단하여 주시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 1. 갑 제1호증 - 20161223-A 요양병원 방문 업무일지
- 1. 갑 제2호증의 1 - G 요양병원 리플렛
- 1. 갑 제2호증의 2 - H.요양병원 리플렛
- 1. 갑 제3호증 - B 이메일

첨 부 자 료

- 1. 위 각 입증방법

2018. . .

청구인

00가정법원 귀중

12/13

13/13

[서식 3-43] 취약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용하고 필름을 받는 것에 대해 사업주(회사)와 근로자(직원)가 약속하는 문서

(사업주) 사업체명 : _____ (전화 : _____)
 주 소 : _____ (서명)
 대 표 자 : _____
 (근로자) 주 소 : _____ (서명)
 연 락 처 : _____
 성 명 : _____

다음과 같이 "사업주"라 함(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일 개 시 일 : _____ 년 월 일부터
2. 일하는 장 소 :
3. 일하는 내용 :
4. 일하는 시간 : _____시부터 _____시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일하는 날/쉬는 날 : 매주 _____일(또는 매월단위)근무, 쉬는 날(주휴일) 매 주 _____요일
6. 직원이 받는 돈(임금)
 - 한달(일주일, 하루, 한시간) : _____원
 - 상여금(월급 외에 더 받는 돈) : 있음 ()
 원, 없음 ()
 - 그 외에 받는 돈(계수당 등) : 있음 () 없음 ()
 _____원, _____원
 - 임금(돈) 받는 날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돈)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돈 받으며 쉬는 날)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한 법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쓰기
 - 사업주는 문서를 다 쓴 후에 복사하여 직원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직원에게 주어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일용 하고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사업주(회사)와 근로자(근로자)가 약속하는 문서

(사업주) 사업계약 : (전화 :)
 주 소 : (서명)
 대표 자 :
 (근로자) 주 소 :
 인 락 처 : (서명)
 성 명 :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1. 일하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일하는 장소 :
3. 일하는 내용 :
4. 일하는 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일하는 날/ 쉬는 날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쉬는 날(주휴일) 매 주 요일
6. 직원이 받는 돈(임금)
 - 현달(일주일, 하루, 한시간) : 원
 - 상여금(월급 외에 더 받는 돈) : 있음 () / 없음 ()
 - 그 외에 받는 돈(계수당 등) : 있음 () / 없음 () 원
7. 임금(돈) 받는 날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원
8. 임금(돈)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원
9.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강한 법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한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문서를 다 쓴 후에 복사하여 직원이 탈라고 하지 않아도 직원에게 쥐어 함.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제명 : (전화 :)
 주 소 : (서명)
 대표자 :
 (근로자) 주 소 : (서명)
 인 략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한주일에 40시간 미만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사업주(회사)와 근로자(직원)가 약속하는 문서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일 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 일하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 등으로 기재
2. 일하는 장소 :
3. 일하는 내용 :
4. 일하는 날 및 일하는 날별 근로시간

일하는 시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일하는 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일 끝나는 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쉬는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쉬는 날(주휴일) : 매주 _____요일
5. 돈(임금)
 - 한시간(일주일, 월달)급 : _____원(해당사항에 ○포)
 - 상여금(월급 외에 더 받는 돈) : 있음 () / 원 없음 ()
 - 그 외 받는 돈(제수당 등) : 있음 : _____원(내역별 기재), 없음 ()
 - 초과근로(약속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임금률: _____%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4.9.19. 시행)
- 임금(돈) 받는 날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돈)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서식 35호]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서울○○법원 귀중

청 구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최 후 주 소 :
송 달 장 소 :

민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 청구원인 과징 예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3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인 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 최후주 소지에서 갑자기 심경파탄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별지 기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이 필요하므로 본 청구에 이은 것입니다.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 준 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주소 :)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1통
-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의 경우 각 1통
계적등본), 필소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1.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0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36호]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부동산매각)

심판 청구

청 구 인

주소

전화번호 :

사건본인

, 이메일 :

조00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신청 취 지

1. 청구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성년후견인)은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라는 실판을 구합니다.

신청 원 인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입니다(갑 제1호증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참조).

2. 대원 서구 아파트 0동 0호 권리관계

사건본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고(갑 제2호증 - 대전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015. 3. 21. 갑00과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30.까지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 대전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참조).

3. 임대차계약 만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발생

위 임대차계약은 2017. 4. 30.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임차인 갑00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4. 30.이 지나면 사건본인은 임차인 갑00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현재 예금 63,524,853원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 연금 월 2,199,690원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바(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재산목록보고서 참조), 위 임대차기간 만료에 맞추어 임차인 갑00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건본인의 장남 조00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뒤 약 1억 6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나, 2017. 4. 30. 전에 위 돈을 반환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불필요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신(斷)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곤란

사건본인의 재산과 돌봄을 놓고 아들 조00과 다른 딸들이 극심한 다툼을 벌인 바 있다는 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서울가정법원 2016년단---호)의 기록을 통

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본인의 딸들은 조00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유용하였고, 임대차계약 역시 사건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찰인과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소란을 일으킨 바 있고¹, 이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사이에는 사건본인을 둘러싼 자녀들의 다 불상향을 모르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임대차로 내 놓을 수는 없다고 문의하였을 때, 대부분의 업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분쟁의 여지가 있어 **임차인에게 사실상 불안을 줄 수 있는 불건을 중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7. 4. 30.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인을 물색하여 새로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극히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조00이 유용한 자금을 반환할 가능성 없음

성년후견인이 재산목록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00이 유용한 약 1억 6천여 만 원을 사건본인에게 반환할 경우, 사건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합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00은 일권하여 그 돈을 유용하여 자신의 아들 결혼식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건본인의 평소 뜻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사건본인에게 반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성년후견인이 조00으로부터 위 돈을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¹ 단순한 사실만을 명거하는 것이지, 임대차계약이 사건본인의 진의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만료되는 2017. 4. 30. 전까지 조00으로부터 유용한 자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6.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적절성

그 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상환액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사건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②** 고비용의 병원치료를 대비한 어느 정도의 원금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를 사건본인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간명한 법률관계를 위하여는 **대출보다는 매각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7. 사건본인의 이 사건 아파트 복귀 가능성

사건본인과 배우자 전00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고, 사건본인에 대한 공동후견인 조00을 비롯한 자녀들의 도움 없이 자립하여 생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가 지낼 가능성은 거의 없이** 보입니다.

8. 고비용의 병원치료 대비한 현금 보관 필요성

사건본인은 고령의 치매환자이고, 배우자 전00 역시 고령인 자(193.년생)로서, 현재 요양원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향후 이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수술을 하거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등 **역상하지 못한 큰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어느 정도 가능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금선무라고 할 것인바, 매각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곤란한 경우 주시 토지보다는 매각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 매수희망자 확보

이에 성년후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근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305,000,000원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자가 나타난 상황이며, 일단 계약예약금으로 5,000,000원을 수령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금 30,000,000원(예약금 500만 원 포함)은 계약 체결일에, 잔금 275,000,000원은 2017. 6. 2에 지급받기로 하고, 임차인에게는 같은 날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계약을 조건을 보내었습니다(갑 제5호증 - 매매계약서 조건 참조).

성년후견인은 이에 대해 추후 법원 허가 심판을 기다려야 하고, 판결이 기각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인용되더라도 위 알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 다.

10. 결론

이상과 같이, 성년후견인은 현재 사건본인의 자력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복귀하여 생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사건본인과 배우자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병원치료 등을 대비해야 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자가 등장하였는바, 귀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 증 자 료

- 1. 갑 제1호증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2호증 - 대진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 1. 갑 제3호증 - 대진아파트 임대차계약서
- 1. 갑 제4호증 - 사건본인 재산목록보고서
- 1. 갑 제5호증 - 매매계약서 조건

첨 부 서 류

- 1. 위 각 입증자료

2017. 3. .

성년후견인

00가정법원 귀중

[서식 37호] 재산목록보고서

재산목록보고서



서울가정법원

기본 후관독서권 시권번호

피후권인의 후관독서권 기본 신청 정보를 기재합니다.

기본 사항

보고서 제출기간	작성기한의 후관독서권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후견종류	상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한정후견 <input type="checkbox"/> 특정후견 <input type="checkbox"/> 임의후견 <input type="checkbox"/> 미상년후견 <input type="checkbox"/>
피후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후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후권인과의 관계	법인	주소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사항있음

재산 목록

피후권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칸입니다. 재산목록번호에 해당기간이 있는지 표시, 있음, 없음, 미상 경우에는 이에 해당 항목에서 기재해 드립니다. 이 양식을 미입력하여 제출할 경우 아래 표 중 예, 미상, 미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있음, 예, 미상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인표와 소위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진술 혹은 불일치한 보고서와 불이치한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득재산종류	재산목록 요약표		평가액
	해당유무	진수	
1. 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2. 보증금반환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3. 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보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5. 출원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6. 원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7. 과량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8. 유채물산 (취급속, 공동, 액, 상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9. 기타 재산권 (채권, 상환권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0. 대역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1. 기타 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① 적극재산 합계			
소극재산종류	해당유무	진수	평가액 (단위: 원)
12. 담보대출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3. 보증금반환채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0	0
14. 기타 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② 소극재산 합계			

재산 영역

재산 영역	
-------	--

건명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평가액)
부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2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3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4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5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6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부7	<input type="checkbox"/> 토지 <input type="checkbox"/> 건물		

1. 부동산 영역

건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예1	영농농협		

예2	예3	예4	예5	예6
예7	예8	예9	예10	예11
예12	예13	예14	예15	예16
예17	예18	예19	예20	예21
예22	예23	예24	수 파성안 부패시 진명 연속 기록하여 별기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금 종역				
		남입금 총액		
건명	보점종역	종권번호		
보1				
보2				
보3				
3. 보험종역				
수 파성안 부패시 진명 연속 기록하여 별기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보인				
보4				
보5				
보6				
보7				
수 파성안 부패시 진명 연속 기록하여 별기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증권 등 종역 0				
수 파성안 부패시 진명 연속 기록하여 별기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지선행목				
내용				
보점종역 반환세입	소세지	보증금	임대기간	
원금				
차량	건물	자동차	등록번호	시가
	과1			
	과2			
▽ 부동산, 예술품, 귀금속, 약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예금				
예2				
예3				
예4				
예5				
예6				
예7				
예8				
예9				
예10				
예11				
예12				
예13				
예14				
예15				
예16				
예17				
예18				
예19				
예20				
예21				
예22				
예23				
예24				
수 파성안 부패시 진명 연속 기록하여 별기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보점종역				
보점종역				
보1				
보2				
보3				
수 파성안 부패시 진명 연속 기록하여 별기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종권번호				
종권번호				
과1				
과2				
수 파성안 부패시 진명 연속 기록하여 별기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담보 대출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보증금 반환채무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보증금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신용대출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기타 채무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6. 소극재산종역		금액
제신종역		금액

수입내역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유체동산	유1	유6	유계종산명	시가	유계종산명	시가
	유2	유7				
기타 재산권	유3	유8	제신권명	가역 (신정가능한 경우)		
	유4	유9				
대여물	유5	유10				
기타 채권	대여금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일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일		
5. 그의 적극재산종역		0				
제극재산의 해당 권명을 표기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진명	금융기관	대출금	장책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영태소득	부동산 권명	월소득 X 12개월 = 1년 임대소득 월 ()원 X 개월 = ()원
		월 ()원 X 개월 = ()원
		월 ()원 X 개월 = ()원
		월 ()원 X 개월 = ()원
		월 ()원 X 개월 = ()원
연금 및 사회보장 수급권	① 임대소득합계	0
	수급명칭	월소득 X 12개월 = 1년 수급총액
	KB생명연금보험	월 ()원 X 개월 = ()원
		월 ()원 X 개월 = ()원
		월 ()원 X 개월 = ()원
이저소득	② 수급합계	1,020,000
	건명	이자소득
수입항목 거정수입	③ 이저소득합계	
	소득금액	첨부서류
	④	종합소득세 과징신고서 해당 1년분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⑥	수급 증명서
개인연금소득	⑦	보험금 수령 확인서
	⑧	권리 증명서
기타수입		
수입총액		

지출내역		과후견인의 예상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欄입니다.	
정기지출항목	항목	지출계획	월 ()원 X 12개월 = ()원
			월 ()원 X 12개월 = ()원
비정기지출항목	항목	지출계획	
총지출예산			
후견인의 견도 의견		별지 참조	
<p>※ 감독위원이 최종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귀하가 재산목록보고서에 기재한 후 '부동산, 예금, 보험 등 항목은 반드시 위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기간에 변동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p> <p>※ 증명서류 예: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은행계좌의 잔고확인서, 보험계약(보험금수령)확인서, 대상 기간의 수입 및 지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영수증 등 입재의 자료를 의미합니다.</p> <p>※ 대상 기간 중 피후견인, 후견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첨부서류			

후견인은 위와 같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후견인 년 월 일 서울가정법원 귀중
 (서명 또는 날인)

[서식 38회] 특정후견인 선임허가심판청구서
특정후견인 선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을 선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000(주민등록번호)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주소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법원 2016년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이면에 청구인은를 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특정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4.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서식 39회] 특정후견인변경신청장구서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청구인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특정후견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 ○○○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00법원 2016년0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
3.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의 변경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주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4.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주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5.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6. 기타(증거자료)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2016 . 0 . 0 .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유의사항
 수임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4. 새로운 특정후견인으로는 ○○○를 추천합니다.

특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통
- 기타(소명자료)

2016 .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저서 40회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서(소송비용)]

심판청구

청 구 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건본인 000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처분명령 청구

청 구 취 지

- 청구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 청구인(성년후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와 해당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소송결과를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 법원 _____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입니다(갑 제1호증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참조).

2. 사건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의 존재

현재 사건본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딸인 000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00법원 2016나 1000호)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갑 제2호증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 증 - 나의사건검색(2016나1000호) 각 참조).

위 소송은 사건본인이 치매에 걸려 인지기능이 부족한 틈을 탄, 000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제1심(00지방법원 2016가합000호)은 무변론판결(원고 진부승)이 있었고, 뒤늦게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된 사건본인의 다른 딸 ○★○이 사건본인을 조력하여 변호사를 통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소송행위 주인 필요

가. 응소 필요성

위 소송에서 원고 000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사건본인이 2015. 12. 7.경 원고에게 2016. 1. 4.까지 총 367,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2013.경부터 치매증상을 보여왔습니다(갑 제4호증 - 정신감정서 참조). 더욱이 2015. 5. 6. 가톨릭대학교 의의도성모병원 신경과 주치의 조아현이 작성한 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 검사결과에 따르면, 사건본인은 중등도 인지장애로서 자식의 생활의 최근 사건과 최근 시사 문제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갑 제5호증 - 2015. 5. 6.자 의의도성모병원 GDS 검사결과지 참조).

이와 같은 당시 의료기록에서 드러나는 사건본인의 인지기능에 비추어 볼 때, 000이 주장하는 2015. 12. 7.자 약정서 역시 사건본인이 그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본인이 치매로 인해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딸 000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건본인의 임사후권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 소송에서 000의 주장이 타당하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사건본인은 000에 의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무변론판결이 있었던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뒤 2016. 9. 10. 000에 의해 위 항소를 취한 적도 있으며, 모순(矛盾)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데, **사건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휘둘러 사건본인의 법적 불안판 증폭**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기존 소송행위 주인

그러므로 청구인은 기존 사건본인의 소송대리인이 한 추완항소 등 소송행위를 추진함으로써, 하루속히 이 사건 소송의 당부를 판단 받아 사건본인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고, 사건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아가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이 한 **2016. 9. 10.자 소송위임권의 항소취하행위**는 사건본인에게 불리한 행위이고, 그 행위가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일련의 소송행위 중 위 취하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만을 추진하더라도 소송의 혼란을 줄 우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한 때(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판결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행위만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허가 받고자 하는 소송행위

000월원 2016나10000호 약정금 사건에 관한 응소, 상소의 제기, 항소취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 일체의 소송행위
붙.

입증 자료

- 1. 갑 제1호증 - 사진본인 후진등기사항증명서
- 1. 갑 제2호증 - 사진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1. 갑 제3호증 - 나의사건검색(2016나10000호)
- 1. 갑 제4호증 - 정신감정서
- 1. 갑 제5호증 - 2015. 5. 6.자 여의도성모병원 GDS 검사결과지

첨부 서류

- 1. 위 각 입증자료
- 1.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2018. 11. 15.

창구인 000

00기정법원 귀중

[서지 41회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감음하는 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감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감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법원 2016년판○○○○호로 성년후견계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과 ○○○(현재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위 심판 당시 사건본인의 ○○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은 이유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록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6. 0. 0.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임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할법원 : 사건본인(매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서식 42호]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감독인 ○○○○는 별지 기재 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 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법원 2016노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과 ○○○(원 계주소)가 선임되었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의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별지 기재 재산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성년후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나 ○○○는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1봉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봉
4. 기타(소명자료)

2016 . ○ . ○ .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70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배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거방법원, 지원)입니다.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 발행인** 회장 이 찬 희
-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 전 화** 02) 6200-6200
-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